

분단국가 통일헌법 자료집

3881
통정 95-12-81

160p.
2.600원



이헌법
제1회 통일헌법
통일헌법
통일헌법
통일헌법

통 일 원

- 이 자료는 분단되었다가 통일된 독일 및
에멘의 통일헌법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일 뿐
당원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님

- 통일정책 개발에 필요한 참고자료로써 활
용해 주기 바람

'95. 12.

통 일 정 책 실

< 목 차 >

□ 독일통일후의 헌법개혁에 관한 연구
-----장명봉(국민대 교수)

□ 남북예멘의 통일과정과 통일헌법에 관한 연구
----- 장병봉(국민대 교수)

□ 참고자료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예멘 통일국가헌법 전문

獨逸 統一後의 憲法改革에 관한 研究

張 明 奉(국민대교수·헌법학)

獨逸統一後의 憲法改革에 관한 研究

張 明 奉(국민대 교수·헌법학)

(目次)

I. 머리말

II. 獨逸統一後 基本法改正의 內容

1. 基本法 改革 이전의 基本法改正 : 제36차~제41차 改正

- (1) 統一條約에 따른 基本法改正 : 제36차 改正
- (2) 共同憲法委員會의 基本法改正 論議
- (3) 統一獨逸後 國際的·國內的 課題의 憲法的 解決 : 제37차~제41차 改正

1) 유럽聯合의 憲法的 認識

- (a) 유럽聯合(Europäische Union)에의 協力
- (b) 유럽聯合과 獨逸의 關係設定
 - (aa) 유럽聯合 市民의 地方選舉權 認定
 - (bb) 유럽中央銀行(Europäische Zentralbank)의 設置
 - (cc) 유럽聯合分科委員會(Ausschuß für die Angelegenheiten der EU)의 設置
 - (dd) 유럽審議會(Europakammer)의 設置
 - (ee) 高權의 移讓

2) 聯邦과 州의 關係調整

3) 亡命權의 憲法的 制限

2. 基本法 改革 : 제42차 改正

(1) 國家目標의 追加的 設定

- 1) 環境保護에 대한 國家的 認識
- 2) 障礙人의 同等權 保障
- 3) 實質的 男女平等의 保障

(2) 聯邦과 州의 關係 再定立

1) 州의 權限強化

(a) 州의 新編成

(b) 社會保險者에 대한 州의 權限擴大

(c) 州의 憲法訴訟參與 擴大

2) 聯邦과 州의 立法權限 調整

(a) 聯邦의 競合的 立法權 強化

(b) 聯邦上院의 權限強化

III. 獨逸統一後 基本法改正의 意義와 評價

1. 基本法改正의 意義와 各政黨의 立場

2. 基本法改正에 대한 評價

IV. 獨逸의 基本法改革이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

- 參考資料 : 共同憲法委員會의 基本法改正을 위한 勸告案
- 圖表 1 : 獨逸統一後 基本法改正 一覽表
- 圖表 2 : 共同憲法委員會의 基本法改正을 위한 勸告案과 基本法改正

I. 머리말

아다시피 1949년 制定된 舊西獨基本法¹⁾은 東西獨의 分斷의 現實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舊西獨地域에만 效力이 미치는 暫定憲法的 性格을 띠고 있었다. 이 基本法은 1990년 10월 3일 東西獨의 統一과 동시에 統一獨逸의 憲法이 되었다. 東西獨의 統一이 舊西獨基本法 제23조의 編入條項에 의한 舊東獨의 舊西獨에로의 吸收統一의 方式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東西獨間의 '統一條約'은 제2章에서 基本法의 '改正'에 관해 규정하였는데, 이는 統一獨逸의 憲法秩序의 再定立을 위한 規範의 根據 내지 政治的 合意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統一獨逸의 憲法으로서 基本法은 統一過程과 統一 이후의 獨逸의 國際的·國內的 憲法秩序의 變化에 따라 그 改正의 必要性이 增大되었다.

이에 따라 統一獨逸은 統一條約에 의해 부분적으로 基本法을 改正한데 이어 1992년 1월부터 본격적인 基本法 改正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聯邦上院과 聯邦議會는 '共同憲法委員會'(Gemeinsame Verfassungskommission)를 구성하고 이 委員會로 하여금 基本法 改正의 勸告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委員會에서는 2年餘의 期間동안 統一을 계기로 제기된 憲法理論 및 解釋上 問題點과 各界의 改正意見에 대한 진지하고 심도있는 討議를 거쳐 1993년 10월 基本法 改正을 위한 勸告案을 확정함으로써 統一獨逸의 새로운 憲法秩序에 대한 合意를 도출하였다.²⁾ 이 勸告案을 기초로 1994년 11월 15일 확정된 제42차 基本法 改正은 基本法 成立이후 가장 광범하고도 意味있는 改正이었으며, 이로써 獨逸統一後 憲法改革은 一段落되었다고 할 수 있다.

獨逸統一은 그 自體는 물론 基本法改正의 過程과 內容에 있어 매우 가치있는 先例이다. 獨逸統一 후 이루어진 제41차까지의 일련의 基本法 改正과 共同憲法委員會에서의 基本法 改正論議, 그리고 제42차 基本法改正의 內容 등 獨逸에서의 憲法改革은 統一憲法制定을 통한 統一을 이루려는 우리에게 많은 示唆點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本稿에서는 統一獨逸 후의 基本法改正에 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敎訓을 찾고자 한다. 먼저 統一과 동시에 이루어진 基本法改正에 관해 一瞥하고, 共同憲法委員會에서의 基本法 改正案에 대한 論議와 제42차 基本法改正의 內容을 고찰한다. 다음 獨逸統一과 관련한 基本法改正의 意義를 살핀 후 이에 대해 評價하고, 아울러 그것이 우리에게 示唆하는 바를 論及한다. 맨 뒤에는 參考資料로서 '共同憲法委員會의 基本法改正을

* 國民大法大 敎授

1) 西獨의 基本法 制定에 관한 略史는 H. von Mangoldt, *Das Bonner Grundgesetz*, Bd. 1, Berlin u. Frankfurt a. M., 1957, S. 1 ff ; E. Denninger, "Zur Entstehungsgeschichte des Grundgesetzes," in : *Kommentar zum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2. Aufl., Luchterhand, 1989, S. 59 ff.

2) 이 委員會의 構成과 活動에 관해서는 許 營, "獨逸統一과 基本法의 改革問題", 許 營 編, 「獨逸統一의 法的 照明」(博英社, 1994), pp. 251~256.

위한 勸告案¹⁾의 全文과 함께 獨逸統一後 基本法改正 一覽表와 共同憲法委員會의 勸告案 및 基本法改正에 관한 圖表를 수록한다.

II. 統一獨逸後 基本法改正의 內容

1. 基本法 改革 이전의 基本法改正 : 제36차~제41차 改正

(1) 統一條約에 따른 基本法改正 : 제36차 改正

1990년 8월 31일 採擇된 東西獨間의 統一條約³⁾은 단순한 國際法上의 條約으로서만이 아니라 東西獨間의 特別關係⁴⁾에 기초한 '特別條約'(Vertrag sui generis)으로서의 性格을 갖는 것이었다.⁵⁾ 同年 10월 3일 統一條約의 發效와 동시에 이 條約에 의거하여 基本法은 일부 改正되었는데, 이것이 제36차 基本法改正이다.⁶⁾

統一條約에서는 兩獨의 合意에 따라 舊西獨의 基本法이 統一과 동시에 東獨地域에도 그 效力을 미친다고 규정되었다(제3조). 또한 統一條約에서 정한 바에 따라 基本法上의 前文, 제51조 2항, 제146조는 修正 내지 追加되었고, 제23조는 削除되었으니, 제143조가 插入되었다(제4조). 그리고 統一條約은 統一 후 2年 이내에 聯邦과 州의 關係, 베르린과 브란덴부르크의 再編成 및 제146조의 適用과 이에 따른 國民投票 實施問題에 대하여 필요한 基本法의 改正을 立法府에 권고할 것을 규정하였다(제5조). 그외에도 統一條約은 基本法 제131조(前任公務員에 관한 규정)의 適用을 舊東獨地域에는 잠정적으로 排除하도록 하였으며(제6조), 統一에 따른 舊東獨地域의 財政負擔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財政憲法에 관한 사항의 適用에도 예외를 인정하였다(제7조).⁷⁾

3) 東獨과 西獨간의 獨逸統一에 관한 條約 - 統一條約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 Einigungsvertrag - vom 31. 8. 1990). BGBl. II 889.

4) 東西獨사이의 特別關係에 관해서는 BVerfGE 36, 1 이하 참조.

5) K. Stern, "Der verfassungsändernde Charakter des Einigungsvertrages," in : DtZ, 9/1990, S. 289.

6) 統一條約은 基本法을 개정하는 法的 性格을 갖기 때문에 聯邦議會와 聯邦上院의 3分の 2 以上の 同意를 必要로 하였다. 이를 근거로 獨逸 聯邦憲法裁判所는 統一條約에 의한 基本法改正에 대하여 聯邦議會의 基本法上의 權限侵害를 이유로 제기된 憲法訴訟을 棄却하였다. 1990년 9월 18일의 聯邦憲法裁判所決定, BVerfGE 82, 19. 이에 관한 詳論은 張明奉, "獨逸統一過程에 대한 憲法的 考察과 統一 3년후의 憲法狀況", 「韓國統一政策研究論叢」, 第2卷 (韓國統一政策研究會, 1993), p. 25 이하 참조.

7) 統一에 따른 基本法改正에 관하여 H. Weis, "Verfassungsrechtliche Fragen im Zusammenhang mit der Herstellung der staatlichen Einheit Deutschlands," in : Archiv des öffentlichen Rechts, 116. Bd. (1991), Heft 1, S. 1 ff (특히 제36차 개정에 관해서는 S. 22 ff); 고영환, 「獨逸統一에 따른 公法 統合에 관한 研究」 (한국법제연구원, 1994), p. 24 이하 참조.

(2) 共同憲法委員會의 基本法改正 論議

東西獨간에는 統一에 대한 條件으로 基本法을 개정하기로 合意하였다. 統一條約 제5조에 따라 통일된 獨逸의 立法機關은 통일 이후 2년이내에 統一과 관련되어 제기된 基本法改正問題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였다. 이를 위해 社民黨(SPD), 同盟90(Bündnis 90) 및 綠色黨(Die Grünen) 등은 '憲法會議'(Verfassungsrat)를 구성하자고 주장하였고, 基民黨-基社黨(CDU-CSU) 聯合과 自民黨(FDP)은 共同憲法委員會의 設置를 제안하였다.⁸⁾ 聯邦議會와 聯邦上院은 立法府가 스스로 이 問題에 관해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결국 1991년 11월 28일과 29일의 決定으로 共同憲法委員會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1992년 1월 16일 聯邦議會 議長과 聯邦上院의 議長은 聯邦議會에서 선출된 32명과 聯邦上院 대표 32명으로 同 委員會를 구성하였다.⁹⁾

聯邦議會 및 聯邦上院의 共同機構로서 구성되고 활동한 共同憲法委員會는 基本法의 改革을 위해 統一 이전부터 논의된 基本法改正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統一條約 제5조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憲法政策的 觀點에서 논의하였다. 이 委員會의 姿勢는 1949년 基本法 制定 당시 '議會評議會'(Parlamentarischer Rat)의 그것보다 진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여기서는 1990년 東西獨의 統一로 인한 變化를 반영하여 基本法을 근본적이고 전반적으로 再檢討하였다. 각종 團體·機構·組合 및 個人이 基本法改正과 관련하여 약 80만건 이상의 建議案을 제시하였고, 共同憲法委員會는 각 政黨의 政治的 利害를 타협하기 위하여 26차의 會議 및 9차에 걸친 聽聞會를 개최하며 1993년 10월 28일까지 활동하였다.¹⁰⁾

共同憲法委員會의 決議는 비록 그 성격상 法的 拘束力은 없지만, 그 討議過程에서 나타난 각 政黨 및 利害關係團體의 見解는 그간의 基本法改正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93년 11월 5일 聯邦議會 議長과 聯邦上院 議長에게 송부된 共同憲法委員會의 基本法改正을 위한 勸告案¹¹⁾은 80여개의 基本法 改正案에 대한 最終決議로써 이른바 '憲法改革'으로 불리는 제42차 基本法改正의 基礎가 되었다. 이 勸告案에서 이미 시행된 改正基本法 가운데 유럽統合 및 聯邦主義의 強化에 관한 사항은 다시 그 憲法的 合意로 확인되었다.¹²⁾

(3) 獨逸統一後 國際的·國內的 課題의 憲法的 解決 : 제37차~제41차 改正

統一後 1994년까지 獨逸의 憲法으로서 基本法은 統一條約에 의한 제36차 改正 이후

8) 이에 관해서는 張明奉, 前掲論文, pp. 42~43 참조.

9) R. Scholz, "Die Gemeinsame Verfassungskommission : Auftrag, Verfahren und Ergebnisse," in :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52~53/93, S. 3 ff 참조.

10) E. Busch, "Die Gemeinsame Verfassungskommission : Eine neue Institution für die Grundgesetzreform," in :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52~53/93, S. 11.

11) *BT-Drucksache* 12/6000 ; *BR-Drucksache* 800/93.

12) R. Scholz, *a.a.O.*, S. 4.

1994년 10월 27일 基本法 改正에 관한 法律¹³⁾에 의해 제42차 改正까지 施行되었다. 그 가운데 제37차부터 제41차까지의 基本法 改正은 그 內容을 중심으로 유럽 統合, 聯邦과 州의 關係調整, 그리고 生命權의 制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유럽 聯合의 憲法的 認識

1992년 12월 21일 제38차 基本法 改正¹⁴⁾은 유럽 聯合(Europäische Union)을 실현하기 위한 獨逸人의 意志를 강력하게 반영하였다. 제38차 改正에 따라 統一條約 제4조 2항에 의해 削除된 基本法 제23조가 새로이 插入되었으며, 또한 제24조 1a항, 제28조 1항 3문, 제45조, 제52조 3a항 등이 插入되었다. 아울러 제115e조 2항 2문이 追加되고 제88조 2문이 補充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다음에 유럽 聯合과 관련된 基本法 改正에 관해 살펴본다.

(a) 유럽 聯合(Europäische Union)에의 協力

1992년 2월 7일 유럽의 統合을 위해 네덜란드의 都市인 마스트리히트에서 유럽 聯合條約(이른바 마스트리히트 條約)¹⁵⁾이 체결되었다. 이 條約의 當事國으로서 獨逸은 유럽 聯合條約의 效力發生日인 1993년 1월 1일¹⁶⁾까지 基本法과 同 條約간의 調和를 위해 基本法을 改正할 必要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제38차 改正을 통해 高權의 유럽 聯合에의 移讓 및 유럽 聯合과 관련된 事項을 國家目標로 규정하는 基本法 제23조가 新設되었다. 아울러 이 條項에서는 將來 獨逸의 유럽 政策에 있어서 聯邦과 州의 協調的 作用을 위한 體制를 形成하는 規定을 두게 되었다. 즉, 유럽 政策에 관한 事項은 聯邦의 權限에만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각 州와 聯邦政府, 聯邦議會 및 聯邦上院에게 적절한 權限을 分配하는 模範을 設定하는 것으로 그간 州政府의 機能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州政府의 主張을 반영한 것이었다.¹⁷⁾

다음에 그 內容을 간략히 살펴본다.

첫째, 改正基本法은 제23조 1항에서 '統合유럽'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유럽 聯合의 發展에 대한 協力을 國家目標로 設定하였다. 동시에 유럽 統合의 體制는 民主主義, 法治主義, 社會的 및 聯邦主義的 原理, 補充性의 原則 그리고 基本權의 尊重에 입각하여야 한다고

13) *BGBI. I* 3146.

14) 1992년 12월 21일 基本法 改正에 관한 法律 *BGBI. I* 1254. 1992년 12월 25일 發效.

15) *Vertrag über die Europäische Union (Maastricht-Vertrag)* vom 7. 2. 1992. 條約 全文은 *Sartorius II*, Nr. 152.

16) 마스트리히트條約 제R조 2항.

17) 이와 관련해서는 J. Kokott, "Deutschland im Rahmen der Europäischen Union - zum Vertrag von Maastricht," in : *Archiv des öffentlichen Rechts*, 119. Bd.(1994), Heft 2, S. 207 ff ; K. Hailbronner, "Das vereinte Deutschland i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in : *DtZ*, 9/1991, S. 321 ff 참조.

명시하였다. 同條 1항 2문과 3문에서 高權의 移讓은 聯邦上院의 同意를 必要로 하도록 하였다. 高權의 移讓과 관련하여 聯邦 또는 州의 高權이 移讓되는가는 問題되지 않으며, 다만 高權의 移讓程度는 聯邦國家인 獨逸의 경우 聯邦과 州의 國內法上的 地位와 유럽 聯合의 結合度에 따라 결정된다.¹⁸⁾ 이러한 意味에서 유럽 聯合은 基本法 제24조 1항에 규정된 國際機構와 그 性格이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¹⁹⁾

둘째, 改正基本法은 제23조 2항에서 유럽 聯合과 관련하여 聯邦議會 및 州의 協力權을 규정하였다. 이로써 각 州는 그들이 構成하는 聯邦機構인 聯邦上院을 통해 유럽 聯合의 실현에 협력할 수 있다. 聯邦政府는 同條 제2항 2문에 따라 유럽 聯合에 관한 事項에 관하여 聯邦議會 및 聯邦上院에 대해 상세하고도 신속한 時間내에 보고할 義務가 있다.

셋째, 改正基本法 제23조 3항에서 聯邦政府는 유럽 聯合의 立法行爲에 협력하기 전에 聯邦議會의 意見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聯邦議會에게 이 分野에서의 共同作業을 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라고 할 수 있다.²⁰⁾

넷째, 同條 4, 5항에서 聯邦上院은 그 權限의 範圍內에서 유럽 聯合에 대한 獨逸의 意思形成에 參與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聯邦上院의 參與權은 聯邦과 州의 國內法的인 權限의 分割程度에 따라 保障되는 것이다. 물론 유럽 聯合內에서의 意思決定體制는 유럽 統合에 따른 獨逸의 意思決定에 관한 國內法的 秩序를 反映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基本法은 제30조(聯邦과 州의 權限分割) 및 제70조(聯邦과 州의 立法權分割)에서 각 州는 유럽 聯合과 관련하여 어떠한 權限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제23조 2항에서 규정한 聯邦上院의 유럽 聯合에 관한 모든 사항에 參與權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²¹⁾ 유럽의 統合이 진전됨에 따라 基本法上 聯邦과 州의 權限의 分割은 國內法上 조정될 수 있고 聯邦上院의 유럽 聯合에의 參與權도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同條 5항에서 각 州는 基本法에 따른 立法權限의 分割을 고려하여 聯邦上院을 통해 유럽 聯合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同項 제1문에서 聯邦上院은 聯邦政府에게 州의 利害가 관련된 경우 聯邦의 全國的 權限의 範圍內에서 그 意見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聯邦上院은 聯邦이 立法權을 갖는 範圍內에서만 관여하는 것이다. 이 改正條項에 따라 '考慮'한다는 것은 聯邦政府가 聯邦上院의 意思決定에 政治的 影響力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聯邦政府는 聯邦上院에게 적절한 期間內에 意見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지만, 聯邦上院의 見解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²²⁾

여기서 聯邦上院이 유럽 聯合에 관한 事項에 관여할 수 있는 範圍는 각 州가 그 行政機構의 設置 또는 行政節次에 해당되는 立法權限를 중심으로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18) H. Hofmann, "Grundgesetz und Europäische Union : Fortentwicklung der Verfassung im Zuge des europäischen Einigungsprozesses," in :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52~53/93, S. 34.

19) 基本法 제24조 1항에 의하면 聯邦은 法律에 의해 國際機構에게 高權을 移讓할 수 있다.

20) H. D. Jarass/B. Pieroth, *aa.O.*, S. 482.

21) H. Hofmann, *aa.O.*, S. 35.

22) H. D. Jarass/B. Pieroth, *aa.O.*, S. 482.

에는 聯邦이 立法權을 행사하지 않거나 基本法 제72조 2항에 따른 權限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러한 聯邦上院의 參與形態는 유럽연합이 의도하는 모든 事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權限을 갖는 範圍에서는 가능한 것이다. 즉, 外交·國防 및 統合政策에 관련된 問題에 대하여 聯邦은 聯邦上院의 확대된 權限의 범위에서도 責任을 진다. 聯邦의 責任은 憲法機關으로서 聯邦의 共同責任機構인 聯邦上院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결국 聯邦國家에서 國家에 대한 聯邦과 州의 共同責任性을 의미하며, 聯邦上院이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된 유럽연합의 실현이라는 國家目標을 위해 協力한다는데 그 意義가 있다.

다섯째, 改正基本法 제23조 6항에서 유럽연합 構成國으로서 獨逸에 부여된 權利의主張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州의 專屬的 立法權限에 속하는 경우 獨逸을 위해 聯邦上院이 지명한 州의 代表는 獨逸의 權限을 행사한다.²³⁾ 제1문은 基本法에 명시적으로 州의 專屬的 立法權으로 규정하지 않은 權限의 移讓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는 基本法에 의해 聯邦이 基本法에 그 立法權을 명시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範圍에 適用되는 것이다. 유럽연합에 관한 중대한 事項의 경우 聯邦은 獨逸이 유럽연합의 會員國으로서 權利의主張을 州의 代表에게 移讓하여야 한다.

州 代表에 의한 이러한 權利는 同條 제6항 2문에 의하여 聯邦政府 내지 그 代表의 參與와 決定으로 행사된다. 이 경우 獨逸內에서의 意思決定은 權利行使 이전에 행하여져야 한다. 이 때 意思決定過程은 獨逸內부의 意思形成에 관한 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내용상으로는 聯邦과 州代表에게 同條 제5항에 의한 意思決定의 結果가 그 기준으로 된다. 제6항 2문 後段에서의 聯邦의 責任은 聯邦政府의 代表 또는 州政府의 代表 각각의 權限範圍內에서 유지된다.²⁴⁾

이섯째, 改正基本法 제23조 7항에서 聯邦政府가 聯邦上院과 협력하지 않을 경우 그 解決方法을 규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聯邦上院과 聯邦政府는 우선 合意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合意點을 찾지 못하면 聯邦政府는 聯邦上院이 3分の 2 이상의 贊成으로 결정한 事項에 구속된다.²⁵⁾

(b) 유럽연합과 獨逸의 關係設定

(aa) 유럽연합 市民의 地方選舉權 認定

유럽統合條約은 제G조 9에서 유럽연합 市民이 住所를 다른 會員國內에 두고 있는 경우 그 聯合市民은 유럽共同體條約(EG-Vertrag)²⁶⁾ 제8b조 1항에 따라 地方選舉에서 選舉

23) '유럽연합에 관한 事項에 있어서 聯邦과 州의 協力에 관한 法律'(BGBI. I 1993, S. 311 f und S. 313 f) 제6조 2항 2문에 의하면 그 基準으로서 長官級을 설정하고 있다. *Ebenda*, S. 484.

24) *Ebenda*.

25) *Ebenda*, S. 483~484.

權 및 被選舉權을 갖는다고 규정하였다. 이 때 聯合市民이 選舉權을 行使하기 위해서는 해당 會員國의 國民과 동일한 條件이 요구된다. 이러한 條約規定을 批准함으로써 基本法은 改正되어야 하였다. 왜냐하면 基本法 제28조 1항 2문에 의하면, 郡과 邑의 選舉에는 基本法 제116조 1항에 따라 獨逸人만이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제38차 基本法改正으로 聯合市民이 地方選舉에 참여할 수 있도록 確定되었으며 이를 통해 유럽 聯合條約과 합치될 수 있었다.

(bb) 유럽中央銀行(Europäische Zentralbank)의 設置

마스트리히트條約 제G조 7과 25의 규정에 따르면, 유럽聯合은 하나의 經濟·通貨聯合이라고 할 수 있다. 同 규정에 따른 經濟·通貨統合政策을 위한 유럽共同體條約의 改正은 유럽聯合機構로서 유럽中央銀行(Europäische Zentralbank)의 設置를 주된 內容으로 한다. 이에 의하면, 會員國의 國內 中央銀行의 地位의 變化는 불가피한 것이다. 각 會員國의 中央銀行은 더이상 自國內에서 독자적으로 유럽聯合의 通貨政策을 수행하지 못하며, 各國 中央銀行의 유럽統合體制로서 유럽中央銀行이 이를 대체하게 되었다.²⁷⁾ 유럽中央銀行은 유럽聯合, 즉 經濟 및 貨幣統合을 위해 通貨政策을 確定하고 실현시키기 때문이다.²⁸⁾

또한 마스트리히트條約에 관한 法律과 관련하여 同 條約의 發效와 함께 高權의 移讓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 改正基本法 제23조 1항 3문에서 立法府는 通貨 및 貨幣政策에 관한 權限을 유럽聯合에 移讓할 憲法的 根據를 갖는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基本法은 제88조 2항을 개정하여 聯邦銀行은 그 任務와 權限을 유럽中央銀行에게 移讓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cc) 유럽聯合分科委員會(Ausschuß für die Angelegenheiten der EU)의 設置

統一獨逸은 유럽統合過程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聯邦議會內에 유럽聯合分科委員會(Ausschuß für die Angelegenheiten der EU)의 設置에 관한 규정을 基本法 제45조에 새로이 두기로 하였다. 제38차 改正을 통해 개정된 基本法 제45조 2문에 의하면 聯邦議會는 聯合分科委員會에게 聯邦政府에 대하여 基本法 제23조에 의거한 權限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聯邦議會는 聯邦政府로부터의 報告權 및 協力權 行使를 위한 機構를 갖추게 되었다. 聯合分科委員會의 議決事項은 聯邦議會의 決議와 같이 聯邦政

26) *Vertrag zur Gründung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vom 25. 3. 1957. 조약 본문은 *Sartorius II*, Nr. 150.

27) *Ebenda*, S. 783 ff; H. Hofmann, *aa.O.*, S. 37 f.

28) 유럽中央銀行은 우선 經濟 및 通貨統合의 제3段階가 시작됨에 따라 그 완전한 機能을 수행한다(유럽共同體條約 제109 1조 1항). H. Hofmann, *aa.O.*, S. 37.

府에게 影響을 미치게 되었다.

이 규정은 유럽 聯合에서의 意思形成過程의 特異性 및 유럽 聯合에 관한 事項에 있어서 聯邦의 意思形成과 決定을 신속히 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聯邦議會의 聯合分科委員會는 기존의 外務分科委員會·國防分科委員會·請願分科委員會 등과 동등한 憲法的地位를 갖는다.²⁹⁾ 다른 聯邦議會의 分科委員會와 비교하여 유럽 聯合分科委員會는 그 權限이 광범위하고 聯邦議會의 全體會議에 개별적으로 案件을 상정할 필요가 없음이 특징이다.

(dd) 유럽 審議會(Europakammer)의 設置

聯邦上院도 聯邦議會의 경우와 같이 유럽 聯合에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制度的 裝置를 필요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聯邦上院은 이미 EEA³⁰⁾에 관한 法律 제2조에 근거하여 유럽 共同體에 관한 事項에 있어 國內的 意思形成에 참여하는 유럽 審議會(Europakammer)를 두고 있었다.³¹⁾

基本法 제23조에 따른 聯邦上院의 유럽 聯合에의 參與와 관련하여 聯邦上院의 任務는 改正基本法 제50조에서 명백히 확대되었다. 이에 의하면, 각 州는 聯邦의 立法과 行政 뿐만 아니라 유럽 聯合에 관한 事項에서도 영향력을 行使하게 되었다. 따라서 聯邦上院은 改正基本法 제52조 3a항에 의해 그 決定이 聯邦上院의 決定과 동일한 效力을 갖는 유럽 審議會에 대한 基本法上的 根據를 마련하였다. 유럽 審議會는 聯邦上院의 全體會議에서의 議決方法에 따라 議決하여야 그 決定은 동등한 效力을 얻게 된다.³²⁾

(ee) 高權의 移讓

改正基本法은 제24조 1a항에서 각 州는 그 權限의 範圍內에서 高權(Hoheitsrecht)을 國境을 인접한 機構에게 移讓할 수 있다. 다수의 見解에 의하면, 州의 高權의 移讓은 지금까지 承認되어 왔다.³³⁾ 그러나 각 州는 경계를 초월한 協力을 통해 안정적이며 포괄적인 超國家的 機構의 設置에 대한 必要性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高權을 行使할 權限이 있는 機構을 통해, 예를 들어 學校敎育, 大學에 관련된 分野 또는 警察法 分野 등에서 인접하고 있는 유럽 地域의 協力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獨逸의 全國家的 利害關係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高權의 移讓은 聯邦政府의 同意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2) 聯邦과 州의 關係調整

29) H. Hofmann, a.a.O., S. 37 f ; H. D. Jarass/B. Pieroth, a.a.O., S. 599 ff.

30) *Einheitliche Europäische Akte - EEA* vom 28. 2. 1986. 條約全文은 *Sartorius II*, Nr. 151.

31) H. Hofmann, a.a.O., S. 37.

32) *Ebenda* ; H. D. Jarass/B. Pieroth, a.a.O., S. 617.

33) H. Hofmann, a.a.O., S. 38.

1990년 7월 10일 西獨과 東獨의 總理는 統一에 앞서 州의 權限強化를 위한 決定을 採擇하였다. 이 決定의 內容은, ① 競合의 立法에 있어서 聯邦의 權限의 대폭적인 制限, ② 聯邦과 州간의 權限의 새로운 分할, ③ 특히 州의 財政的 權限行使에 관련된 聯邦法律에 의한 聯邦上院의 同意權 확대, ④ 聯邦上院에서의 法律案 處理期間의 조정 등이었다.³⁴⁾ 그간 基本法上 聯邦과 州간의 關係調整의 問題는 전반적으로 共同憲法委員會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³⁵⁾ 제37차부터 제41차까지의 基本法改正을 통해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共同憲法委員會는 聯邦上院의 改革 및 議會法 改正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³⁶⁾ 共同憲法委員會는 그 결과 聯邦과 州의 立法權限의 分割 및 立法節次에 대한 일련의 基本法改正에 합의하였다.³⁷⁾

먼저 1992년 7월 14일 제37차 基本法改正³⁸⁾을 통해 基本法 제87d조 1항 2문이 추가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 航空運航의 管理는 聯邦行政의 專屬的 管轄事項으로 되었다. 또한 航空運航管理는 航空運航會社의 運營事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³⁹⁾ 여기서 聯邦의 루프트한자航空會社에 대한 管理에 관한 問題가 제기될 수 있다. 다수의 見解에 의하면, 이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聯邦管理가 아닌 소극적이며 간접적인 管理行政은 가능하다고 보았다.⁴⁰⁾ 개정규정에 따라 聯邦의 管理方法으로써 私營化된 形態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航空安全에 관한 管理는 基本法 제33조 4항(高權行使의 公法人에게로의 移讓)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1994년 8월 30일 제41차 基本法改正⁴¹⁾에 의해 聯邦과 州의 權限은 조정되었다. 改正基本法은 제73조 7호를 추가하고 제87f조를 보충하여 종래 聯邦의 專屬的 立法權限에 郵便制度 및 通信制度 分野를 추가하였다. 郵便制度의 改正에 의해 지금까지의 우편 서비스에 獨逸郵便制度法⁴²⁾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郵便獨占(Postmonopol) 이외의 郵便新聞서비스 등을 포함하게 되었다.⁴³⁾ 그리고 改正基本法은 제73조 7호에서 通信制度도 종래 制度에 모든 電信 및 電話體制에서의 中繼에 관한 기술적인 면을 포함할 수 있도록

34) H. W. Klotz, "Die Gesetzgebung im Bundesstaat," in :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52~53/93, S. 39~40.

35) 張明奉, 前揭論文, pp. 52~53 참조.

36)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A. Meyer, "Parlamentsverfassungsrecht-Anstöße für eine Reform," in :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52~53/93, S. 44 ff ; *BR-Drucksache* 360/92, Abschnitte 3, 4 참조.

37)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 W. Klotz, *aa.O.*, S. 40 ff 참조.

38) *BGBI. I* 1254.

39) H. D. Jarass/B. Pieroth, *aa.O.*, S. 771.

40) *Ebenda.*

41) 이에 따라 基本法 제73조 7호가 追加되었고, 제80조 2항, 제87조 1항 1문이 改正되었으며, 제87f조 및 제143b조가 補充되었다.

42) 獨逸郵便制度法(Gesetz über das Postwesen), *BGBI. III* 901-1. 郵便制度法 全文은 Sartorius I, Nr. 910.

43) H. D. Jarass/B. Pieroth, *aa.O.*, S. 674; *BVerfGE* 80, 124/132 참조.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改正基本法은 제87f조를 보충함으로써 聯邦은 郵便行政 및 通信行政分野에서 聯邦法律을 통해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根據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제80조 2항에서는 聯邦의 郵便 및 通信施設 利用에 관한 原則 및 料金 등에 관하여 聯邦이 法規命을 제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아울러 改正基本法은 제87조 1항 1분에서 郵便 및 通信分野에 대해 尙래의 私有化에 대한 對策을 규정함으로써 이 분야를 聯邦의 專屬的 行政對象에서 제외하였다. 그밖에도 제143b조를 보충하여 郵便分野를 聯邦의 專屬權限으로 전환할 때까지 經過規定을 두었다.

3) 亡命權의 憲法的 制限

1993년 6월 28일 제39차 基本法改正⁴⁴⁾을 통해 亡命權(Asylrecht)과 관련한 基本法 제16조 2항 2문을 삭제하고, 제16a조를 보충하고 제18조 1문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政治的 亡命權을 규정하고 있던 舊基本法 제16조 2항 2문은 삭제되고, 제16a조 1항은 새로이 규정되었다.

獨逸統一後 舊東獨住民의 西獨地域에로의 經濟生活의 확대로 인해 國內의 狀況이 변화와 東유럽 및 아프리카에서 國際情勢의 不安에 따른 亡命希望者의 增加 등은 종래 無制限으로 보장되었던 政治的 亡命에 대한 制限의 배경이 되었다.⁴⁵⁾ 이에 따라 改正基本法은 제16a조에서 政治的 亡命者의 亡命權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였지만, 유럽共同體 會員國과 1951년 7월 28일 難民의 法的 地位에 관한 제네바協定 및 人權 및 基本的 自由保障에 관한 條約의 適用이 보장되는 國家에서 獨逸로 入國하는 者에 대해서는 亡命權을 허용하지 않았다.⁴⁶⁾

2. 基本法 改革 : 제42차 改正

이른바 憲法改革(Verfassungsreform)으로 불리는 제42차 基本法改正案은 1994년 10월 27일 確定되고, 11월 15일 發效되었다. 이로써 獨逸의 憲法改革은 마무리되었으며 4년여에 걸쳐 獨逸統一과 관련되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憲法的 課題를 一段落있게 되었다.⁴⁷⁾ 더욱이 이 제42차 基本法改正은 共同憲法委員會의 改正勸告案이 基礎가 되었고 立法府에서 주도하여 憲法政策의인 觀點에서의 改革으로서 중요한 意味가 있는 것이었다.

立法府에서 憲法改革에 관한 論議의 출발점은 統一獨逸의 立法機關으로서 聯邦上院과 聯邦議會

44) *BGBI. I*, 1002.

45) 張明奉, 前揭論文, p. 52 참조.

46) 亡命權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 D. Jarass/B. Pieroth, *aa.O.*, S. 356 ff 참조.

47) H. Klatt, "Ein außerordentlich beachtliches Paket der Reform," in : *Das Parlament*, Nr. 47 (November 1994), S. 9 ff.

에게 위임되었던 統一條約 제5조이었다. 제42차 개정은 共同憲法委員會와 聯邦議會 및 州議會에서의 論議를 거친 合意의 結果이다. 이에 의거한 基本法의 改正은 14개 條項의 補充,⁴⁸⁾ 5개 條項의 插入,⁴⁹⁾ 6개 條項의 改正,⁵⁰⁾ 3개 條項의 追加,⁵¹⁾ 그리고 2개 條項에서의 削除⁵²⁾ 등을 포함한다. 그 內容을 중심으로 國家目標의 追加的 設定 및 聯邦과 州의 立法權限 調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國家目標의 追加的 設定

제42차 개정에서는 國家目標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環境保護 (제20a 조), 障擱人의 不利益 禁止 (제3조 3항 2문), 男女平等의 實質的 保障(제3조 2항 2문) 등이 憲法의 次元에서 새로이 규정되었다.⁵³⁾

1) 環境保護에 대한 國家的 認識

共同憲法委員會에서 논의된 여러 課題 가운데 環境保護에 관한 國家目標 規定은 基本法에 신설하는데 대해 與野의 意見의 差異가 거의 없었다.⁵⁴⁾ 다만, 問題는 어떻게 環境保護를 國家目標로 基本法에 규정하는가에 있었다. 基民黨·基社黨 聯合의 見解에 의하면, 環境保護는 立法府를 구축하는 憲法政策的 必要性에 의해 經濟的 및 社會的 狀況을 고려하여 經濟成長·産業化에 따른 住居, 雇傭, 交通 및 에너지문제 등과 동등한 지위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⁵⁵⁾ 한편 社民黨의 見解에 의하면 立法府에 의한 環境保護에 관한 立法留保는 사실상 環境保護라는 國家目標을 評價切下하는 것이므로 環境保護問題를 구체적인 憲法秩序로 확보하기 위해 環境保護를 위한 憲法的 根據을 확보하는 것이다.⁵⁶⁾ 이에 쌍방은 共同憲法委員會에서의 論議를 통해 環境保護라는 國家的

48) 해당 조항은 제3조 2항 2문·3항 2문, 제28조 2항 3문, 제29조 8항, 제74조 2항, 제75조 1항 6호 및 2·3·4항, 제80조 3·4항, 제87조 2항 2문 등이다.

49) 해당 조항은 제20a조, 제77조 2a항, 제93조 1항 2a호, 제118a호, 제125a조 등이다.

50) 해당 조항은 제29조 7항 1문, 제74조 1항 1·18·24호, 제72조, 제75호 1항 1문 및 1항 2·5호 등이다.

51) 제72조, 제76조 2·3항.

52) 제74조 1항 5·8호.

53) 勤勞·住宅 및 社會保障에 관한 社會國家目標에 관하여 共同憲法委員會는 與·野간의 의견대립으로 합의된 基本法 改正案을 제시할 수 없었다. 또한 言語, 文化, 人種上의 少數民族(Minderheiten)의 保護를 基本法에 새로이 반영하려던 노력도 基本法 제3조에 근거한 一般의 平等權(제1항)에 포함할 수 있다는 理由로 排除되었다.

54) '國家目標와 基本法'에 관해서는 共同憲法委員會에서 1992년 6월 16일 聽聞會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중요한 主題가 되었다. 論議가 진행됨에 따라 共同憲法委員會의 基民黨·基社黨 委員들은 環境保護라는 國家目標을 人間中心의 觀點에서 파악하였고, 社民黨 委員들은 이에 반하여 環境 자체의 憲法的 保護를 주장하였다. K. G. Meyer-Teschendorf, "Staatszielbestimmung Umweltschutz,"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52~53/93, S. 24.

55) K. G. Meyer-Teschendorf, *aa.O.*, S. 24.

56) *Ebenda*.

課題를 “憲法的 秩序의 範圍內에서 行政府 및 司法府에 의한 法律과 규정의 措置”에 의해 보장하도록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環境保護는 基本法 제20조 1항에서 규정된 國家目標 등과 그 憲法的地位와 重要性에서 동등하게 취급되었다.⁵⁷⁾ 이는 環境保護가 人間의 存在論의 理解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는 인식하에 自然的 生活關係를 國民의 基本權 내지 客觀的 憲法原則으로서가 아니라 國家的 責任의 範圍에서 보장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障礙人의 同等權 保障

改正基本法은 障礙人에 대해 一般人과의 同等權 및 그들의 동등한 社會參與權을 보장하는 任務를 國家에 부여하였다.⁵⁸⁾ 統一獨逸은 基本法에 제3조 3항 2문을 삽입하여 障礙人의 同等權을 보장함으로써 社會國家原理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3) 實質的 男女平等의 保障

改正基本法은 제3조 2항 2문에서 男女平等權의 實質化를 규정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法 앞에서의 平等이라는 의미에서 이해되었던 基本法상의 男女平等의 保障에 女性의 憲法上地位의 強化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이는 法 앞에서의 平等이 본질적으로 兩性간의 平等化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이러한 規範的 平等에 대한 保障만으로 실질적인 男女差別이 해소될 수 없었던 現實을 반영하여 男女平等을 公共의 利益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한다⁵⁹⁾는 주장을 기본법에서 채택한 것이었다.

이에 앞서 共同憲法委員會는 男女平等의 實質的 保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여기에서 社民黨은 舊基本法 제6조(婚姻, 家庭, 婚姻外 出生子), 제3조 2항(男女平等) 및 3항(差別禁止)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제6조의 改正을 주장하였고, 基民黨·基社黨 聯合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된 基本法改正의 必要性을 인정하지 않았다.⁶⁰⁾ 이에 쌍방은 결국 舊基本法 제3조 2항에 國家의 實質的 男女平等의 實現을 위한 노력을 추구하는 規定을 보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國家目標로서의 男女平等 問題의 인식은 구체적인 國家的 措置에 대한 개인의 要求權을 想定하고 있지는 않다.⁶¹⁾ 다만, 개정된 基本權規定은 實質的인 男女平等을 실현하기 위한 聯邦 및 地方的 次元에서 實質的 政策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7) *Ebenda*, S. 23.

58) H. D. Jarass/B. Pieroth, *aa.O.*, S. 123 참조.

59) 獨逸 聯邦憲法裁判所는 女性의 年金에 관한 件 및 夜間作業禁止에 관한 判決에서 남녀간의 實質的 平等의 保障을 강조하였다(*BVerfGE* 74, 163 및 85, 191 참조). 특히 聯邦憲法裁判所는 夫婦간에 家族의 姓에 대하여 合意하지 않을 경우 男便의 姓이 家族의 姓으로 되는 것은 基本法 제3조 2항에 違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BVerfGE* 84, 9).

60) 共同憲法委員會에서 男女平等에 관한 論議의 세부사항은 D. Zapfe, "Gleichberechtigung durch die Verfassung,"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52~52/93, S. 12 f.

61) *Ebenda*, S. 13 ; H. D. Jarass/B. Pieroth, *aa.O.*, S. 113 ff.

(2) 聯邦과 州의 關係 再定立

聯邦과 州의 關係의 再定立에 관한 基本法改正은 共同憲法委員會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는 基本法上 聯邦主義의 본래적 意味를 되살리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基本法은 聯邦과 州가 대등한 地位에서 立法機能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聯邦과 州가 機能的인 權力統制를 가 능하도록 하는 취지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것은 基本法이 제정된 후 州政府의 機能은 약 화되고 聯邦政府의 權限이 강화된 現象을 補正하여 州政府의 機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라고 할 수 있다.⁶²⁾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改正內容을 다음에 몇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1) 州의 權限強化

제42차 基本法改正에서 地方自治行政을 강화하는 基本法 제28조 2항이 補充되었다. 郡은 法律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責任하에 모든 地域共同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權限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同條項에 의해 憲法上 州 自治團體의 財政上의 자기 責任이 강조되었다.

(a) 州의 新編成

統一條約 제5조의 규정에 따라 聯邦과 州간의 關係를 새로이 調整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 다. 改正基本法은 제29조에서 州의 새로운 編成의 節次와 內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제 42차 개정에는 제29조 8항을 개정하여 각 州가 條約을 통해 해당 住民의 同意로 서로 結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새로이 규정하였다.

그러나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는 이른바 東西獨의 統一交渉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兩州의 合意에 의해 하나의 州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118a조가 특별히 규정되었는데, 이는 제29조에 대한 예외적 규정이다.

(b) 社會保險者에 대한 州의 權限擴大

改正基本法 제87조 2항 3문에서 각 州를 위해 각 州의 社會保險者에 대한 權限을 확대한 규정을 보충하였다. 이 규정은 管轄範圍가 한 州의 領域을 초과하고 3개 州를 넘지 않는 社會保險者를 州의 權限內에 있도록 하는 聯邦의 意圖가 반영된 것이다.⁶³⁾

(c) 州의 憲法訴訟參與 擴大

62) 基本法上 聯邦과 州의 關係에 관해서는 許 營, 前揭論文, pp. 260~261.

63) H. Klatt, *aa.O.*, S. 9; H. D. Jarass/B. Pieroth, *aa.O.*, S. 769.

改正基本法은 제93조 2a항에서 각 州는 聯邦上院 및 州政府 이외에 州의 住民代表를 통해 聯邦憲法裁判所に 聯邦의 競合的 立法事項에 대한 合法性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州가 憲法裁判에 參與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하였다. 따라서 州는 聯邦議會가 競合的 立法分野에서 더 많은 裁量權을 행사했는가에 대하여 聯邦憲法裁判所를 통해 비교적 빨리 확정할 수 있게 되었다.⁶⁴⁾

2) 聯邦과 州의 立法權限 調整

聯邦과 州간의 立法權限의 새로운 調整에 관해서는 共同憲法委員會의 論議過程에서 見解差를 많이 보인 부분이었다. 그래서 이에 대해 合意를 도출할 가능성마저 없는 것처럼 보였다. 異見이 많았던만큼 立法分野에서의 州의 權限強化에 대해서는 共同憲法委員會의 勸告案의 상당부분이 基本法改正에 반영되지 않았다.⁶⁵⁾

(a) 聯邦의 競合的 立法權 強化

基本權 改正論議에 있어서 各黨간에 競合的 立法事項에 대한 聯邦의 權限強化에 관해서는 거의 異論이 없었다. 그래서 人間의 人工受精·生命工學·臟器移植 등에 관해서는 聯邦의 競合的 立法事項으로 새로이 규정되었다(제74조 1항 25·26호). 반면 補償額에 대한 權利, 州의 國籍法 및 映畫의 一般法律關係에 관해서는 州의 立法權限에 속한다. 聯邦은 이에 다만 大綱規定만을 제정할 수 있다(제74조). 그리고 聯邦의 大綱法律을 제정할 權限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였다. 이에 의하면 大綱規定은 각각의 경우 細部事項과 직접적으로 유효한 규정까지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聯邦은 大綱立法의 분야에서 市民을 직접적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競合的 立法權에 대한 聯邦의 요구를 규정하고 있는 基本法 제72조 2항의 改正을 통해 聯邦의 立法權限은 제한되었다.⁶⁶⁾ 이로써 競合的 立法權限 내지 大綱規定의 立法權限의 분야에서 聯邦에게 준수될 규정은 州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다. 따라서 聯邦은 자기의 權限에 의해 法律의 制定으로 사실상 가능한 범위내에서만 제한적으로 州의 立法權을 代替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지

64) Il. D. Jarass/B. Pieroth, *aaO.*, S. 811 ff.

65) 이번 개정에서 각 州의 權限強化와 관련하여 敎育制度 分野는 배제되었다. 지금까지 敎育制度의 一般原理는 大綱立法(Rahmengesetzgebung)에 의해 형성되었다. 共同憲法委員會와 聯邦上院은 이 분야에서 聯邦의 權限을 제한하고, 聯邦에서 入學許可·研究課程·試驗·學位 및 大學에서의 敎·講師에 관한 규정을 축소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반해 聯邦政府和 勤勞者 및 企業組合은 敎育制度에 관한 聯邦의 大綱法律 制定權限의 制限을 요구하였다. 또한 聯邦에게 敎育機關의 組織과 行政을 제외한 敎育制度의 一般原則에 관한 立法權을 부여하였다는 각 州의 調整案은 聯邦議會에서 否決되었다. 특히 제42차 基本法改正은 유럽聯속에 관련된 어떠한 새로운 규정도 설정하지 않았다.

66) 共同憲法委員會의 勸告案에 의하면 聯邦의 競合的 立法權에 대한 基準으로 法的 單一性(Rechtseinheit)의 實現을 규정하고, 改正基本法은 여기에 또 經濟的 單一性(Wirtschaftseinheit)의 實現을 추가하였다.

금까지 聯邦의 立法事項으로 되어 있던 專屬的 立法事項에 관하여 改正基本法은 제80조 4항에서 종래 聯邦法律로 되었던 사항은 더이상 聯邦立法으로 가능하지 않게된 경우 州 法律로 代替함으로써 立法權限을 확정하도록 하였다. 즉, 聯邦 次元에서 어떠한 사항을 法律로 정하려면 그 目的 達成을 위해 각 州는 적정한 기간내에 聯邦의 大綱法律을 대체하여야 한다.

(b) 聯邦上院의 權限強化

한편 聯邦上院의 權限은 제42차 基本法改正을 통해 강화되었다. 改正基本法은 제76조 2항과 제80조 3·4항에서 聯邦上院은 州 議會의 同意를 필요로 하는 法律案과 命令制定案의 提案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立法節次와 이에 따른 聯邦政府, 聯邦上院 및 聯邦議會의 協議過程에서의 遵守 期間에 관한 사항 등이 개정되었다. 改正된 제76조 2·3항에 의하면, 상당한 규모의 立法推進과 憲法改正에 있어서 聯邦上院과 聯邦政府의 立場表明을 위한 期間이 6週에서 9週로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⁶⁷⁾

III. 獨逸統一後 基本法改正의 意義와 評價

1. 基本法改正의 意義와 各政黨의 立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獨逸은 基本法改正을 통해 民族的·國家的 課題로서 統一을 達成한 후 발생한 憲法的 課題를 해결하게 되었다. 獨逸統一後 이루어진 몇차례의 基本法改正 가운데 제42차 基本法改正은 基本法의 改革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基本法改正은 社會의 法的 一致성과 그 內的 單一化를 위한 것이었으며, 統一 이후 獨逸의 社會統合 내지 國民統合을 위한 憲法的 合意를 이룬 것이었다. 더욱이 共同憲法委員會가 基本法改正을 위한 勸告案을 마련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基本法改正이 마무리됨으로써 獨逸統一은 憲法的 次元에서 일단 매듭지어졌다고 할 수 있다.

基本法改正論議와 관련하여 獨逸의 各政黨들은 統一後 그들의 根本立場이 달랐기 때문에 누구도 基本法改正의 結果에 전적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⁶⁸⁾ 執權黨인 基民黨-基社黨(CDU-CSU) 聯合은 舊東獨住民에 의해 정당화된 全獨逸의 憲法으로서 基本法은 憲法的 基本秩序로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해 野黨에서는 東西獨 모두에게 統一獨逸의 새로운 憲法秩序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여 新憲法의 制定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論爭은 결국 與野合意로 共同憲法委員會를 구성하여 基本法의 改正作業을 진행시킴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이후 共同憲法委員會의 勸告案에 대해서도 與野의 立場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與黨인 基民黨-基社黨 聯合은 Friedrich-Adolf Jahn 代辯人의 聲明에서 보듯이 基本法은 이

67) H. Klatt, *aa.O.*, S. 9.

68) *Ebenda*; R. Scholz, *aa.O.*, S. 3.

며 全獨逸의 憲法으로 正當化되었다고 하였다. 基本法은 統一獨逸의 憲法이기 때문에 더이상 變更될 수 없다는 것이다. 共同憲法委員會에서 상당히 많은 基本法條項에 대하여 審議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적은 부분만이 完화된 형식으로 '改正'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與黨에서는 기본적으로 勸告案에 따른 基本法改正을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게 평가하였다.

한편 野黨인 社民黨(SPD)은 Hans-Jochen Vogel 代辯인이 밝힌 것처럼 基本法에 國家目標規定을 추가함으로써 共同憲法委員會의 勸告案에 찬성하지만 勸告案의 채택으로 실질적인 憲法改革의 機會를 상실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舊東獨의 住民들에게는 基本法에 대한 國民投票을 통해 獨逸人으로서의 同一性構築이 가능할 수도 있었지만 舊西獨人들의 認識은 그러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基本法에 추가할 사항으로 事實婚 關係의 保護 및 動物에 대한 生命體로서의 保護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반해 다른 野黨들은 勸告案에 따른 基本法改正에 관해 反對見解를 보였다. 自民黨(FDP)은 Deter Kleinert 代辯人을 통해 舊東獨 住民에 의해 진행된 東獨의 西獨으로의 編入으로부터 基本法の 改正에 대한 合意導出은 不可能하였으며, 따라서 共同憲法委員會에서 더이상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同盟90(Bündnis 90)과 綠色黨(Die Grünen)은 勸告案의 採擇으로 全獨逸人의 共同決定과 獨逸全體의 民主주의에 대한 合意와 관련된 요구가 무산되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보다 광범한 基本法改正 및 개정된 基本法에 대한 國民投票을 요구하였다. 끝으로 民社黨(PDS)은 Uwe-Jens Heuer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勸告案은 基本法改革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民社黨과 左翼聯合(Linke Liste)은 완전히 새로운 憲法案을 논의 하자고 주장하였다.⁶⁹⁾

이와 같이 여러 政黨의 共同憲法委員會의 勸告案에 대한 立場은 서로 달랐고, 그래서 勸告案에 基本法改正과 관련한 모든 要求를 담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與野의 合意로 채택한 勸告案에 따라 基本法을 改正한 것은 獨逸統一에 따른 憲法的 課題의 해결이라는 데에서 그 意義를 찾을 수 있다. 共同憲法委員會에서 2년여에 걸친 基本法改正에 관한 論議는 그 勸告案에서 보느냐와 같이 基本法體制의 全般에 걸친 것이었다.⁷⁰⁾ 비록 勸告案에는 모든 基本法改正의 要求를 수용하지 못하고, 또 勸告案이 모두 基本法에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그 主要內容은 제42차 基本法改正에 의해 대부분 반영되었다. 결과적으로 憲法改正과 憲法制定의 이른바 '架橋'(Brücke)로서의 基本法改革⁷¹⁾은 憲法保障의 機能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基本法改正에 대한 評價

獨逸統一 이후 일련의 基本法改正은 憲法的 次元에서 統一을 일단 완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基本法改正은 獨逸統一後의 國家的 課題를 설정하는 역할도 수행하였음

69) 各 政黨의 勸告案에 대한 見解에 관해서는 *Das Parlament*, Nr. 6(Februar 1994), S. 1 ff.

70) E. Busch, aaO., S. 11.

71) D. Blumenwitz, "Wie offen ist die Verfassungsfrage nach der Herstellung der staatliche Einheit Deutschlands?," in :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49/91, S. 6.

은 물론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問題點을 안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첫째, 統一獨逸의 憲法으로서 基本法에 대해 1949년 성립당시부터 제기되었던 民主的·節次的 正當性問題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였다.⁷²⁾ 제2차 世界大戰 이후 聯合軍에 의해 主權이 유보된 狀況에서 형성된 基本法은 成立當時 國民의 正當性이 결여되었다는 問題를 내포하고 있었다.⁷³⁾ 비록 東西獨과 4強大國간에 체결된 條約⁷⁴⁾에 의해 統一獨逸은 완전한 主權을 회복하였지만 分斷을 극복한 獨逸의 基本法은 이에 관해 어떠한 規範的 評價를 하지 않고 있다. 主權者로서의 獨逸國民은 1949년 새로운 國家的 基本秩序에 대한 正當性賦與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1990년 統一達成 이후에도 獨逸人의 새로운 憲法制定에 관한 主權者로서의 主權行使는 결국 基本法秩序內에서 부정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基本法改正은 獨逸民族의 統一國家로서의 獨逸聯邦共和國의 憲法에 대한 國民的 正當性賦與의 問題를 여전히 유보하고 있다.

둘째, 基本法改革은 東西獨國民 모두에게 獨逸의 새로운 憲法秩序의 創造를 위한 機會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舊東獨住民들은 統一後에도 舊西獨住民과의 經濟的·社會的 地位의 差異로 인한 相對的 劣等意識을 가졌고, 그것은 基本法을 그들의 憲法으로 수용하는데 장애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基本法의 改正 보다 새로운 憲法의 制定을 통해 獨逸의 社會的 葛藤을 극복하고 國民的 統合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었다. 그것은 舊東獨住民에게 過去清算을 위한 새로운 國家的 秩序를 창설할 수 있는 機會를 제공하는 것이고, 2等國民 또는 植民地國民으로 스스로를 비하하는 舊東獨住民들을 배려하여 獨逸民族의 和合을 이루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전술하였듯이 基本法改正論議에는 많은 새로운 要求들이 제기되었다.⁷⁵⁾ 이 가운데 國民投票制의 도입을 통해 國家意思形成時 主權者의 직접참여보장에 대한 要求가 基本法改正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直接民主主義制度의 도입에 대한 요구는 과거 바이마르憲法과 나치政權下에서의 부정적인 經驗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이것이 懸案으로 대두되었던 理由로는 市民革命을 통해 統一에 기여했던 舊東獨住民들의 要求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⁷⁶⁾과 그동안 獨逸社會에서 露呈되어온 政黨國家의 危機現象에

72) U. K. Preuß, "Die Chance der Verfassunggebung," in :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49/91, S. 12 ff.

73) 聯合軍과 分斷時代의 獨逸의 法的 地位 및 獨逸統一에 대한 이른바 4大強國의 役割에 관해서는 D. Blumenwitz, *Die Überwindung der deutschen Teilung und die Vier Mächte*, Berlin, 1990, S. 39 ff 참조.

74) *Vertrag über die abschließende Regelung in bezug auf Deutschland (Zwei-plus Vier Vertrag)* vom 12. 9. 1990. 條約 全文은 Sartorius II, Nr. 610.

75) 그 要求들은 基本法前文에 모든 國家의 主權의 平等과 그 尊重의 明示, 自然保護의 憲法的 保護法益으로의 採擇, 실질적인 勞使對等原則 具現, 구체적인 女性의 權益保護, 國號變更, 直接民主主義制度의 導入 등이었다.

76) 舊東獨住民들은 市民革命過程에서 統一後에 그들이 直接的으로 民主政治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하였으며, 그것은 원탁회의그룹의 憲法草案(Arbeitsgruppe "Neue Verfassung der DDR" des Zentralen Runden Tisches, Berlin-Niederschönhausen vom 4. April 1990)에도 그러한 要求를 반영하고 있었다(제99조, 제137조, 제138조). 이에 관해서는 *Verfassungen*

대한 국민들의 認識을 반영한 것⁷⁷⁾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基本法에는 國民發案이나 國民投票 등 直接民主主義制度의 導入은 거부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성숙된 國民意思를 반영하지 않고 政黨의 利害에만 치우친 결정이라는 批判이 제기되었다.⁷⁸⁾

넷째, 基本法의 改正過程에 있어 1949년 基本法制定 이후 全獨逸人口의 過半數가 넘는 前後世代들에게는 憲法秩序 形成에 참여할 수 있는 機會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統一 이후 일련의 基本法改正에서도 이들에 대한 國家的 基本秩序 形成過程에의 參與機會는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分斷 40여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統一獨逸의 미래의 主役으로서 戰後世代들이 統一國家의 憲法秩序 形成에 참여할 機會가 없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요컨대 憲法改正은 그 본질상 一時的 性格을 갖는 것은 아니다. 憲法規範과 現實과의 乖離現象을 완화하기 위한 憲法改正은 憲法規範의 현실에 대한 지속적인 適應過程이라 할 수 있다. 이점에서 변화에 따른 基本法改正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미 제기된 財政憲法(Finanzverfassung) 分野에서의 基本法改正論議⁷⁹⁾는 統一獨逸의 經濟的 憲法秩序 形成을 그 課題로 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獨逸統一의 完成作業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이제 統一獨逸의 憲法으로서 基本法은 앞으로 지속적인 國家的 基本秩序의 創出을 통해 獨逸의 全國民的 統攝의 規範의 根據로서 기능해야 할 사명을 안고 있다.

IV. 獨逸의 基本法改革이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

결과적으로 獨逸의 基本法改革은 基本法改正으로 統一條約에 따른 統一條件을 充足하게 되고, 앞으로 統一獨逸의 憲法인 基本法은 統一과 관련된 改正은 더이상 論議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與黨의 主張을 대부분 반영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獨逸의 統一後의 상황을 볼 때, 동원된 國家秩序와 함께 여전히 존재하는 舊東獨과 舊西獨의 社會的 葛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광범한 基本法次元에서 內的 單一化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野黨의 主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統一 이후 東西獨住民간의 經濟的·社會的 問題는 이른바 統一後遺症을 불러 일으켰으며, 社會的 分裂現象까지 가져왔다. 獨逸에서 중요한 課題는 40여년간 分斷狀况에서 형성된 理想과 體制의 差異에서 온 葛藤을 治愈하여 실질적 社會統攝을 이루는 일이다. 이는 새로운 憲法의 制定을 통해 그 解決方向을 모색할 수 있는 일이었다. 새로운 獨逸憲法의

in der DDR : Textsammlung mit einer Einführung von Erich Fischer, Baden-Baden, 1990, S. 15~58.

77) V. Utich, "Das Weimar-Syndrom," in : *Die Zeit*, Nr. 28, S. 28; 李鍾秀, "東西獨統一의 理想과 現實", 許營 編, 前掲書, p. 279.

78) W. Böhlich, "Schweigen im Walde," in: *Blätter fü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Heft 12(1993), S. 1428~1432; 上掲 論文, 같은 면.

79) 제42차 基本法改正이 완료되지 얼마되지 않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州 財務長官인 슈로이셔(Schleußer)는 財政憲法의 신속한 改正의 必要性을 제기하였다. H. Klatt, *a.a.O.*, S. 9.

制定은 舊東獨住民에게 새로운 國家的 基本秩序의 形成에 獨逸國民으로서 同等하게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西獨住民에 대한 劣等感을 해소하고 國民的 統合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獨逸은 基本法改正을 통해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려 하였다.

이러한 獨逸에서의 基本法改正의 過程과 內容은 南北統一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獨逸의 基本法改正을 통한 統一의 規範的 完成은 南北의 統一과 관련하여 일련 憲法政策的 方向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民族共同體統一方案'은 漸進的·段階的 統一過程을 거쳐 平和的인 合意統一을 前提로 하고 있다. 여기서 최종적인 統一國家의 完成은 民族共同의 生活圈을 바탕으로 政治共同體를 실현하여 南北의 두 體制를 완전히 통합하는 것으로서 1民族 1國家의 單一國家로의 統一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統一憲法를 제정하여 이에 의거하여 平和統一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南北의 統一憲法의 制定은 南北의 憲法體制의 異質性을 극복하여 憲法體制의 價值的 共感帶를 형성하게 될 때 가능한 것이다. 그 길은 南北이 理念과 體制의 差異를 극복하고 점차 서로 대립된 憲法體制下에서 하나의 價値體系에 합의함으로써 열리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價値體系의 共通範圍의 확대는 우리의 統一이 國家體制의 결합이기 보다 民族의 결합, 즉 형식적인 統一 보다 실질적인 統一을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民族共同體 統一方案'에 의하면, 南北의 統一은 먼저 經濟的·社會的·文化的 共同體로의 統合을 이룬후 이를 토대로 政治的 共同體로의 統合을 완성한다는 統一過程을 거치게 된다. 이런 점에서 南北의 統一憲法은 단순한 制度統一을 넘어서 실질적 民族統合을 이룰 수 있도록 그 制定方向과 內容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여기서 강조할 것은 南北의 統一憲法에는 무엇보다 南北의 社會的 葛藤을 해소할 수 있는 憲法秩序를 세우는 規範的 根據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獨逸의 경우 東西獨間의 異質性의 극복을 위한 憲法秩序의 調整은 基本法改正을 통하여 추진되었지만, 南北은 새로운 憲法의 制定으로 民族的 合意를 도출하는 節次를 想定하고 있다. 우리의 統一이 獨逸의 경우와 그 過程과 方式面에서 다른만큼 南北의 統一憲法은 南北의 規範的 統一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社會的·國民的 統合을 이룰 수 있는 國家的 基本秩序를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獨逸의 統一後 4년여에 걸친 基本法改正이 示唆하는 바와 같이 國家 基本秩序形成에 소외되는 國民階層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앞으로 南北은 分斷의 長期化로 말미암아 그 異質性이 獨逸 보다 심화되었다는 점에서 統一憲法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研究가 필요하다.

<參考資料>

共同憲法委員會의 基本法 改正을 위한 勸告案⁸⁰⁾

(1992년 1월 16일 委員會 構成, 1993년 10월 27일 勸告案 確定)

- 제 3 조

(2) 男性과 女性은 平等하다. 國家는 男女平等의 實質的 實現을 추구하며 현재의 不利益 除去를 위해 노력한다.

- 제 20 a조

國家는 後世代를 위한 責任으로 憲法秩序의 범위내에서 立法을 통하여 또한 行政權과 判決을 통한 法律과 規範에 따라 自然的 生活의 基礎를 보호한다.

- 제 20 b조

國家는 人種的, 文化的 및 言語的 少數民族의 同一性을 존중한다.

- 제 23 조

(1) 獨逸聯邦共和國은 統合유럽의 實現을 위해 유럽聯合(Europäische Union)의 發展을 위해 노력하며, 이 유럽聯合은 民主主義的·法治國家的·社會的 및 聯邦主義的 原理와 補充性의 原則에 따르며, 本질적인 면에서 基本法의 基本權保障을 실현한다. 이에 聯邦은 聯邦上院의 同意를 얻은 法律로써 高權을 移讓할 수 있다. 유럽聯合의 創設과 동시에 그 條約上의 根據를 改正 또는 補充하는 규정의 있으면, 이에 따라 基本法도 그 內容에 의해 改正·補充되며, 이에 따른 補充을 가능하게 하는데 關係하여 제79조 2항과 3항을 적용한다.

(2) 유럽聯合에 關係한 事項에 대하여 聯邦議會와 聯邦上院을 통해 各州는 협력한다. 聯邦政府는 聯邦議會와 聯邦上院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 聯邦政府는 유럽聯合의 立法行爲에 협력하기 전 聯邦議會에게 意見을 제시할 機會을 부여한다. 聯邦政府는 交渉時에 聯邦議會의 意見을 고려한다. 상세한 것은 法律로 정한다.

(4) 聯邦上院은 國內的 措置에 협력해야 하거나 州가 그 決定權限을 갖는 경우 聯邦의 意思決定에 참여할 수 있다.

(5) 聯邦이 專屬的 權限을 갖는 범위 내에서 各州의 利害에 영향을 주는 경우 또는 聯邦이 立法權을 갖는 경우 聯邦政府는 聯邦上院의 意見을 考慮한다. 各州의 立法權限, 州 官廳의 設置 또는 州 行政節次 등이 중요한 사항인 경우는 聯邦의 意思形成에 聯邦上院의 意見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며, 이 경우 聯邦의 全 國家的 責任은 유지된다. 聯邦에 대하여 歲出의 增加 또는 歲入의 減少를 조려하는 사항에 關係해서는 聯邦政府의 同意가 필요하다.

80)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52~53/93 S. 49 ff.

(6) 各州의 專屬의 立法權限이 중요한 사항으로 된 경우, 유럽聯合의 構成國으로서 獨逸聯邦共和國에 귀속된 權利의 主張은 聯邦으로부터 聯邦上院에 의해 任命된 州 代表에게 移讓된다. 權利의 主張은 聯邦政府의 參與와 그 贊成으로 성립되며, 이 경우 聯邦의 全國家的 責任은 유지된다.

(7) 제4항에서 6항까지 관련된 細部事項은 聯邦上院의 同意가 필요한 法律로 정한다.

- 제 24 조

(1a) 各州가 國家權限을 행사하고 國家課題를 이행할 權限이 있는 한, 各州는 聯邦政府의 同意하에 境界를 접하고 있는 諸 機關에게 高勸을 移讓할 수 있다.

- 제 28 조

(1) 各州의 憲法秩序는 基本法의 意味에 따라 共和的·民主的 및 社會的 法治國家 原理에 상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州, 郡(Kreis) 및 邑(Gemeinde)에서 住民은 普通·直接·自由·平等 및 秘密選舉로 選출된 代表機構를 가져야 한다. 邑에서는 邑會議을 代表機構의 地位에 代置할 수 있다. 郡 및 邑에서의 選舉時, 유럽共同體 所屬國家의 國籍을 갖고 있는 者는 유럽共同體條約의 權利의 程度에 따라 選舉勸 및 被選舉權을 갖는다.

(2) 邑에 대하여는 法律의 범위내에서 地域共同體의 모든 事項을 自己責任下에 規律할 權利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邑間의 組合은 法律上의 任務領域의 程度에 따라 法律의 範圍내에서 自治行政權을 갖는다. 自治行政은 또한 財政上의 自己責任의 基礎下에 실현된다.

- 제 29 조

(7) 各州의 領域의 그밖의 變更은 州 所屬이 변경되어야 할 領域이 5萬명 이하의 住民을 갖는 경우 該當 州間의 國家條約으로 가능하다. 細部事項은 聯邦上院과 聯邦議會의 過半數의 贊成을 요하는 聯邦法律로 정한다. 聯邦法律은 該當 郡과 邑의 聽問을 규정하여야 한다.

(8) 各州는 제2항에서 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國家條約을 통해 각각 그들에 속한 全領域과 部門領域을 再編成할 수 있다. 該當 郡과 邑은 聽問하여야 한다. 國家條約은 각 該當 州에서 國民決定(Volksentscheid)으로서의 確認이 필요하다. 州의 部分領域 變更에 대한 國家條約에 대한 確認은 該當地域에서의 國民決定으로 제한될 수 있다; 제5문 後段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 國民決定에서는 聯邦議會 選舉權者의 4분의 1 이상의 參與와 投票數의 過半數로 결정한다; 細部事項은 聯邦法律로 정한다. 國家條約은 聯邦議會의 同意가 필요하다.

- 제 45 조

聯邦議會는 유럽聯合分科委員會를 設置한다. 委員會는 聯邦政府에 대하여 제23조에 의한 聯邦議會의 權利를 갖는다.

- 제 50 조

各州는 聯邦上院을 통해 聯邦의 立法 및 行政 그리고 유럽연합의 事項에 협력한다.

- 제 52 조

(3a) 유럽연합에 관한 事項을 위하여 聯邦上院은 유럽審議會(Europakammer)를 構成하며, 유럽 委員會의 결정은 聯邦上院의 決定으로 效力을 가지며, 제51조 2항과 3항 2분은 이에 적용한다.

- 제 72 조

(1) 競合的 立法의 範圍內에서 各州는 聯邦이 그 立法權을 行使하지 않을 경우 立法權을 갖는다.

(2) 聯邦은 그(경합적 입법) 범위내에서 聯邦地域에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 生活關係의 形成 또는 全國家의 利益의 범위내에서 法的 同一性의 實現이 요구될 경우 立法權을 갖는다

(3) 聯邦法律의 규정은 聯邦法律에 의해 제2항의 意味의 必要性이 더 이상 없을 경우 州法으로 代替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다.

- 제 74 조

(1) 競合的 立法은 다음 범위에 미친다.

[5] (삭제)

[8] (삭제)

[18] 土地去來, 土地法(補償額에 관한 權利를 제외한) 및 農業上 賃借制度, 住宅制度, 移住 및 定着制度;

[25] 國家賠償責任

[26] 人間의 人工受精, 檢査 그리고 遺傳因子의 人爲的 變更, 臟器 및 組織의 人工移植에 관한 규정

(2) 제 1항 25호에 관한 法律은 聯邦上院의 同意를 필요로 한다.

- 제 75 조

(1) 聯邦은 제72조의 條件下에 아래사항에 관하여 州의 立法을 위한 大綱規定을 제정할 權限이 있다.

[1a] 教育制度의 一般的 諸 原則, 이 原則이 教育許可, 教育課程, 試驗, 學位, 教 講師와 藝術家에 關連되는 事項

[2] 言論의 一般的 法律關係

[6] 獨逸 文化財의 海外流出에 대한 保護

(2) 大綱規定은 例外的인 경우에 한하여 細部事項에 관한 事項 또는 直接的으로 적용되는 規정을 포함할 수 있다.

(3) 聯邦이 大綱規定을 制定하면, 各州는 法律에 確定的으로 규정한 期間 내에 필요한 州法을 制定하여야 한다.

- 제 76 조

(2) 聯邦政府의 法律案은 우선적으로 聯邦上院에 送付되어야 한다. 聯邦上院은 6週 이내에 이 法律案에 대하여 意見을 제시할 權限을 갖는다. 聯邦上院이 중요한 이유, 특히 法律案의 범위에 대한 이유로 그 期間의 延長을 요구하면, 그 기간은 9週로 된다. 聯邦政府는 聯邦上院에 送付時 例外的으로 특별히 긴급을 요한다고 표시한 경우 法律案을 3週 이후, 또는 聯邦上院이 3문 에 의거 6週 이후 聯邦議會에 送付할 것을 要求時, 또한 聯邦上院의 意見이 聯邦政府에 도달하 지 않을 경우 送付할 수 있다; 聯邦政府는 聯邦上院의 意見을 접수한 후 聯邦議會에 이를 즉시 送付하여야 한다. 이 基本法 改正案과 제23조 또는 제24조에 의한 高權의 讓渡에 관한 法律案 에 대하여 意見 提示期間은 9週이며, 4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3) 聯邦上院의 法律案은 聯邦政府를 통해 6週 이내 聯邦議會에 送付되어야 한다. 聯邦政府는 送付時 그 見解를 提示하여야 한다. 聯邦政府가 중요한 이유, 특히 法律案의 범위를 고려하여 그 期間의 延長을 요구하면, 그 期間은 9週로 된다. 聯邦上院이 法律案을 예외적으로 특별히 緊急을 요하는 것으로 표시하면 그 期間은 3週로 되며, 聯邦政府가 3문에 따라 요구하면 6週가 된다. 基本法 改正案과 제23조 또는 제24조에 의한 高權의 讓渡에 관한 法律案에 대하여 意見 提示期間은 9週이며, 4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聯邦議會는 指定한 期間 내에 論議하여 결정하여 야 한다.

- 제 77 조

[2a] 法律에 대하여 聯邦上院의 同意가 필요한 경우, 聯邦上院은 法律案이 제2항 1문에 의 해 제출되지 않았거나 調整節次가 法律案에 대하여 改正案을 제시하지 않고 終了하면 適正한 期間 내에 그 同意與否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 80 조

(3) 聯邦上院은 聯邦政府의 同意가 필요한 命令制定에 관한 提案을 聯邦政府에 제출할 수 있다.
(4) 聯邦法律에 의거 州 政府에게 命令制定權이 있는 경우 各州는 法律에 의거 聯邦法律을 규정할 수 있다.

- 제 87 조

(2) 管轄範圍가 하나의 州를 넘는 社會保險者는 公法上의 聯邦直轄團體로 運營된다. 管轄範圍가 한 州의 領域을 넘고 3個州 이상에 미치지 않는 社會保險者는 제1문에도 불구하고, 監督州가 관련 州들에 의거 指定되면 州 直轄公法團體로 運營된다.

- 제 87d 조

(1) 航空交通行政은 聯邦行政으로 運營된다. 公法的 또는 私法的 組織形態에 대하여는 聯邦法律로 決定된다.

- 제 88 조

聯邦은 聯邦銀行으로서 通貨 및 發券銀行을 設置한다. 聯邦銀行의 任務와 權限은 유럽中央銀行에 移讓될 수 있다.

- 제 93 조

(2a) 聯邦上院, 州政府 또는 州의 市民代表의 要求에 의해 法律이 제72조 2항의 前提에 合致하는 가에 대하여 意見의 對立이 있는 경우;

- 제 115e 조

(2) 基本法은 (聯邦上院과 聯邦議會의) 共同會議의 法律에 의해 改正될 수 없고, 그 全部 또는 一部가 效力을 喪失하거나 適用이 排除되지 않는다. 제23조 1항 2문, 24조 1항 또는 제29조에 의한 法律制定에 대하여 共同會議는 權限이 없다.

- 제 118a 조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를 포함하는 領域의 新編成은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兩州間의 協議에 의해 選舉權者의 參與下에 결정된다.

- 제 125a 조

聯邦法律로 制定되었으나 基本法의 追加의 改正으로 더이상 聯邦法律로 制定될 수 없는 法律은 聯邦法律로 계속 有效하다. 이 法律은 州法으로 廢止되거나 補充될 수 있다.

<圖表 1>

獨逸統一後 基本法改正 一覽表

改正 次數	改正 日字	根據 法律	改 正 條 項 및 內 容	改正 形式
36	1990. 8. 31	BGB1. II 889	·前文: 統合유럽 및 世界平和의 認識, 新5개 州의 明示, 統一의 完 成 선언	追加
			·제51조 2항: 各州의 聯邦上院에서의 議決權數 조정(基本은 3, 住民 2百萬 이상 州는 4, 6百萬 이상 州는 5, 7百萬 이상 州는 6)	
			·제146조: 全獨逸國民에 基本法適用 명시, 基本法의 有效期間	
			·제23조(基本法의 適用範圍)	
37	1992. 7. 14	BGB1. I 1254	·제135a조 2항: 東獨과 獨逸帝國의 聯關	補充
			·제143조: 基本法의 統一條約 관련 效力 制限	挿入
37	1992. 7. 14	BGB1. I 1254	·제87d조 1항: 航空交通行政	追加
38	1992. 12. 21	BGB1. I 2086	·제23조: 유럽聯合의 實現, 聯邦上院과 聯邦議會의 유럽聯合에 參與	挿入
			·제24조 1a항: 高權의 國際機構에의 移讓	
			·제28조 1항 3분: 유럽聯合 市民의 地方選舉權 認定	
			·제45조: 聯邦議會내에 유럽聯合分科委員會 設置	
39	1993. 6. 28	BGB1. I 1002	·제52조 3a항: 聯邦上院내에 유럽會議 構成	追加
			·제50조: 聯邦上院의 유럽聯合에의 協力	
			·제115e조 2항 2분: 聯邦議會와 聯邦上院의 共同會議에서의 法律制定 權 制限의 근거로 제23조 1항 2분 추가	
40	1993. 12. 20	BGB1. I 2089	·제88조 2분: 聯邦銀行 權限의 유럽中央銀行에의 移讓	補充
			·제16조 2항 2분(亡命權)	削除
			·제16a조: 制限의 亡命權 認定	挿入
41	1994. 8. 30	BGB1. I 2245	·제18조 1분: 表現의 自由 強化	改正
			·제73조 6호: 聯邦의 專屬的 立法事項으로 航空交通 포함	追加
			·제80조 2항: 法規命令制定時 聯邦上院의 同意權 확대	
			·제87조 1항 1분: 聯邦行政의 對象에서 聯邦鐵道와 聯邦郵便의 削除	
41	1994. 8. 30	BGB1. I 2245	·제73조 6a호: 聯邦의 專屬的 立法事項중 聯邦鐵道 관련사항 포함	
			·제87e조: 聯邦鐵道の 聯邦에 의한 管理	
			·제106a조: 州의 公共近郊交通에 대한 1996년 이후 聯邦의 支援	
			·제143a조: 聯邦鐵도에 대한 聯邦의 權限	
41	1994. 8. 30	BGB1. I 2245	·제74조 23호: 競合的 立法事項중 軌道鐵道 포함	追加
			·제73조 7호: 聯邦의 專屬的 立法事項으로 郵便 및 通信制度 포함	追加
			·제80조 2항: 法規命令 制定時 聯邦上院의 同意權	改正
41	1994. 8. 30	BGB1. I 2245	·제87조 1항 1분: 聯邦行政의 對象에서 聯邦鐵道와 聯邦郵便의 삭제	挿入
			·제87f조: 郵便 및 通信 管理	
			·제143b조: 聯邦郵便局 特別財産의 私企業으로의 轉換	

42	1994. 10. 27	BGBl. I 31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 2항 2문: 男女平等의 실질적 실현 · 제3조 3항 2문: 障 碍 人 保 護 · 제28조 2항 3문: 州 地 方 自 治 團 體 的 財 政 責 任 强 조 · 제29조 8항: 州 的 再 編 成 節 次 · 제74조 1항 25호: 競 合 的 立 法 事 項 에 國 家 賠 償 責 任 포 함 · 제74조 1항 26호: 競 合 的 立 法 事 項 에 人 工 受 精, 臟 器 移 植 等 포 함 · 제74조 2항: 聯 邦 上 院 的 國 家 賠 償 責 任 에 的 參 與 · 제75조 1항 6호: 聯 邦 的 大 綱 規 定 에 文 化 財 保 護 포 함 · 제75조 1항 2문: 聯 邦 的 大 綱 規 定 과 第 72 條 3 項 (競 合 的 立 法 事 項 中 聯 邦 法 律) 的 一 致 · 제75조 2항: 例 外 的 大 綱 規 定 的 細 部 的 直 接 的 效 力 認 定 · 제75조 3항: 大 綱 規 定 에 따 른 州 法 律 的 制 定 · 제80조 3항: 法 規 命 令 制 定 時 聯 邦 上 院 的 同 意 權 · 제80조 4항: 州 政 府 的 法 規 命 令 制 定 · 제87조 2항 2문: 例 外 的 社 會 保 險 者 的 州 管 轄 權 認 定 	補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a조: 環 境 保 護 · 제77조 2a항: 法 律 案 確 定 時 聯 邦 上 院 的 決 定 · 제93조 1항 2a호: 聯 邦 上 院, 州 政 府 及 州 的 住 民 代 表 에 의 한 憲 法 訴 訟 權 認 定 · 제118a조: 베르린과 브란덴부르크의 新 編 成 · 제125a조: 聯 邦 法 律 的 效 力, 聯 邦 法 律 的 州 法 律 에 的 代 置 	挿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9조 7항 1문: 州 領 域 變 更 時 聯 邦 上 院 的 同 意 要 件 中 住 民 數 1 萬 以 內 5 萬 以 外 로 制 定 · 제74조 1항 18호: 競 合 的 立 法 事 項 中 土 地 權 에 報 償 額 에 對 한 權 利 限 制 的 制 定 · 제74조 1항 24호 (文 章 符 號 變 更) · 제75조 1항 1문: 聯 邦 的 大 綱 規 定 을 州 政 府 를 爲 上 爲 權 限 增 加 · 제75조 1항 2호: 聯 邦 的 大 綱 規 定 事 項 中 影 畫 的 制 定 · 제75조 1항 5호 (文 章 符 號 變 更) 	改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2조: 州 的 競 合 的 立 法 權 擴 大, 聯 邦 的 競 合 的 立 法 權 的 範 圍, 聯 邦 法 律 的 州 法 律 에 的 代 置 · 제76조 2항: 聯 邦 政 府 的 法 律 案 에 對 한 聯 邦 上 院 的 意 見 提 示 期 間 을 6 週 以 內 9 週 以 外 로 延 長 · 제76조 3항: 聯 邦 上 院 的 法 律 案 에 對 한 聯 邦 議 會 會 議 的 送 付 期 間 을 3 個 月 以 內 6 週 以 外 로 制 定 	追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4조 1항 5호 (文 化 財 海 外 流 出 防 止) · 제74조 1항 8호 (州 的 國 籍) 	削除

<圖表 2>

共同憲法委員會의 基本法改正을 위한 勸告案과 基本法改正

共同憲法委員會의 勸告案(1993. 10. 27)	該當 基本法 改正	備考
·제87d조 1항: 航空交通行政	제37차 개정(1992. 7. 14)	勸告案에서 基本法改正을 確認
·제23조: 유럽聯合의 實現, 聯邦上院과 聯邦議會의 유럽聯合에 參與 ·제24조 1a항: 高權의 國際機構에의 移讓 ·제28조 1항 3문: 유럽聯合 市民의 地方選舉權 認定 ·제45조: 聯邦議會내에 유럽聯合分科委員會 設置 ·제50조: 聯邦上院의 유럽聯合에의 協力 ·제52조 3a항: 聯邦上院내에 유럽會議 構成 ·제88조 2문: 聯邦銀行權限의 유럽中央銀行에 移讓 ·제115e조 2항: 聯邦議會와 聯邦上院의 共同會議에서 法律制定權 制限의 근거로 제23조 1항 2문추가	제38차 개정(1992. 12. 21)	勸告案에서 基本法改正을 確認
·제3조 2항: 男女平等의 실질적 실현 ·제20a조: 環境保護 ·제28조 2항 3문: 州 地方自治團體 財政責任 ·제29조 7항: 州領域變更時 聯邦上院同意要件 조정 ·제29조 8항: 州의 再編成 節次 ·제72조: 聯邦의 競合의 立法權 ·제74조: 競合의 立法 ·제75조: 大綱立法 ·제76조 2, 3항: 法律案 ·제77조 2a항: 法律案 確定節次 ·제80조 3, 4항: 法規命令의 制定 ·제87조 2항: 聯邦行政의 對象 ·제93조 1항 2a호: 聯邦憲法裁判所의 管轄權 ·제118a조: 베르린과 브란덴부르크의 新編成 ·제125a조: 聯邦法律의 效力, 州法에 의한 聯邦法律의 代치	제42차 개정(1994. 10. 27)	勸告案에 따른 基本法改正 確定
·제20b조: 少數民族의 保護		基本法改正에 未反映

南北예멘의 統一過程과 統一憲法에 관한 研究

張 明 奉(국민대 교수·헌법학)

— 目 次 —

- I. 序言:南北예멘의 統一背景과 本研究의 必要性
- II. 南北예멘統一의 主要過程
- III. 예멘統一憲法의 成立過程
 - 1. 統一憲法의 合意過程
 - 2. 統一憲法의 採擇과 過渡期 體制의 發足
- IV. 예멘統一憲法의 構成과 內容
 - 1. 國家體制
 - 2. 國民의 基本權
 - 3. 統治構造
 - 4. 其他
- V. 예멘統一憲法의 特色과 段階的 統一過程
 - 1. 統一憲法確定의 節次上 特色
 - 2. 統一憲法의 內容上 特色
 - 3. 「過渡期合意書」와 分野別 統合推進
- VI. 結語: 예멘統一의 段階的 發展過程

1. 序言: 南北예멘의 統一背景과 本研究의 必要性.

원래 예멘(Yemen)은 오랜 歷史的 傳統을 배경으로 固有文化를 꽃피웠던 곳으로,¹⁾ 海上交通의 戰略要衝地로서 地政學的 重要性으로 인해 世界列強의 角逐場이 되었으며, 예멘의 南北分斷도 여기에 기인하였다.²⁾ 일찍이 예멘은 6세기초 이디오피아에 정복된 이래 1583년부터는 오스만 터키의 지배를 받아오다 1839년 英國이 南예멘地域의 아덴(Aden)港을 점령하면서부터 예멘의 領土的 分斷은 시작되었다. 北예멘地域은 1918년 오스만 터키가 1次 世界大戰에서 패하자 예멘의 傳統을 계승한 야흐야 이맘(Yahya Imam)政權이 統治하는 獨立國家가 되었다가 1962년 9월 살랄(Allah Sallal)의 軍事쿠데타에 의해 共和政이 실시되었고,³⁾ 이에 따른 共和派와 王政派의 內戰을 거쳐 1970년 12월 「예멘아랍共和國」(Yemen Arab Republic)憲法의 新포로 새로운 共和國이 탄생하였다.⁴⁾

반면에 南예멘地域은 아랍民族主義와 植民地獨立運動에 힘입어 1967년 이 地域을 直轄植民地化하여 統治하던 英國으로부터 獨立하였는데, 獨立運動過程에서 「占領下南예멘解放戰線」(Front for the Liberation of Occupied South Yemen:FLOSY)과 「民族解放戰線」(National Liberation Front:NLF)이 主導權 다툼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蘇聯과 中國의 지원하에 NLF의 샤비(Qahtan Al-Shaabi)書記長에 의하여 「南예멘人民共和國」(People's Republic of South Yemen)이 수립되었다⁵⁾[그후 1970년 憲法制定時 國名이 「예멘人民民主主義共和國」(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Yemen)으로 改稱됨].

1) 古代부터 이슬람敎 傳來까지의 예멘文化에 관해서는 Werner Daum(ed.), *Yemen, 300 Years of Art and Civilization in Arabia Felix*(Innsbruck: Pinguin-Verlag, 1987), pp.9~128.

2) 洪淳男, “南北예멘의 統一政策과 UN”, 「統一問題研究」, 第3卷 3號(統一院, 1991 가을), pp.107~108.

3) 「中東·北아프리카年鑑 1977~78」(東京: 中東調査會, 1979), p.427; 「中東의 政治情勢」(國際問題調査研究所, 1980.5), pp.121~122; *Britannica*, Vol.13(Chicago: Encyclopaedia Britannica, 1983), p.901.

이맘制統治에 관한 詳論은 Robin Bidwell, *The Two Yemen*(Burnt Mill: Longman House, 1983), pp.54~65; J. E. Peterson, *Yemen: The Search for a Modern State*(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1982), pp.37~62.

4) 이른바 '예멘內戰'에 관해서는 Robin Bidwell, *ibid.*, pp.195~218.

5)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1978~79*(London: Europa Publications, 1978), p.817; Tareq Y. Ismael & Jacqueline S. Ismael,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Yemen-Politics, Economics, and Society*(London: Frances Pinter, 1986), pp.13~16; 金秀南, “南北예멘의 統一過程과 敎訓”, 「國防研究」, 第3卷 1號(國防大學院 安保問題研究所, 1991.5), p.55; Lawrence Eiring, *The Middle East Political Dictionary*(Santa Barbara: ABC-CLIO Information Services, 1984), pp.3~5; George Lenczowski, *The Middle East in World Affairs*, 4th ed., esp. XV(London: Cornell Univ Press, 1980), pp.642~644.

이렇게 출범한 남예멘은 中東 唯一의 마르크스-레닌主義的 社會主義體制를 표방함으로써, 非同盟中立路線의 回教國의 立場을 고수하던 당시의 北예멘과는 필연적으로 이데올로기의 對立을 초래하여 兩國間 分斷과 對決의 時代가 시작되었다. 특히 地政學的 環境要因에 의한 外勢介入, 南北예멘의 共通的인 政派間 對立深化에 따른 政情不安, 南北예멘간 상호 理念과 體制의 對立에 의한 敵對行爲 등은 兩國間 分斷을 심화시켜 統一에 커다란 障礙要因이 되었다.⁶⁾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南北예멘은 單一民族性을 바탕으로 동일한 歷史的·宗教的 背景下에 꾸준히 統一努力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南北예멘은 1972년의 카이로協定 및 트리폴리聲明에서 統一의 方法 및 基本原則과 統一憲法의 基本原理에 合意할 수 있었고, 兩國이 모두 政治變革에 따른 對內外的 環境要因에 의해 統一推進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⁷⁾ 兩國國民들의 統一熱望과 兩國政治指導者들의 統一努力으로 統一憲法案을 마련해 마침내 1990년 統一憲法에 의거한 統一國家를 이룩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1990년 5월 22일 南北예멘은 統一을 선포하고 「예멘共和國」(Republic of Yemen)이란 單一國家를 樹立하였다. 北예멘의 自由民主主義體制와 南예멘의 社會主義體制로 對立하며 分斷狀態를 지속했던 남북예멘의 統一은 같은 分斷國인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과 동시에 부러움을 안겨주었다.

실제로 南北예멘이 統一을 선포할 당시만해도 그때까지 兩國의 對立과 對內外的인 環境에 의해 統一에 대한 회의적인 展望이 지배적이었다.⁸⁾ 그러나 國際情勢의 급격한 변화는 南北예멘의 統一環境을 改善시켜 예상과는 달리 빠른 統一을 가능케 하였다. 특히 舊蘇聯 및 東歐社會主義國家의 改革의 파장은 南예멘 社會黨政權에도 미쳤으며, 이에 따라 南예멘은 마르크스-레닌主義理念의 社會主義路線을 拋棄하고 多黨制를 채택하는 등 改革措置를 취함으로써 담보상태에 머물던 統一問題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⁹⁾

여기서 예멘統一過程에서 看過되어서는 안될 것은 예멘統一이 결코 國際情勢의 변화에 順應한 일순간의 結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 統一過程을 볼 때 單一民族性을 바탕으로 人的·物的 交流, 이를 통해 쌓은 信賴, 兩國指導者들의 統一意志와 努力, 統一合意精神의 維持, 그리고 統一準備를 위한 法·制度의 整備 등이 통일 의 밑받침이 되었음을 알 수 있

6) 「統一예멘共和國 合意過程事例研究」(國土統一院, 1983), pp.141~143; 洪淳男, 前掲論文, p.110; 沈義燮, 「예멘共和國의 南北統一經緯」, 「民族統一」(民族統一促進會, 1990 7·8월호), p.27.

7) 北예멘의 政治變革에 관해서는 Robert Burrows, *The Yemen Arab Republic: The Politics of Development, 1962~1986*(Boulder: Westview Press, 1987), pp.28~132; 「中東의 政治情勢」, 前掲書, pp.123~125.

南예멘의 政治變革에 관해서는 Tareg Y. Ismael and Jaequeline S. Ismael, *op. cit.*, pp.20~78.

8) Robin Bidwell, *op. cit.*, p.337; 「分斷國統合事例研究」(國土統一院, 1986), pp.138~139.

9) 「예멘統一關係 資料集」(國土統一院, 1990), p.61; 洪淳男, 前掲論文, p.60.

한 基本原則을 정하였다. 또한 憲法委員會를 비롯한 8개의 共同專門委員會의 설치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트리폴리頂上會談(1972. 11. 28) 결과 발표된 트리폴리聲明¹²⁾에서 統一國家의 國名·國旗·首都·國教·國語와 統治體制를 정하고, 單一政治組織의 基本制度를 정하기 위한 共同委員會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統一原則에 합의한 후 統一에 대한 기대속에서 北예멘에서는 共和派와 王政派의 對立으로 인한 政治的 混亂이 야기되었고, 이 혼란은 兩國間의 소규모 國境衝突事態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이에 따라 알제리會談(1973. 9. 4)에서는 카이로協定 및 트리폴리聲明에서 정한 共同委員會의 業務遂行期間의 不充分性을 인정하고, 兩國政情이 不安定함에도 불구하고 統一國家의 樹立原則을 재차 확인하고 共同委員會의 業務를 監督하기 위한 特使委員會의 構成에 합의하였다.¹³⁾ 그후에도 兩國은 相互 領空을 봉쇄하는 등의 紛爭을 빚었지만, 카타바會談(1977. 2. 15)¹⁴⁾에서 外務·經濟·通商·企劃部長官으로 구성되는 共同委員會를 설치하여 사나(北예멘의 首都)와 아덴(南예멘의 首都)에서 6개월마다 번갈아가며 會議을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이런 과정속에서 1979년 2월 하순 4천여명의 사상자를 낸 國境紛爭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南北예멘은 아랍聯盟의 적극 仲裁¹⁵⁾로 쿠웨이트頂上會談(1979. 3. 30)을 개최하여 共同聲明을 발표하였다.¹⁶⁾ 이에 는 아랍聯盟의 仲裁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完전한 降伏을 강요하기 보다는 相互 妥協하여 共存하는 統一이 현실적이라는 發想의 전환이 바탕이 되었다. 여기서 카이로協定, 트리폴리聲明, 아랍聯盟評議會의 仲裁案의 遵守를 천명하고 統一 憲法制定을 위한 憲法委員會의 구체적일정에도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나會談(1979. 10. 4)의 共同聲明에서는 쿠웨이트聲明에서 정한 共同委員會의 活動時限에 관한 猶豫期間을 두었다.¹⁷⁾

그리고 北예멘特使가 南예멘을 방문하여 채택한 아덴合意書(1980. 5. 6)에서는 經濟分野의 活性化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協力強化와 統一의 계속추진을 강조하였다.¹⁸⁾ 1980년대에 들어서 南北예멘은 兩國民往來에 관한 內務長官協定(1980. 6. 10)을 맺은데 이어 公報·文化·教育分野業務調整 및 예멘觀光株式會社·예멘陸海上運送株式會社 등의 설립에 합의(1980. 6. 12)하고, 또 天然資源의 共同開發에 관해서도 政府間 協定(1982. 1. 23)에 합의하였다.¹⁹⁾

12)이 共同聲明의 全文은 上掲書, pp. 26~31.

13)上掲書, pp. 32~33.

14)上掲書, p. 48.

15)이에 따라 아랍聯盟評議會 特別會議決議案이 작성되었다. 이 決議案의 內容은 上掲書, pp. 51~52.

16)上掲書, pp. 53~55.

17)上掲書, pp. 56~57.

18)上掲書, pp. 60~61.

南北예멘은 1981년 12월 2일 「南北예멘간 調整 및 協力에 관한 協定」²⁰⁾을 체결하여 「예멘最高評議會」(Yemeni Council)와 「共同閣僚委員會」(Joint Ministerial Committee)를 구성하고, 經濟·教育·文化·公報·相互往來 그리고 外交政策分野의 協力에 관한 細部規定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예멘最高評議會 事務局」(Secretariat of the Yemeni Council)의 組織과 業務에 관해서도 정하였다.

그리고 1981년 12월 30일 憲法委員會는 13次會議에서 統一憲法草案을 완성하고 이를 채택하였다. 南北예멘은 1982년 9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의 예멘最高評議會, 3차례의 共同閣僚委員會, 12차에 걸친 예멘最高評議會 事務局會議를 개최하여 統一國家의 기반을 다졌다.

21) 특히 예멘最高評議會의 決定(1983. 8. 18)에 따라 1985學年度부터 南北예멘 單一歷史敎科書를 채택하여 이를 모든 學校에서 敎育함으로써 社會統合의 중요한 契機를 마련하였다.

22) 그러나 1986년 1월 南예멘에서의 流血쿠데타 발생과 같은 政治的 狀況은 統一의 완성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南北예멘은 1988년 5월 4일 兩國民 往來에 관한 通行協定을 체결하여 兩國檢問所를 철거한 후 共同檢問所를 설치하고 동년 6월 1일부터는 身分證確認만으로 自由往來를 허용하였다. 또한 經濟統合의 具體化作業으로서 兩國間 電力體系를 통합하고, 1988년 11월 19일 「南北예멘間 共同地域開發에 관한 合意書」에 따라 兩國이 共同出資(1,000만불)하여 예멘石油·鑛物開發株式會社를 설립함으로써 실질적인 統一의 길로 들어섰다.²³⁾

더욱이 南예멘은 1989년 11월 社會主義國家들에서의 改革에 영향을 받아, 집권예멘社會黨은 蘇聯式 政治體制의 終熄을 선언하고, 一黨統治의 獨裁體制를 완화하여 政府統制의 言論에 討論과 批判記事의 掲載을 許容하는 등의 改革政策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南예멘에서의 改革政策은 결과적으로 南北예멘의 統一環境을 개선시키고 統一의 날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²⁴⁾

Ⅲ. 예멘統一憲法의 成立過程

19) 南北예멘간 交流協力에 관한 詳細한 內容은 上揭書, pp. 70~101.

20) 이 協定의 全文은 張明奉, 「國家聯合事例研究」(國土統一院, 1986), pp. 166~175; 「예멘統一關係 資料集」, 前揭書, pp. 108~114.

21) 예멘最高評議會 事務局 活動에 관해서는 上揭書, pp. 115~117.

22) 「예멘統一過程과 部門別統合實態」, 南北統合對備計劃 參考資料Ⅱ(統一院, 1991.10), p. 12.

23) 이에 관한 詳細한 內容은 上揭書, pp. 119~236; 「예멘統一過程과 部門別統合實態」, 上揭資料, p. 7.

24) 「世界日報」, 1989년 12월 19일, p. 7.

1. 統一憲法の 合意過程

(1) 카이로協定

南北에멘은 1972년 9월 26일 國境衝突 후 아랍聯盟의 仲裁로 카이로會談을 개최하여 北에멘의 外務長官과 南에멘의 國防長官이 署名함으로써 카이로協定(1972. 10. 28)을 채택하였다. 이 協定은 예멘아랍共和國(北에멘)과 예멘人民民主主義共和國(南에멘) 兩國政府는 예멘國民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존재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南北에멘의 單一國家 樹立에 합의하고, 統一의 基本原則을 정하였다.

統一國家의 基本原則으로는 南北에멘의 國家的 個性이 融合된 統一을 이룬다고 정하고(제1조), 統一國家의 構成은 하나의 國旗·슬로건·首都, 한사람의 指導者, 하나의 立法府·行政府·司法府로 하며(제2조), 統一國家의 統治體制는 民主·民族·共和體制(제3조 1항)라고 밝혔다. 그리고 統一憲法은 “모든 大衆·團體, 즉 民族·職業團體·勞組 등의 모든 個人的·政治的·一般的 自由를 보장하며, 自由保障에 필요한 모든 方法을 채택한다”는 基本原則을 정하였다(제3조 2항).

統一實現方法과 새로운 國家의 樹立을 위해서는 兩國頂上會談의 開催를 제사하고(제4조), 頂上會談에서 兩國의 法律과 制度의 統一을 위한 같은 數의 兩國代表로 구성되는 8개의 共同專門委員會²⁵⁾를 두고 이들 委員會의 業務는 1年期限內에 종료토록 하였다. 이들 委員會 중 憲法委員會는 統一憲法案 制定을 管掌하도록 하여 統一憲法制定에 의한 統一國家의 樹立을 淸명하였다(제7조, 제8조).

그리고 憲法委員會가 統一憲法案制定 완료후 兩國憲法에 의거하여 兩國立法議會에 統一憲法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9조), 兩國頂上은 兩國 立法機關에 統一憲法에 대한 國民投票實施를 위임하고, 새로운 統一憲法에 의거해 單一立法機關을 구성한다고 하였다(제10조). 그리고 兩國의 立法議會는 國民投票에서 새로운 統一憲法案이 통과되면 즉시 解散되고(제11조), 國民이 統一憲法案에 동의할 경우 그 憲法에 따라 즉시 새로운 統一國家를 樹立한다고 하였다(제12조).

이처럼 카이로協定에서 南北에멘은 統一의 基本原則은 물론 統一憲法制定을 통한 統一의 方法과 節次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합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트리폴리聲明

兩國의 頂上은 1972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會談후 트리폴리聲明을 채택하였다. 여기

25)8개의 共同專門委員會는 憲法委員會, 外務委員會, 經濟財政委員會, 法律·司法委員會, 敎育·文化·公報委員會, 軍事委員會, 保健委員會, 運營·公共施設委員會 등이다.

서 두 頂上은 예멘인들의 고난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方法으로 君主政治, 이맘(Imam)制度, 植民主義의 殘滓除去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兩國頂上은 共同委員會의 任務遂行과 與件造成을 위한 基本事項에 합의하였는데, 그 內容은 統一憲法의 基本方向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첫째, 「예멘共和國」이라는 單一國家를 樹立한다.

둘째, 赤·白·黑色으로 된 하나의 國旗를 제정한다.

셋째, 사나(Sana'a)市는 예멘共和國의 首都이다.

넷째, 國教는 이슬람敎이며, 이슬람法 샤리아(Sharia)를 立法의 主要源泉으로 한다.

다섯째, 國語는 아랍語이다.

여섯째, 國家는 아랍이슬람形態를 추구하고, 人間價値의 侵害를 금지하며, 社會的 正義를 실현할 수 있는 예멘社會與件形成을 추구하면서 社會主義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國家는 社會의 社會主義關係의 樹立을 통하여 충분한 生産量을 달성하고 平和的으로 階層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分配의 公正을 기한다.

일곱째, 公有物은 社會發展과 生産實現의 기초이고, 生産外的인 私的 所有物은 보호되며 法에 의하지 않거나 公正하게 補償되지 아니하는한 沒收될 수 없다.

여덟째, 예멘共和國의 統治體制는 民主的·民族的 共和體制이다.

아홉째, 이맘制度和 帝國主義의 잔재와 후진성, 新·舊帝國主義, 시온帝國主義에 對抗하는 課業을 위하여 國民各階層을 포함하는 單一政治組織을 구성하고, 이 政治組織의 基本制度를 제정하기 위한 하나의 共同委員會를 구성한다.

열째, 예멘共和國 憲法은 國境을 정한다.

그리고 이 聲明에서는 憲法委員會를 비롯한 8개 共同專門委員會를 구성하고 各委員들을 선정하였다.²⁶⁾ 특히 憲法委員會에 대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統一憲法案準備의 完료를 촉구하였다.

(3) 알제리會談 및 카타바會談

兩國頂上은 카타바地域의 國境衝突(1973년 5월)로 인한 파괴활동에도 불구하고 알제리會談(1973. 9. 4)에서 예멘統一을 위한 基本合意精神을 존중하는 意志를 천명하였다. 이 會談에서 각 共同委員會가 業務推進을 위해 부여받은 期間이 충분치 못하다는 데에 합의하고 兩國頂上의 特使에게 各委員會의 체계적인 日程을 정할 수 있는 權限을 부여하였다.²⁷⁾ 이어 알후다이다會談(1973. 11. 11)에서 兩國頂上은 제차 統一原則의 계속추진을 강조하였다.

26)카이로協定에서 정한 8개 共同專門委員會와 같으며, 이 聲明에서는 이들 委員들의 명단을 밝히고 있다. 「예멘統一關係 資料集」, 前掲書, pp. 28~30.

27)上掲書, pp. 33~34.

그리고 카타바會談(1977. 2. 15)²⁹⁾에서 兩國頂上은 國防·經濟·貿易·企劃·外交 責任者 들로 構成되는 協議會의 조직을 합의하고 사나와 아덴 兩都市에서 6개월마다 會議를 개최 하도록 하였다. 또한 南北에멘의 發展과 經濟計劃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報告書를 제출하 는 임무를 띤 經濟·企劃·貿易分科委員會를 構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이에 特使委員 會는 에멘統一協定(카이로協定, 트리폴리聲明)의 집행을 위한 수차례의 會議를 개최하였다.

(4) 쿠웨이트頂上會談 共同聲明

1979년 2월 南北에멘間의 國境紛爭 후 아랍聯盟은 이 紛爭에 적극개입하여 이를 仲裁하 면서 兩國의 統一原則의 尊重을 추구하는 決議案³¹⁾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南北에멘은 쿠웨이트에서 열린 頂上會談(1979. 3. 28~30)의 共同聲明³²⁾에서 統一憲法完成을 앞당기기 로 합의하였다. 이는 憲法委員會가 7차의 會議를 마친 후 兩國指導部에 統一憲法案을 신속 하게 마련하도록 권고한 것인 바 당한 것이었다.

이 聲明은 에멘國民 모두의 直接選舉原則下에 民主·民族·共和制의 樹立, 大衆과 各種 團體의 個人的 自由와 公的·政治的 自由를 보장하는 憲法創出, 自由守護를 위한 모든 方 法講究 등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統一憲法制定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憲法委員會는 4개월 이내에 統一國家 憲法案을 마련한다.

둘째, 兩國頂上은 統一憲法案을 결정하기 위한 會議를 개최하며, 最終憲法案에 대한 承認 을 위하여 相互 同意한 기간내에 兩國의 立法議會를 소집한다.

셋째, 兩國頂上은 統一國家의 單一 立法府 구성과 憲法案에 대한 國民投票의 監督業務를 담당하는 閣僚委員會를 구성한다.

넷째, 兩國頂上은 카이로協定, 트리폴리聲明 및 아랍聯盟決議案에 명기된 규정과 각 統一 委員會의 決議案·勸告案을 준수한다.

다섯째, 兩國頂上은 定期會談을 통하여 憲法委員會를 비롯한 共同委員會의 業務結果를 감독한다.

끝이어서 兩國頂上은 사나會談(1979. 10. 4)의 共同聲明³³⁾에서 카이로協定, 트리폴리聲明

28) 上揭書, pp. 34~35.

29) 上揭書, p. 48.

30) 特使委員會의 聲明 및 勸告案은 上揭書, pp. 36~37.

31) 國境衝突에 관해서는 Robin Bidwell, *op. cit.*, pp. 318~320. 아랍聯盟評議會는 特別會議 決議案을 作成하였는데, 그 內容은 上揭書, pp. 51~52.

32) 上揭書, pp. 53~55.

33) 上揭書, pp. 56~59.

및 쿠웨이트共同聲明의 執行에 대한 決意를 다지고 各共同委員會가 조속한 시일내에 임무를 완성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兩國統一을 앞당기기 위해서 公共 및 民間團體의 交流를 강조하였다.

(5) 「南北예멘間 協力 및 調整에 관한 協定」

北예멘大統領이 南예멘을 訪問하여 이루어진 아덴頂上會談(1981. 11. 30~12. 2)에서 「南北예멘間 協力 및 調整에 관한 協定」을 채택하였다. 이 協定은 예멘領土와 國民의 統一에 있어서 國民의 最大利益實現을 위해 모든 分野에서 兩國間의 協力과 調整을 확대하는 것이 目的이었다. 이를 위해 다음의 機構를 구성하고 그 運營과 任務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정하였다.³⁴⁾

첫째, 예멘最高評議會(Yemeni Council)는 兩國頂上으로 구성하며, 사나와 아덴에서 6개월마다 定期會議 또는 臨時會議를 개최하고, 각 統一委員會(Unity Committee)를 감독하고 統一委員會의 議決事項을 承認·監督한다.

둘째, 共同閣僚委員會(Joint Ministerial Committee)는 兩國의 總理(또는 副總理), 外務·內務·企劃·敎育·軍司令官으로 구성되며, 3개월마다 會議를 개최하고 議長은 兩國이 교대로 담당한다. 여기서는 兩國間 共同事業의 執行監督, 經濟·社會發展計劃의 調整 등의 任務를 수행한다.

셋째, 事務局(Secretariat)은 6명의 共同代表로 구성되며 예멘評議會와 共同閣僚委員會의 行政機能 및 南北예멘의 關係機關들간의 調整業務를 수행한다.

이같은 機構의 構成과 任務를 보면 그것은 統一까지의 過渡的 體制를 마련한 것이며, 그 業務遂行은 統一을 향한 兩國間의 協力과 調整을 이루어나가는 것으로서 兩國間의 合意原則을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시킨 것임을 알 수 있다. 兩國은 이 協定을 통해 經濟·敎育·文化·公報, 國民往來, 外交政策分野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이들 分野에서의 協力原則을 정하여 統一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2. 統一憲法の 採擇과 過渡期體制的 發足

(1) 統一憲法の 採擇과 「예멘共和國」의 樹立

쿠웨이트聲明에서 정한 4개월내의 憲法委員會에서의 統一憲法마련은 실행되지 못하였지만, 憲法委員會는 9년간 13차의 會議끝에 1981년 12월 30일 最終統一憲法案을 마련하여 兩國頂上에게 제출하였다.³⁵⁾ 그러나 이 憲法에 따른 즉각적인 統一國家樹立은 兩國의 政治的

34) 이 協定의 全文은 上揭書, pp.108~114; 張明率, 前揭書, pp.166~175.

狀況으로 미뤄졌다. 그러던 중 1988년 4월 17일 南北예멘共同合意書에서 兩國頂上은 예멘 最高評議會 事務局에 統一憲法案의 兩國議會回附와 國民投票實施을 위한 時間表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제3항)³⁶⁾ 兩國間의 統一活動 및 統一機構의 活性化에 합의하였다.

곧이어 1988년 5월 4일 사나會談의 共同合意書에서 兩國頂上은 예멘 最高評議會 事務局에 대하여 다시 統一憲法案의 議會承認과 國民投票實施問題의 해결을 촉구하였다.³⁷⁾ 그후 統一憲法案은 兩國議會에 회부되고 國民投票實施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1989년 11월 30일 아덴에서 兩國頂上이 統一憲法案에 署名함으로써 統一은 급진전되었다.³⁸⁾ 원래 統一憲法案의 署名 당시 統一憲法案에 대한 國民投票 후 1990년 11월 30일에 統一을 선언하기로 예정되었으나, 당초 설정한 統一時期를 6개월 앞당겨 1990년 5월 20일 軍隊를 統合하고, 5월 21일 統一憲法案에 대한 兩國議會(北예멘의 슈라議會와 南예멘의 最高人民會議)의 承認을 거쳐 5월 22일 統一議會를 구성하여 統一을 선포함으로써 마침내 統一國家인 「예멘共和國」(Republic of Yemen)이 탄생하게 되었다.³⁹⁾

이후 예멘共和國은 1991년 5월 15~16일 統一憲法에 대한 國民投票를 실시하여, 總有權者의 72.2%의 投票參加와 投票者의 98.3%의 찬성을 얻어 統一憲法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⁴⁰⁾

(2) 過渡期間의 設定과 過渡期組織의 構成

南北예멘은 統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990년 4월 22일 「예멘共和國 宣布 및 過渡期組織에 관한 合意書」(이하 「過渡期合意書」라고 표기함)⁴¹⁾를 채택하여 統一宣言 이후 30개월간(1990. 5. 22~1992. 11. 22)의 過渡期間을 설정하였다(제3조). 이 合意書는 過渡期를 두는 目的을 統一課業에 대한 指導者들의 責任과 義務의 강조, 統一關聯 措置와 節次의 일관된 수행, 統一國家樹立 후 憲法機關의 완벽한 준비, 統一國家의 憲法空白狀態의 방지, 統治過程에서의 합법적인 人民民主主義的 參與의 실현 등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예멘共和國 宣布 이후의 過渡期合意書는 議會議員總選舉實施와 예멘國家의 장래를 위한 準備作業에 충분한 期間이 필요하다는 점과 過渡期間中의 業務는 統一憲法과 그 憲法의 合法性에 따라 이루

35) 예멘 統一憲法案 全文은 「統一速報」, 제11호(國土統一院 敎育弘報局, 1990. 5. 23), 附錄, pp. 1~28; 「예멘 統一關係資料集」, 上揭書, pp. 243~264.

36) 上揭書, p. 215.

37) 上揭書, p. 217.

38) 「世界日報」, 1989년 12월 19일, p. 7. 아덴頂上會談 合意書는 「예멘 統一關係 資料集 II」(統一院, 1991), pp. 28~30.

39) 「東亞日報」, 1990년 5월 22일, p. 4; 「中央日報」, 1990년 5월 22일, p. 4.

40) 확정된 統一憲法의 全文과 이에 대한 國民投票 結果는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Yemen," *The Yemen Times*(Sana'a Republic of Yemen, July 1991), pp. 4~34, p. 37; 「예멘 統一關係資料集 II」, 前揭書, pp. 134~154.

41) 이 合意書의 全文은 「예멘 統一關係 資料集 II」, 上揭書, pp. 64~66.

어지며, 어떠한 다른 機關으로부터도 統一憲法이 侵害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過渡期間의 國家組織을 구성하였는데 그 具體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⁴²⁾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過渡期 組織의 構成에 있어서 대체로 南예멘과 北예멘간에 1對1의 對等性의 原則이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人口로 본다면 南예멘은 약 240만명이고 北예멘은 약 760만명 이어서 北예멘이 南예멘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그러나 過渡期 組織은 양국간의 적정 按排 原則에 따라 구성되었다.

첫째, 1991년 5월 21일 立法機關으로서 統一議會(House of Representatives)를 南예멘의 最高人民會議 議員 111명, 北예멘의 슈라議會 議員 159명과 함께 部族代表 31명을 포함한 총 301명으로 구성하였다(제3조). 이들 議員의 任期는 새 選舉法에 의한 統一議會構成을 위한 總選舉까지이며, 議長은 前 南예멘總理였던 노만(Yassin Saeed Noman)이 맡고 副議長 3명은 구타임(Ali Mugbel Ghuthaim) 등 前 北예멘 출신이 담당하였다.

둘째, 1991년 5월 24일 最高意思決定機關으로서 大統領評議會(Presidential Council)를 슈라議會 諮問委員會(北예멘)와 最高人民會議 幹部會(南예멘)의 合同會議의 選舉에 의해 選出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제2조). 議長에는 前 北예멘 大統領이었던 살레(Ali Abdulla Saleh), 副議長에는 前 北예멘社會黨 書記長이었던 알 바이드(Alisalem Al-Baidh)가 맡고, 그밖의 3명의 委員에는 2명의 北예멘출신과 1명의 南예멘출신이 선출되었다. 過渡期의 大統領評議會는 憲法이 大統領評議會에 부여한 모든 權限을 행사하며(제2조), 憲法에 의거해 政府에 부여되는 모든 權限을 맡을 예멘共和國 政府를 구성하고(제5조), 또 民族統一強化와 分斷殘滓除去를 위한 예멘共和國 行政區域 再調整에 대한 專門機關의 구성(제6조)과 예멘共和國의 國章·國旗·國歌에 관한 決議를 하도록 위임받았다(제7조).

셋째, 1991년 5월 25일 行政府로서 國家에 속한 모든 組織을 통제하는 閣僚會議(Council of Ministers)는 總理 1명, 副總理 4명, 閣僚 34명으로 大統領評議會에 의하여 구성되었다(제5조). 總理는 前 南예멘의 最高人民會議 幹部會 議長이었던 알 아타스(Haider Abu Bakr Al-Attas)가, 副總理는 南北이 각각 2명씩 맡고, 閣僚는 北 19명과 南 16명이 비슷하게 임명되었다. 總理와 閣僚들은 大統領評議會와 議會에 대해 連帶責任을 지도록 되었다.

넷째, 大統領評議會 諮問會議는 大統領評議會 機能을 보완하기 위한 諮問役割을 수행하며, 部族代表 및 著名人士로 北예멘 24명과 南예멘 21명의 모두 45명으로 구성되었다(제4조).

위에서 보듯이 過渡期 統治組織의 構成은 人的 構成面에서 南北예멘에 적절히 按排되었다는데 특징을 찾을 수 있고, 또 兩國의 기존 國家組織을 최대한 吸收하고 統一勢力의 주변 확대를 위해 각 部族勢力까지도 포용하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엿볼 수 있다.⁴³⁾

42)「예멘統一過程과 部門別統合實態」, 前掲資料, pp.17~20.

이러한 統一의 過渡期體制의 마련은 統一후의 副作用을 방지하고 온전한 統一國家體制를 準備한다는 측면에서 예멘의 경우 매우 유용한 統一過程으로서 평가될 수 있다.

IV. 예멘統一憲法の 構成과 內容

1. 國家體制

(1) 政治基調

統一憲法은 제1부 제1장에서 統一國家인 「예멘共和國」의 政治基調에 관해 규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예멘共和國은 獨立主權國家로서 分離될 수 없는 單一國家임을 선언하고, 예멘國民은 아랍인 및 이슬람세계의 일부임을 밝혔다(제1조). 國敎는 이슬람이며 公用語는 아랍語이고(제2조), 이슬람律法(샤리아: Sharia)이 모든 立法의 根源이라 하였다(제3조). 그리고 “예멘國民은 正當性과 權力의 根源이다. 國民은 國民投票와 總選을 통해 主權을 直接行使하거나 또는 立法·行政 및 司法機關과 選舉로 구성된 地方機關을 통해 主權을 間接的으로 행사한다”(제4조)고 하여 國民主權主義를 규정함과 동시에 代議制民主主義와 直接民主主義를 도입하였다. 이는 前 南예멘憲法이 國家가 모든 權力의 根源이라고 한 규정(제4조)에서 탈선한 것이며, 南예멘憲法에서의 中央集權的 民主主義, 즉 마르크스-레닌主義를 포기하였음을 나타낸 것이다.⁴³⁾ 그리고 統一憲法은 UN憲章, 國際人權宣言, 아랍聯盟憲章 및 國際法上 一般原則의 遵守를 규정하여(제5조) 國際法尊重主義를 표방하였다.

(2) 經濟基調

統一憲法 제1부 제2장에서 규정한 예멘共和國의 經濟基調를 보면, 우선 國家經濟原則으로 ① 社會 및 生産關係에 관한 이슬람 社會正義, ② 基本生産施設을 소유할 수 있는 公共部門의 設立, ③ 公共利益과 法律에 따른 公正한 補償없는 私有權侵害의 禁止, ④ 강력하고 자립적인 國家經濟의 建設 및 社會主義的 關係를 보장하여 포괄적인 成長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關係와 집제성의 指標 등을 정하였다(제6조). 그리고 國家의 經濟活性化 및 經濟運用原則(제7조~제11조), 租稅法律主義(제12조, 제14조), 自然資源 및 公共事業開發權 賦與의 法律主義(제17조) 등을 규정하였다. 統一憲法上의 經濟基調를 통해서 南예멘이 計

43) 上掲資料, pp. 23~24.

44) 예멘아랍共和國(北예멘) 憲法 및 예멘人民民主主義共和國(南예멘) 憲法の 全文은 「統一예멘 共和國 合憲過程 事例研究」, 前掲書, pp. 104~198 및 pp. 199~236 參照.

劃經濟體制(제15조~제17조)를 포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편 南北에민이 民族的 熱望과 分斷克服에 대한 熱情과 함께 經濟的 難局의 탈피라는 現實的 理由가 統一의 추진 배경이 되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기도 하다.

(3) 社會 및 文化基調

統一憲法은 제1부 제3장에서 예멘共和國의 社會 및 文化基調에 관해 규정하였다. 여기서 國家는 憲法精神과 目的에 부합되는 科學研究, 文學, 藝術 및 文化的인 創作의 自由를 보장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며, 科學과 藝術의 發展을 위해 모든 支援을 하고 藝術的 創意성과 더불어 科學的·藝術的 發明을 장려하고 科學과 藝術作品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제18조). 또한 國家는 國民에게 政治·經濟·社會·文化的으로 均等한 機會를 보장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法律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제19조). 그리고 公職者는 公共의 利益과 國民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였다(제20조). 勤勞에 대해서는 權利이자 名譽이며, 社會發展을 위한 必須라고 강조하고 法律의 範圍內에서의 職業選擇의 自由를 인정하고, 아울러 法律에 의하거나 公務遂行 또는 公正한 賃金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勞役도 強制될 수 없다고 하였다(제21조).

(4) 國防基調

統一憲法은 제1부 제4장에서 國防基調에 관해 규정하였다. 國家는 軍隊를 組織하는 權限을 가지며, 國家 이외의 組織과 團體는 軍隊와 準軍事組織을 설치할 수 없고, 軍隊는 全國民에 속하며, 그 任務는 共和國와 領土의 安全 및 安全保障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하였다(제22조). 總動員令은 法律에 따라 議會의 承認후 大統領評議會 議長이 선포하도록 하고(제23조), 國防委員會의 構成과 權限, 機能을 法律로 정하고 國防委員會도 大統領評議會 議長이 主宰하도록 하였다(제24조).

한편 警察은 國民의 安寧과 安全을 보장하며, 法과 秩序, 一般安全 및 美風良俗을 보호하여야 하고, 아울러 公共에 봉사하는 관헌으로서 法律에 따라 부여된 任務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警察의 任務와 機能을 명문화하였다(제25조).

2. 國民의 基本權

統一憲法에서의 基本權에 관한 규정은 前 南·北에민 憲法에서의 基本權規定과 비교하면 發展的 內容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統一憲法이 규정한 基本權의 主要內容을 간추려 보면, 모든 國民은 社會에서 政治·經濟·社會·文化的 生活을 누릴 權利를 가지

며, 國家는 法律의 範圍內에서 思想 및 表現의 自由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제26조). 또 國民은 法앞에서 平等하며, 人種, 皮膚色, 出生地, 言語, 職業, 社會的 身分, 宗教的 理由로 차별받지 않고 權利와 公的 義務에서 平等하다고 하였다(제27조). 아울러 法에 의하지 않는 예멘國籍剝奪禁止(제28조), 內國民의 外國引渡禁止(제29조)와 政治的 亡命者의 不引渡原則(제30조)을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個人의 身體의 自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基本權伸張을 도모하였는데, 連坐制禁止, 罪刑法定主義, 刑罰不週及의 原則, 無罪推定の 原則을 규정하고(제31조), 判決과 法律에 의하지 않는 個人의 自由權剝奪禁止, 刑事 또는 檢察의 命令(order)에 의하지 않은 逮捕·搜索·拘禁의 禁止, 拷問禁止, 自由強要禁止, 默秘權의 認定, 矯導所에서의 非人間的 待遇禁止, 逮捕事實通告義務 등을 규정하였다(제32조). 또한 處罰執行時 殘忍한 非人間的인 方法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非人間的인 方法을 許容하는 法律을 제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33조).

이밖에 國民의 權利保護를 위한 法的 手段으로 政府에 대한 直間接的인 請願權을 인정하였고(제34조), 프라이버시權利(제35조), 通信의 自由(제36조), 敎育의 權利(제37조), 居住·移轉의 自由, 內國民의 追放 및 歸國制限의 禁止(제38조), 結社의 自由(제39조) 등을 보장하였다.

이렇듯 統一憲法上의 基本權規定은, 南北예멘의 憲法에서의 基本權規定보다 발전된 면모를 볼 수 있고, 특히 身體의 自由에 관한 규정은 先進化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統治構造

統一憲法은 國家機構의 組織을 立法機關으로서 議會(House of Representatives), 大統領權限을 행사하는 大統領評議會(Presidential Council), 行政府로서 閣僚會議(Council of Ministers), 그리고 地方機關(Local Authorities)으로 정하고, 獨立機關으로서 司法府 및 檢察(Judiciary & Public Procecuton)을 두었다.

統一 이전 北예멘憲法은 權力機關으로 立法機關인 슈라議會(Majlis al Shuura) (제44조~제72조), 共和國評議會(제73조~제94조), 政府(제95조~제108조), 地方機關(제109조~제158조)을 두고 司法府(제144조~제154조)와 最高憲法法院(제155조~제158조)을 설치하고 있었다. 南예멘憲法에서는 國家機關으로 最高人民會議(제63조~90조), 大統領評議會(제91조~제100조), 閣僚會議(제101조~제112조), 地方機關(제113조~제115조) 및 司法府(제117조~제124조)를 두고 있었다.

統一憲法은 제3부 統治組織에서 議會(제40조~제81조), 大統領評議會(제82조~제101조),

閣僚會議(제102조~제106조)의 任務와 機能에 관하여 상세하게 정하고, 司法府에 대한 獨立의 地位를 강화하여 權力分立主義의 확립을 지향하고 있다. 다음에 이들 機關의 構成과 主要機能을 간략히 살펴본다.

(1) 議會

예멘共和國 議會는 代議制的 民主主義를 확립하는 議會民主主義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北예멘의 슈라議會와 南예멘의 最高人民會議에서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憲法의 總 131개 條文 중 議會部分이 41개조문을 차지할 정도로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議會는 民主的 選舉로 선출된 議員으로 구성되며 小選舉區制를 채택하였다(제41조). 議員의 任期는 4년이며(제43조), 議員은 全國民을 代表하고 公共利益을 보호하며 어떠한 契約이나 條件으로도 代表權은 제약되지 않는다(제58조). 또한 議員은 免責特權(제63조)과 不逮捕特權(제64조)을 가진다.

議會는 國家의 立法機關으로서 法律과 國家政策, 經濟 및 社會發展計劃, 豫算 및 會計를 審議決定하며, 憲法이 규정한 바에 따라 行政當局이 취한 措置를 지휘·통제한다(제40조). 議會는 國政調查權을 가지며(제70조), 政府不信任權을 가진다(제74조). 議會會議의 定足數는 議員總數의 過半數이며, 議會決議案은 過半數議員의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찬성으로 통과되며, 可否同數인 경우 否決로 간주한다(제77조). 議會는 사나에 위치하며(제44조), 大統領評議會는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시 解散事由에 대한 國民投票를 실시한 후 議會를 解散할 수 있다(제78조).

(2) 大統領評議會

大統領評議會는 議會에서 선출하는 5명의 委員으로 구성되며 예멘共和國의 大統領權限을 행사한다(제82조, 제83조). 大統領評議會의 任期는 5년이며(제87조), 議長은 委員 중에서 선출된다(제84조). 大統領評議會의 機能은 國內外的인 共和國의 代表, 國民投票의 要請, 法律公布, 賞勳授與, 條約의 批准, 大使의 任命 및 召還, 非常事態와 總動員令의 宣布 등(제94조)으로서 大統領制를 채택하고 있는 國家에서의 大統領의 權限과 유사하다.

大統領評議會는 예멘共和國의 國家最高機關으로서 일종의 集團指導體制의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⁴⁵⁾ 이는 統治構造의 특징적인 형태로서 北예멘의 共和國評議會(北예멘憲法 제73조~제94조)와 南예멘의 大統領評議會(南예멘憲法 제91조~제100조)의 制度를 수용하고 이를 折衷·發展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南예멘은 1978년 憲法改正으로 大統領評議會制度를 폐지하고 最高人民會議 幹部會制度를 채택하였다).

45) 洪淳男, 前掲論文, p.142.

(3) 閣僚會議

閣僚會議은 에멘共和國의 政府로서 國家의 最高執行機關 및 行政機關이다(제102조). 政府는 總理, 副總理 및 長官들을 포함하며 이들은 모두 閣僚會議을 구성한다. 閣僚會議의 任務와 組織은 法으로 정한다(제103조). 總理는 大統領評議會와의 協議下에 선출된다(제104조). 總理와 長官들은 政府措置에 대해 共同으로 大統領評議會와 議會에 책임을 진다(제105조). 總理와 長官들은 任期중 兼職은 禁止되며(제108조), 閣僚會議은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政治·經濟·社會·文化 및 國防分野에서 國家의 一般政策과 議決事項을 執行한다(제109조).

(4) 司法府 및 檢察

司法府는 獨立機關이며, 判事는 독자적인 任務를 遂行하며 어떠한 機關의 拘束도 받지 않는다(제120조). 司法機關과 그의 地位, 司法機關의 管轄權, 判事の 人事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하며, 特別法廷의 設치는 禁止된다(제121조).

判事와 檢察은 法에 의하지 않고는 罷免되지 않는다(제122조). 司法府에는 最高委員會를 두며,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判事の 任命 및 解任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제123조). 共和國에는 大法院을 설치하며, 法律·計劃·規定 및 議決事項의 合憲性에 관한 統制, 司法機關의 管轄權紛爭調整, 選舉訴訟, 民·刑事 및 對人訴訟의 最終判決의 不服에 대한 決定, 行政 및 懲戒訴訟의 最終判決의 不服에 대한 決定 등을 처리한다(제124조). 그리고 裁判公開原則도 적용된다(제125조).

4. 其他

統一憲法은 제5부에서 國章, 國旗, 國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國章 및 國歌는 法으로 정하고(제126조), 國旗는 위로부터 赤·白·黑色으로 하고(제127조),⁴⁶⁾ 사나를 수도로 정하였다(제128조).

그리고 統一憲法은 마지막 제6부에서 憲法改正에 관한 原則과 一般規定을 두었다.⁴⁷⁾ 大統領評議會와 議會가 모두 憲法改正의 發議權을 가진다고 하고, 議會에서 憲法改正을 發議

46) 國旗에서 赤色은 國民革命을, 白色은 平和를, 黑色은 獨立鬪爭의 殉教者를 상징한다. 「에멘 統一關係 資料集 II」, 前掲書, 표지설명.

47) 統一憲法에 대한 國民投票 후 최종확정된 에멘共和國 憲法의 제6부 改憲原則 및 一般規定은 처음 兩國頂上에 의해 署名된 統一憲法案의 8개조항(제129조~제136조) 가운데 憲法의 發效條項과 臨時大統領評議會에 관한 條項을 削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미 統一憲法發效時期와 過渡期設定에 관해서는 「過渡期合憲書」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할 때에는 議會議員 3분의 1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議員 4분의 3이 改正을 찬성하면 그 改正案은 改正案贊成의 發表時로부터 有效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였다(제129조).

아울러 같은 제6부에서 統一의 經過措置로서 南北예멘의 2개 지역에서 有效한 法律 및 議決事項은 이 憲法이 정한 方法과 節次에 따라 改正될 때까지 이들 地域에서 계속 有效하며 過渡期間중 大統領評議會의 議決에 의해 效力을 喪失한다고 정하였다(제130조). 끝으로 大統領評議會 議長 및 委員, 議會議員, 總理 및 長官들의 就任宣誓의 내용을 명문화하였다(제131조).

V. 예멘統一憲法의 特色과 段階的 統一過程

예멘統一事例가 韓半島統一에 주는 示唆點 중 무엇보다 統一憲法을 통한 規範的 合意統一의 成就是 南韓의 統一方案에서의 最終 統一國家樹立方法과 관련하여 模範事例로 받아들일 수 있다. 예멘統一憲法의 成立節次 및 內容, 統一過程에서 볼 수 있는 特色은 南北韓 統一憲法의 構想에 귀중한 資料를 提供하고 있다. 다음에 예멘統一憲法의 特色, 「過渡期合意書」의 採擇理由와 分野別 統合推進內容, 예멘統一의 段階的 發展過程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1. 統一憲法 確定的 節次上 特色

예멘統一憲法이 확정되기까지의 過程을 차례로 보면, 統一憲法에 의한 統一原則合意(1972년 카이로協定 및 트리폴리聲明), 統一憲法案採擇(1981. 12. 30), 兩國頂上의 統一憲法案에 대한 署名(1989. 11. 30), 兩國議會(슈라議會, 最高人民會議)의 承認(1990. 5. 21), 國民投票實施(1991. 5. 15~16) 등이다. 이 過程을 볼 때, 1989년 11월 아덴合意書에서 統一憲法에 관하여 政治指導者의 承認, 슈라議會와 最高人民會議에의 回附, 6개월 이내 國民投票實施 후 새로운 立法府 構成이란 合意內容을 충족시켰지만, 그 日程은 준수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統一國家樹立과 統一憲法確定까지 일정에 집착하기 보다 現實狀況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統一의 길을 열어 나가는 유연한 姿勢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① 統一憲法에 대한 國民投票의 경우 「過渡期合意書」는 제7조에서 1990년 11월 30일 이내에 實施할 것을 정했지만 정작 國民投票는 그 時限을 넘겨 過渡期間 중인 1991년 5월 실시되었으며, 全國民의 壓倒的 支持(98.3%의 찬성)에 의해 統一憲法이 확정되었다.

② 兩國頂上會議가 예멘統一憲法の 골격인 統一國家의 體制 및 基本性格, 統治體制 등에 관해 統一의 基本原則을 合意하면서 동시에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頂上會議에서 統一憲法の 基本原則에 대해 合意한 것은 最終 統一憲法을 확정하고 統一國家를 수립하게 한 原動力이 되었다. 相異한 理念과 體制下에서 統一憲法이란 하나의 規範에 合意할 수 있었던 背景에는 兩國指導者의 積極的인 統一意志와 努力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것은 統一憲法制定의 關門을 여는데 頂上會議의 重要性과 效用性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頂上會議에서 統一憲法の 基本原則을 정하고 共同專門委員會로서 憲法委員會를 構成하고 여기서 統一憲法 起草業務를 전담케 한 것도 統一憲法制定의 效率性을 높인 것으로 지지할 수 있다.

③ 統一憲法 確定 후 統一國家의 議會를 구성하기 위한 總選舉가 당초 예정보다 늦게 실시되었으나, 큰 탈없이 選舉가 진행되어 統一議會가 무난히 구성됨으로써 統一國家體制 확립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過渡期合意書」는 제6조에서 大統領評議會는 民族統一을 강화하고 分斷殘滓의 제거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專門全擔班을 구성하여 그 事業을 委任하도록 하였는데, 그 중에는 過渡期中 總選舉實施가 포함되었다.⁴⁸⁾ 「過渡期合意書」는 過渡期를 設定한 때에는 憲法節次에 의거한 立法院 構成을 위해 總選舉의 準備 및 實施에 필요한 충분한 期間을 고려하였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統一憲法에 대한 國民投票 후 總選舉를 실시토록 하였다(제7조).

이에 따라 새로운 選舉法을 制定하여 예멘共和國의 첫 總選舉가 이루어졌다. 이 總選舉는 過渡期가 마무리되는 時點인 1992년 11월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人口와 國民支持度面에서 일세로 判단한 南예멘의 執權黨이었던 「예멘社會黨」(Yemen Socialist Party)에서 總選舉延期와 總選舉 후 北예멘의 執權黨이었던 「國民議會黨」(General People's Congress)과의 聯政體制를 事前保障해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南北예멘의 政治勢力間의 對立深化와 政局不安이 지속되자 살레 大統領이 政黨, 議會, 閣僚會議 등과의 協議를 거쳐 1993년 4월 27일로 延期하여 실시되었다.⁴⁹⁾ 總選舉實施狀況을 보면, 전국 17개 지역 301개 選舉區에서 4,814명(21個政黨候補 1,036名, 無所屬候補 3,778名)이 立候補하여 平均 16:1의 競爭率을 보였으며, 그 결과 開票遲延과 武力衝突事件이 일어난 3個 選舉區를 제외한 298個 選舉區 가운데 國民議會黨이 121個, 예멘社會黨이 56個 選舉區에서 승리하고, 특히 回教原理主義를 내세운 예멘改革統合黨(Al-Islah Party)이 62個 議席을 획득함으로써 第2黨으로 浮上하였다.⁵⁰⁾ 여기서 人口面에서의 利點을 가진 國民議會黨의 過半數議席 確保失敗와 예멘改革統合黨의 예멘社會黨 압도라는 결과를 통해 社會主義體制의 人氣下落과 아랍권에서의 回教

48) 「예멘統一關係資料集 II」, 前掲書, p.102.

49) 「예멘總選狀況 中間報告」(統一院 統一政策室, 1993. 4. 30).

50) 「예멘總選結果」, 「報告事項」(外務部 中東 아프리카局, 1993. 5. 3).

原理主義勢力的 強化라는 現實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總選舉에 대해 일부 분만 이 있지만, 특히 國民議會黨의 예멘社會黨과의 聯政實現에 대한 예멘改革統合黨의 반발 등에 따른 政局不安要因이 있지만,⁵¹⁾ 대체로 政派間의 妥協을 이루는 가운데 새 議會構成을 시작으로 名實相符한 統一國家體制를 갖춰 나아가고 있다.

2. 統一憲法の 內容上 特色

南北예멘은 統一憲法の 基本原理에 합의하면서 兩國의 既存理念과 體制를 주장하기 보다 民族的·宗敎的·歷史的 單一性에 입각한 共通點을 내세웠다. 그것은 統一憲法の 原理로서 이슬람法 샤리아(Sharia)를 立法源으로 한 점, 이슬람敎를 國敎로 한 점, 이맘(Imam) 制度 및 植民主義·帝國主義에 대항한다고 한 점 등에서 잘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統一國家樹立의 法的 根據로서의 예멘統一憲法の 內容上 特色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政治基調에서는 南예멘의 理念的 기초였던 마르크스-레닌主義의 要素를 완전히 배제하였고, 統一憲法の 基本原則으로 합의한 民主的·民族的 共和體制로의 統治體制를 명시하지 않은 대신에 「예멘共和國」이 獨立主權國家이며 單一國家란 점을 명백히 밝혔다.

經濟基調에서는 社會主義經濟制度를 배제하고 社會 및 生産施設에 관한 이슬람社會正義, 生産施設을 所有할 수 있는 발전적인 公共部門의 設立과 더불어 私有權의 保護를 經濟原則으로 정함으로써 混合經濟體制를 지향하였다.

社會 및 文化基調에서는 國家의 科學研究·文學·藝術·文化的 創作의 自由保障, 科學·藝術發展을 위한 支援, 科學的·藝術的 發明 獎勵 및 保護義務를 정하고, 아울러 國家의 國民에 대한 政治·經濟·社會·文化的 機會均等保障과 이를 위한 法律制定義務를 정하였다. 그리고 公職者의 國民에 대한 奉仕와 國民의 勤勞權, 職業選擇의 自由에 관해서도 규정하였다.

國防基調에 관해서는 國家의 軍組織權, 國家 이외의 軍隊와 準軍事組織의 設置禁止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南北예멘의 部族勢力的 武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大統領評議會 議長이 관장하는 國防委員會의 構成, 權限, 機能에 관하여 法律에 위임하였으며, 아울러 警察의 權限과 任務에 관해서도 규정하였다.

統治構造는 立憲主義와 權力分立主義에 입각하였으며, 특히 5名の 委員으로 구성되는 大統領評議會는 南北예멘의 既存 統治體制의 構成原則과 機能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權力構造面에서의 特徵을 보여준다.

51) 「東亞日報」, 1993년 5월 1일, p.7; 「中央日報」, 1993년 5월 1일, p.4.

3. 「過渡期合意書」와 分野別 統合推進

「에멘共和國」 宣布 후 30個月間의 過渡期를 설정하고 過渡期組織에 대해 규정한 「過渡期合意書」의 採擇은 에멘統一憲法の 體系 및 效力과 관련하여 두드러진特色을 띠고 있다. 「過渡期合意書」는 統一直後의 兩國統合에 따른 混亂을 막고 統一憲法上의 經過措置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統一憲法과 별도로 憲法과 同等效力을 지닌 이러한 「過渡期合意書」를 채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집에서 찾을 수 있다.

① 신속한 統一國家樹立의 必要性에 따른 것이었다. 즉, 兩國頂上의 政治的 合意에 의한 統一을 지체없이 달성하기 위해 統一國家樹立에 緊요하지 않은 부수적인 節次의 번거로운 措置들을 加급적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② 過渡期의 設定과 統一憲法에 근거하지 않은 過渡期統治機構의 構成에 대한 憲法的 效力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統一憲法에 대한 國民投票가 실시되지 않은 狀況에서 憲法節次를 결여한 過渡期組織의 構成과 權限에 대한 憲法空白狀態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過渡期合意書」는 統一憲法에 대한 國民投票時期를 정하고, 統一國家體制의 確立을 위한 總選舉準備業務를 大統領評議會에서 委任한 全擔班에서 수행토록 하였다(제6조).

③ 過渡期라고 하더라도 모든 組織과 體制가 憲法的 基礎에 입각하고 이를 遵守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統一國家樹立과 동시에 南北에멘의 既存憲法들은 廢止되는데, 이때부터 統一憲法이 國民投票로 最終確定될 때까지의 憲法空白期를 방지하기 위해 「過渡期合意書」는 슈리議會와 最高人民會議가 이 合意書 및 統一憲法案을 承認함으로써 發效된다고 하고(제8조), 동시에 南北에멘의 既存憲法은 廢止된다고 하였다(제10조). 이는 過渡期組織의 業務가 統一憲法의 合法性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憲法의 權限이 부여되지 않은 어떠한 機關으로부터 憲法의 侵害와 不法의인 憲法改正을 방지하기 위한 對策이기도 한 것이었다.

이렇듯 「過渡期合意書」는 統一憲法上 經過措置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過渡期의 統一業務를 일관되게 수행하고, 統一國家憲法機關構成 準備에 완비를 기하는 동시에 統一國家의 憲法空白狀態를 방지하여 統治의 民主的 節次와 合法性을 확보한 데에 큰 意義를 둘 수 있다. 또한 이 合意書가 統一憲法과 同等效力을 가진다는 점에서 過渡期 동안 臨時憲法的 性格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合意書와 더불어 에멘共和國의 過渡期 동안 統一이전 政治組織委員會와 共同關係委員會에서 정한 統合方式에 의거하여 分野別로 統合作業이 이루어져 統一國家의 基礎을 형성하였다. 다음에 過渡期 統合의 過程과 內容을 分野別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政治的 統合에 관해서는 前述하였듯이 議會, 大統領評議會, 閣僚會議 및 大統領評議會 諮問會議 등이 過渡期의 統治機關으로 構成되었다. 또한 單一政治組織委員會는 統一國家에서 政治業務遂行에 적합한 政治組織形態를 國民議會黨과 예멘社會黨 및 9月·10月 兩大革命目標을 신봉하는 民族勢力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民族戰線形態로 構成하고, 각각의 勢力들은 獨立性을 유지하며 統一國家는 모든 政治團體의 權利를 保障한다는 原則을 천명하였다.⁵²⁾ 이에 따라 40個 以上の 政黨이 결성되고, 이들이 적어도 하나의 定刊物을 發刊했다는 점은 예멘共和國의 政治的 自由擴大를 나타내는 단적인 예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南北 예멘의 既存 執權黨을 中心으로 한 순조로운 政治統合과 協力關係는 總選舉實施의 與件을 조성하였다.⁵³⁾

② 經濟的 統合에 관해서는 經濟政策의 推進方向의 하나로서 回教的 社會正義를 바탕으로 한 私有財産制를 인정함에 따라(統一憲法 제6조) 南예멘지역에서 私有財産制를 시행하되 外國人土地나 大地主土地에 대해서는 國有化政策을 견지하도록 하였다.⁵⁴⁾ 또한 統一 이전 兩國 閣僚會議에서는 經濟·財務委員會를 통하여 單一關稅, 中央銀行과 貨幣의 統一, 所得稅, 商業銀行制度, 一般財務制度의 整備를 촉구하였다.⁵⁵⁾ 이에 따라 南예멘의 디나르(Dinar)貨를 北예멘의 리알(Rial)貨에 대해 平價切上시켰고(統合前 1D=13~14YR에서 統合後 1D=26YR) 過渡期 동안 兩國通貨의 通用을 許容하였다.⁵⁶⁾ 그리고 經濟目標達成의 基盤을 다지기 위해서 5個 經濟部處, 3個 國策銀行, 7名의 企業家를 委員으로 하는 「經濟特別委員會」를 構成하고 예멘中央銀行을 설립하였다.⁵⁷⁾

③ 社會·文化的 統合에 관해서는 서로의 社會·文化的 基盤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이슬람傳統의 復元·繼承과 民主改革推進에 目標을 두었다. 이에 따라 다소 矛盾的이지만, 北예멘의 回教傳統인 禁酒와 女性의 차도르착용이 엄격하게 施行되는 반면 南예멘에서의 飲酒와 女性의 社會活動이 인정되고, 카트(Qat:一種의 幻覺性 나뭇잎으로서 예멘인들은 매일 이것을 씹는 習慣이 있음)씹기도 全面 許容되었다(남예멘에서는 制限的으로 木·金曜日에만 許容되었음).⁵⁸⁾ 그리고 統一후 言論의 自由가 확대되어 人口比로 볼 때 다른 아랍國家 보다도 많은 新聞·雜誌 등이 발행되고 있으며,⁵⁹⁾ 教育分野에도 投資가 확대되고 있다.

④ 軍事的 統合에 관해서는 攻擊·防禦概念의 軍事戰略에서 防禦中心의 戰略으로 전환

52) 「예멘統一關係資料集 II」, 前掲書, p. 74.

53) Liesl Graz, "Yemen weathers the storm," *Middle East International (MEI)*, April 19, 1991, p. 24.

54) 「예멘統一過程調査 現地出張 結果報告書」, (統一院, 1991. 9), p. 18.

55) 「예멘統一關係資料集 II」, 前掲書, p. 36.

56) 上掲書, p. 70; 「예멘統一過程調査 現地出張 結果報告書」, 前掲報告書, p. 18.

57) 「예멘統一過程과 部門別 統合實態」, 前掲資料, p. 21.

58) 上掲資料, p. 22.

59) Liesl Graz, *op. cit.*, p. 24.

하고, 統一前의 6만 2천 5백명의 戰鬪力을 유지한 채 兩國軍을 統合하고 軍統帥權도 一元化하였다. 여기서도 兩國의 對等統合原則을 적용하여 統合軍組織에 兩國出身을 적절히 按排하였다. 軍總司令官은 살레(前 北에멘大統領)가 맡고, 國防長官에는 타헤르(Haithek Kassen Taher, 前 南에멘國防長官)가 임명되었다. 그러나 軍事的 統合은 다른 分野에 비해 그 進歩이 부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⑤ 法的·制度的 統合에 관해서는 에멘共和國의 수립이 統一憲法에 의거한 것이었으며, 統合의 細部過程도 각종 法律에 의거하여 진행됨으로써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兩國 閣僚會議 第1次會議(1990. 1. 20~22)決議案에서는 南北에멘의 政府機構·團體·機關의 統合에 관한 制度·法律·方案을 마련해 그 節次를 완성하도록 하고 各分科委員會(經濟·財務委員會, 教育·文化·公報委員會, 法律·司法委員會, 對外業務 및 外交領事代表部, 公共運營施設委員會 등)를 통하여 關聯法律과 制度를 마련토록 하는 동시에 自由往來와 基本權保障을 위한 法制度 整備와 統一憲法에 반하는 法制度의 撤廢를 결의하였다.⁶⁰⁾

또한 兩國 閣僚會議 第2次會議(1990. 3. 20~22) 決議案에서는 45個法案, 14個項의 執行規定案, 에멘中央銀行設立案, 48個項의 部處·機構·會社·團體統合에 관한 組織 및 規定案 등을 채택하였다.⁶¹⁾ 이를 바탕으로 兩國 閣僚會議 共同會議(1990. 5. 1~4)에서는 統一國家樹立을 위한 執行節次 및 準備로써 通貨·豫算·民願과 勞動·移動 및 居住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統一議會의 最初會議에서 承認될 法律案을 결정토록 하였다.⁶²⁾ 이처럼 南北에멘은 統一國家 宣布 이전에 統合을 위한 法律 및 制度를 整備 또는 制定함으로써 法制度的으로 統一國家의 기틀을 닦았다.

이상에서 에멘의 경우 過渡期의 統合組織들이 대등한 按排原則에 의해 구성되고, 既存의 國家組織을 최대한 吸收함으로써 統一推進勢力의 底邊을 확대할 수 있었고, 또한 統一國家體制 完成을 위한 時間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兩國間 政治·經濟·社會·文化의 諸分野에서 統合作業을 원활히 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過渡期 設定은 매우 중요한 意味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⁶³⁾

VI. 結語：에멘統一의 段階的 發展過程

에멘統一은 過渡期를 거쳐 統一國家體制를 완성하기까지 段階的 發展過程을 보여주고

60) 「에멘統一關係 資料集 II」, 前掲書, pp. 36~43.

61) 上掲書, pp. 49~63.

62) 上掲書, pp. 70~72.

63) 「에멘統一過程과 部門別統合實態」, 前掲資料, pp. 23~24.

있다. 그것은 最終統一憲法案의 確定과 統一憲法에 의한 國家體制確立이란 側面에서 검토될 수 있다. 다음에 統合의 內容에 따라 4段階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第1段階는 처음 統一原則에 合意한 카이로協定(1972. 10. 28)으로부터 타이즈合意(1981. 9. 15) 이전까지의 기간으로 '和解·共存段階'라고 할 수 있다. 兩國頂上은 統一國家의 體制와 性格 등 統一憲法의 原則에 合意하고, 兩國의 政情不安 및 國境衝突에도 불구하고 兩國關係를 和解와 共存關係로 발전시켜 統一의 土臺를 구축하였다.

第2段階는 兩國間 自由往來와 文化·教育分野의 交流 등 交流·協力の 實踐的 措置를 마련한 타이즈合意書採擇(1981. 9. 15)으로부터 1988년 4월 17일 兩國頂上會談 以前까지의 期間으로 '統一促進段階'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特記할 것은 「南北에멘間 協力 및 調整에 관한 協定」(1981. 12. 2)에 의해 兩國間 諸分野에서의 交流·協力を 확대하였으며, 統一의 體系的 推進을 위한 共同機構(「에멘最高評議會」, 「共同閣僚委員會」, 「事務局」 등)를 구성한 것이다. 특히 이 共同機構의 構成과 機能에 비추어 볼 때, 이 期間의 南北에멘의 國家統合形態를 國家聯合의 特殊한 事例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⁶⁴⁾ 이어 1981년 12월 30일 憲法委員會는 統一憲法案을 완성하였다.

第3段階는 1988년 4월 17일 兩國頂上會談에서부터 1990년 5월 22일 統一宣布 이전까지의 期間으로 '統一成熟段階'라고 할 수 있다. 이 期間에 南에멘의 社會黨政權의 改革措置에 힘입어 兩國間 自由往來保障, 電力體系統合, 資源의 共同開發 등이 급속도로 추진되었으며, 1989년 11월 30일 兩國頂上은 統一憲法案에 署名하였다. 그리고 1990년 4월 22일 「過渡期合意書」를 채택하여 統一을 위한 事前準備를 철저히 함으로써 統一國家의 基本組織과 制度의 기틀을 다져 놓았다.

第4段階는 1990년 5월 22일 統一宣布로부터 1993년 5월까지의 過渡期間으로서 '統一完成段階'라고 할 수 있다. 이 期間에 過渡期組織을 구성하고 統一憲法에 대한 國民投票를 실시하였으며, 總選舉에 의한 새 議會를 구성·출범시켜 名實相符한 統一國家體制를 확립하는 法的·制度的 틀을 마련하였다. 統一宣布 후 過渡期の 設定은 統一 및 兩國統合에 따른 衝擊을 吸收하는 동시에 統一國家體制完備에 필요한 時間도 확보할 수 있었다.

64)張明奉, 前掲書, pp. 158~165.

獨逸聯邦共和國 基本法(西獨憲法)

1949. 5. 23 제정후 수차 개정

前 文

신과 인류에 대한 사명을 인식하면서, 통합유럽의 정당한 일원으로서 세계평화에 공헌하겠다는 의지하에 독일국민은 헌법제정권에 의거하여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함부르크, 헤센, 맥클렌부르크-포오폼메른,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아르란트, 작센, 작센-안할트, 슈레스비히-홀슈타인주와 튀링겐주의 독일인들은 자유로운 자결권 행사를 통해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완성하였다. 이로써 이 기본법은 모든 독일 국민에게 적용된다.

第1章 基本權

第1條(人間尊嚴性的 보호, 基本權의 法的 拘束力) ①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②독일국민은 불가침·불가양의 인권이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와 평화 및 정의의 기초임을 인식한다.

③다음의 기본권은 유효한 법으로서 입법, 행정 및 사법을 직접 구속한다.

第2條(行動의 自由, 人身의 自由) ①모든 국민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적 질서 또는 도덕률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격을 자유로이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불가침권을 가진다. 인신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이 권리들은 법률에 의하여서만 제한될 수 있다.

第3條(法律앞의 平等) ①모든 인간은 법률앞에 평등하다.

②남녀는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③누구도 그 성별, 가문, 인종, 언어, 출신지 및 혈통, 신앙, 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차별 또는 특권을 받지 아니한다.

第4條(信仰과 良心의 自由) ①신앙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적·세계관적 인식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②평온한 종교행사는 보장된다.

③모든 국민은 양심에 반하여 무기를 사용하는 군무에 강제되지 아니한다.

第5條(言論의 自由) ①모든 국민은 언어, 문서 및 그림으로 그 의사를 자유로이 표현·공표하며,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원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하고 알 권리를 갖는다. 출판의 자유와 라디오 및 영화에 의한 보도의 자유는 보장된다. 검열은 행하지 아니한다.

②이러한 권리는 일반법률의 규정, 소년보호를 위한 법규 및 개인적 명예권에 의하여 제한된다.

③예술, 학문, 연구 및 학설은 자유이다. 학설의 자유는 헌법에 대

한 충성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第6條(婚姻, 家族, 私生兒) ①혼인과 가족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②자녀의 부양과 교육은 양친의 자연적 권리이며 또한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부과된 의무이다. 그 실행에 관하여서는 국가공동사회가 이를 감시한다.

③자녀는 그를 교육할 권리를 가지는 자가 그 권리를 실행할 수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방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그를 교육할 권리를 가지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족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④母는 공동사회의 보호와 배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⑤사생아는 입법에 의하여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발전 및 사회적인 지위에 대하여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第7條(教育制度) ①모든 교육제도는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②자녀를 교육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자녀가 종교교육을 받을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③종교교육은 공립학교에 있어서는 신교가 자유스러운 학교를 제외하고는 정규학과로 한다. 종교교육은 국가의 감독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종교단체의 교의에 따라 행한다. 교사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교육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사립학교 설립의 권리는 보장된다. 공립학교에 가름하는 사립학교는 국가의 인가를 요하며 주법률에 따른다. 사립학교의 교육목적과

설비 및 교사의 학문적 교양에 있어서 공립학교에 뒤떨어지지 아니하고, 양친의 재산상태에 따라서 차별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인가한다. 교사의 경제적·법률적 지위가 충분히 보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가하지 아니한다.

⑤사립국민학교는 교육행정청이 특별한 교육상의 이익을 인정할 경우 또는 교육할 권리가 있는 자들의 신청에 따라 공공학교, 특정의 종교 또는 세계관을 위한 학교가 설립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종류의 공립학교가 그 지방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⑥예비학교(Vorschule)는 폐지한다.

第8條(集會의 自由) ①모든 국민은 신고 또는 허가 없이 평온하고 무기없이 집회할 권리가 있다.

②옥외의 집회에 대한 전항의 권리는 법령에 의거하여 제한할 수 있다.

第9條(結社의 自由) ①모든 국민은 결사 및 조합을 조직할 권리를 가진다.

②목적이나 활동이 형벌법규에 반하거나 헌법상의 질서 또는 국제적 화합정신에 반하는 결사는 금지된다.

③노동 및 경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사람과 모든 직업에 대하여 보장된다. 이 권리를 제한 또는 방해하려는 협정은 무효이며 그러한 목적으로 행한 조치는 위법이다. 제12a조, 제35조 제2항과 제3항, 제87a조 제4항 및 제91조에 의한 조치는 노동 및 경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

단의 단체가 행한 노동투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0條(通信의 秘密) ①서신의 비밀, 우편 및 전신의 비밀은 불가침이다.

②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서만 규정될 수 있다. 그 제한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 연방이나 주의 존립 또는 안전의 보장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이 관계인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과 법적쟁송수단 대신에 의회가 임명하는 기관이 심사할 것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

第11條(移轉의 自由) ①모든 국민은 연방의 영역내에서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②이 권리는 충분한 생활근거가 없어서 일반에게 특별한 부담을 과하게 될 경우 또는 연방이나 주의 존립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방지, 전염병 방지, 천재지변 및 중대한 재해의 극복, 소년의 유기방지 또는 범죄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第12條(職業選擇의 自由) ①모든 국민은 직업, 직장 및 직업훈련소를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직업활동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일정한 노동을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단, 관례적·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공적 역무의무는 예외로 한다.

③강제노동은 재판소가 명하는 자유박탈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第12a條(兵役義務) ①만18세 이상의 남자에게는 군대, 연방국경수비대

또는 민방위대에 복무할 의무를 지을 수 있다.

②양심상의 이유로 집총병역을 거부한 자에게는 대역의무를 지을 수 있다. 대역의 연한은 병역의 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하며 그 법률은 양심에 따른 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군대 및 연방국경수비대 소속의 기관과 관계없는 대역의 가능성도 규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의한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지 아니한 병역의무자는 방어진쟁의 경우에 법률로써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노동에 종사하는 민간인의 보호를 포함하여 방어목적에 위한 민간적 복무의무를 지을 수 있다.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있어서의 의무는 경찰상의 임무수행이나 공법상의 근무관계에서만 달성될 수 있는 공행정의 공권력적 임무의 수행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제1단에 의한 노동관계는 군대, 군보급분야 및 공행정에서 설정될 수 있다. 민간인의 부양분야에 있어서의 노동의무는 민간인의 생활필수품을 마련하거나 그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서만 허용된다.

④방어진쟁시 민간보건기관과 의료기관 및 특정지역의 군의료기관의 민간복무 수요가 지원으로 충족될 수 없는 경우에는, 만18세 이상 55세이하의 여자를 법률로써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징집할 수 있다. 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기를 휴대하는 병역에 복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방어진쟁 이전에 제3항의 의무는 제80a조 제①항에 의하여서만 부과될 수 있다. 특별한 지식이나 숙련을 필요로 하는 제3항에 의한 복무를 준비하기 위하여 훈련행사에 참가할 의무가 법률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될 수 있다. 제1단의 규정은 그러한 근거내에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⑥방어전쟁시 제3항 제2단에 규정된 분야에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지원으로 충족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업활동 또는 직장을 포기할 수 있는 독일인의 자유가 법률 또는 법률의 근거로써 제한될 수 있다. 방어전쟁이 개시되기 이전에는 제5항 제1단이 준용된다.

第13條(住居의 不可侵) ①주거는 불가침이다.

②수색은 법관에 의하여서만 명하여지나, 지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률에서 인정된 타기관에 의하여서도 명령될 수 있으며, 오로지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서만 행하여진다.

③이에 대한 간섭과 제한은 전항 이외에는 공공의 위험 또는 개인생명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만 행할 수 있으며 또한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긴박한 위험을 방지하고 특히 주택난을 제거하고 전염병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요보호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도 행하여질 수 있다.

第14條(所有權, 相續權, 公用徵收) ①소유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공용징수는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만 허용된다. 공용징수는 보상방법과 정도를 규정하는 법률로써만 또는 법률에 의거하여서만 행하여질

수 있다. 보상은 공익과 관계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형량하여 정한다. 보상액에 대한 소송은 보통재판소에 제기한다.

第15條(財産의 公有化)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사회화하기 위하여 보상의 방법 및 정도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다른 형태의 공공재산으로 이전될 수 있다. 보상에 관하여서는 제14조 제3항 제3단 및 제4단이 준용된다.

第16條(國籍, 外國으로의 引渡, 亡命權) ①독일국적은 박탈될 수 없다. 국적은 법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는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무국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적이 상실된다.

②어떠한 독일인도 외국에 인도될 수 없다. 정치적 피박해자는 망명권을 가진다.

第17條(請願權)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문서로써 권한있는 기관 및 국민대표기관(Volksvertretung)에 청원(Bitten) 또는 소원(Be-schwerden)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第17a條(戰鬥員 및 代替役務員에 대한 基本權의 制限) ①병역과 그 대체역무에 대한 법률은 군대 및 대체역무의 소속원에 대하여 그들의 근무기간중 그 의견을 언어, 문서 및 그림으로 자유로이 발표하고 공표하는 기본권(제5조 제1항 제1단전반) 및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제8조)과 청원권(제17조)이 제한될 것을 규정할 수 있다. 단, 청원권의 제한은 타인과 공동으로 청원 또는 소원을 제출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비전투원 보호를 포함한 국방에 관한 법률은 이전의 자유(제11조), 주거의 불가침(제13조)에 관한 기본권이 제한될 것을 규정할 수 있다.

第18條(基本權의 喪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할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제5조 제1항), 학설의 자유(제5조 제3항), 집회의 자유(제8조), 결사의 자유(제9조), 서신·우편 및 전신의 비밀(제10조) 소유권(제14조) 또는 망명권(제16조 제2항)을 남용한 자의 기본권은 상실된다. 기본권의 상실과 그 상실의 정도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第19條(基本權의 制限) ①본 기본법에 따라 어떠한 기본권이 법률로써 또는 법률에 의거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법률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개별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뿐만 아니라 그 법률은 기본권의 해당 조문을 밝혀야 한다.

②어떠한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

③기본권은 그 본질상 적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국내의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④공권력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른 특별한 관할기관(Zuständigkeit)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일반적 소송방법에 의한다. 제10조 제2항 2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2章 聯邦과 州

第20條(國家秩序의 基礎, 抵抗權) ①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사회적인 연방국가이다.

②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가권력은 선거와 투표를 통해서 국민에 의하여, 그리고 입법, 행정 및 사법의 특별 기관에 의하여 행사된다.

③입법은 헌법질서에 구속되며 행정과 사법은 법률과 법에 구속된다.

第21條(政黨) ①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한다. 그 설립은 자유이다. 정당의 내부질서는 민주원칙에 합치되어야 한다. 정당은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하여 공개적인 회계를 하여야 한다.

②그 목적이나 당원의 행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또는 제거하려 하거나 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위헌이다. 정당의 위헌문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③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第22條(聯邦國旗) 연방국기는 흑, 적, 금색이다.

第23條 폐지¹⁾

註 1) 기본법의 적용지역에 대한 규정으로 독일 통합조약에 의거 폐지됨. 폐지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기본법은 당분간 「바덴」, 「바이에른」, 「브레멘」, 「서베를린」, 「함불크」, 「헷센」,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쯔」, 「슈페스비히-홀슈타인」, 「뷔르템베르크-바덴」 및 「뷔르템베르크-호엔촐레른」에만 적용된다. 독일 기타의 지역에 대하여서는 그들의 가입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第24條(集團安全保障體制에의 加入) ①연방은 법률로써 高權을 국제기구에 이양할 수 있다.

②연방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단안전보장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방은 유럽내 및 세계각국간의 평화적·항구적인 질서를 형성하고 보장하는 高權의 제한에 동의한다.

③국제분쟁을 규제하기 위하여 연방은 일반적·포괄적 및 의무적인 국제중재협정에 가입한다.

第25條(國際法과 聯邦法) 일반적인 국제법규는 연방법의 구성부분이다. 그것은 법률에 우선하며 연방영토의 주민에 대하여 직접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

第26條(侵略戰爭의 禁止) ①국가간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방해를 기도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특히 침략전쟁의 수행을 준비하는 행위는 위헌이다. 이러한 행위는 처벌된다.

②전쟁수행을 위한 무기는 오로지 연방정부의 허가에 의하여서만 제조, 운반 및 거래될 수 있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第27條(商船隊) 모든 독일의 상선은 통일적인 상선대를 구성한다.

第28條(州憲法의 聯邦的 保障, 自治行政의 保障) ①각 주의 헌법질서는 본 기본법이 의미하는 공화적, 민주적,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칙에 합치되어야 한다. 주, 군 및 시·읍·면의 주민은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비밀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를 가져야 한다. 시·읍·면에서는

시·읍·면 의회가 선거된 단체를 대신할 수 있다.

②시·읍·면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규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시·읍·면 연합도 법률적 직무범위내에서 법률에 따라 자치행정권을 가진다.

③연방은 각 주의 헌법질서가 기본권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합치되는 것을 보장한다.

第29條(聯邦領土의 再編成) ①연방영역은 각 주가 그 면적과 능력에 따라 그들에게 부과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향토적 결합, 역사적·문화적 관련, 경제적 편의 및 공간질서와 지방계획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연방영역의 재편성을 위한 조치는 주민투표로써 승인되는 연방법률로써 한다. 이 경우 관계주의 의견을 청문하여야 한다.

③주민투표는 신설주 또는 새롭게 경계가 변경되는 주에서 실시된다. 투표는 관계주가 이제까지와 같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신설주 또는 새롭게 경계가 변경된 주로 될 것인가에 대하여 실시된다. 신설주 또는 새롭게 경계가 변경된 주의 편성에 대한 주민투표는 주소속이 그와 같이 변경된 주의 해당영역부분에서 주민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관계주의 영역에서 주민의 과반수가 변경을 거부하면 통과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관계주에서 변경되어야 하는 영역부분주민의 3분의 2이상이 변경에 찬성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단, 관계주의 전영역부분의 3분의 2이상이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수개의 주에 걸쳐있고 백만 이상의 주거인을 갖고 있는 관계성이 있고 경계가 확정된 거주지역과 경제지역에서, 연방의회의원, 선거권자 10분의 1이상이 주민발안으로서 그 지역이 통일적으로 주소속이 될 것을 요구하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주소속을 변경할 것인지 아니면 관계주에서 주민조사를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 ⑤주민조사는 법률로서 제안한 주소속의 변경을 승인할 것인지에 대하여 행하여진다. 법률은 상이한 두 개의 국민조사안을 제시할 수 있다. 주소속 변경제안에 주민 과반수가 동의하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주소속이 변경될 것인지를 연방법률로 결정한다. 국민조사에 제기된 제안이 제3항 제3단과 제4단에서와 같은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국민조사실행 이후 2년 이내에 제안된 주의 성립을 위한 연방법률을 제정한다. 그 법률은 주민투표에 의한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⑥주민투표와 주민조사에서의 과반수는 투표자수의 과반수이다. 이 경우 투표자수는 연방의회의원 선거권자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이밖에 주민투표, 주민발안 및 주민질문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연방법률은 주민조사를 5년 이내에 다시 실시하지 않을 것을 규정할 수 있다.
- ⑦주의 영역에 대한 변경은 그 변경되는 영역에 주민이 10,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주의 조약 또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상세한 것은 연방상원의 동의와 연방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연방법률로 규정한다. 이 연방법률은 관계 시·읍·면 및 군에의 청문을 요한다.

第30條(州의 機能) 본 기본법이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허용하지 아니하는 한, 국제적 기능의 행사와 국가적 임무의 수행은 주의 소관사항이다.

第31條(聯邦法の 優位) 연방법은 주법에 우선한다.

第32條(外交關係) ①외교관계 행위는 연방의 사무에 속한다.

②어느 주의 특별한 사정과 관계되는 조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주가 입법에 관한 권한을 갖는 때에는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第33條(平等한 公民權·公務担任權) ①모든 국민은 모든 주에서 평등한 공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의 직성, 능력 및 전문적 업적에 따라서 평등하게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③시민권·공민권의 향유, 공직취임의 허용, 공무상 취득된 권리는 종교상의 신앙과는 무관하다. 누구든지 어떠한 종파나 세계관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④고권적 권능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이고 계속적인 임무로서 공법상의 근무관계 및 충성관계에 있는 공무원에게 위탁되어야 한다.

⑤공무에 대한 법은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종래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규정되어야 한다.

第34條(國家損害賠償) 누구든지 위탁된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배상책임을 진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구상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와 구상에 대하여서는 통상적인 소송방법이 배제되어서는 아니된다.

第35條(法律上 및 職務上の 共助) ①연방과 주의 모든 관청은 상호간에 법률상, 직무상 공조를 행한다.

②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하여 주는, 경찰력으로만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특별한 경우에는, 연방국경수비대의 인력과 설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자연적 재난이나 특히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지원을 위하여 주는 다른 주의 경찰력, 다른 행정청과 연방국경수비대 및 군대의 인력과 설비를 요청할 수 있다.

③자연적 재난이나 사고가 한 주 이상의 영역을 위협할 때에 효과적인 진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방정부는 주정부에게 다른 주의 경찰력을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경찰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방국경수비대 및 군대의 인력과 설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단에 의한 연방정부의 조치는 연방상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나, 그밖에 위험이 제거된 후에는 지체없이 중지되어야 한다.

第36條(聯邦公務員) ①연방최고관청의 공무원은 모든 주에서 적당한 비율로 채용되어야 한다. 그밖의 연방관청에 고용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그들이 근무하고 있는 주에서 채용되어야 한다.

②연방법률은 주에 의한 연방의 편성과 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第37條(聯邦의 強制) ①주가 기본법이나 연방법률에 따라 과하여지는 연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강제의 방법으로써 주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연방강제를 실행하기 위하여 연방정부가 그의 수입자는 모든 주와 그 관청에 대하여 명령권을 가진다.

第3章 聯邦下院(Bundestag)

第38條(選舉) ①독일연방하원의 의원은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및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그는 전국민의 대표자이며 위임과 명령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오직 그의 양심에만 따른다.

②만 18세에 달한 자는 선거권이 있으며 성년의 연령에 도달한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③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第39條(集會와 任期) ①연방의회는 4년마다 선거된다. 의원의 임기는 신의회의 집회로 종료한다. 새로운 선거는 의원의 임기개시 이후 45개월 내지 47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연방의회 해산에 따른 선거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된다.

②연방의회는 늦어도 선거후 30일내에 개최한다.

③연방의회는 회기의 만료와 재개를 결정한다. 연방의회 의장은 그보다 조기에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의장은 의원의 3분의 1, 연방 대통령 또는 연방수상이 요구하면 소집하여야 한다.

第40條(議長, 議事規則) ①연방하원은 의장, 부의장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의사규칙을 정한다.

②의장은 연방하원의 건물내에서 가택권과 경찰권을 행사한다. 의장의 동의없이 연방하원의 구내에서 어떠한 수색이나 압수가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第41條(選舉審査) ①선거심사에 관한 사무는 연방하원이 관장한다. 연방하원은 또한 연방하원 의원자격의 상실여부를 결정한다.

②전항 규정에 의한 연방하원의 결정에 대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③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서 정한다.

第42條(議事, 表決) ①연방하원의 의사는 공개한다. 단, 하원의원의 10분의1 이상 또는 연방정부의 제의가 있는 때에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제의에 관하여서는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된다.

②연방하원의 의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연방하원에서 행하는 선거에 관하여서는 의사규칙으로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③연방하원과 그 위원회의 공개회의에서 행하는 진실한 보고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第43條(聯邦政府와 聯邦下院의 出席) ①연방하원과 그 위원회는 연방정부의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연방상원과 연방정부의 구성원 및 그들의 수임자는 연방하원과 그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第44條(調査委員會) ①연방하원은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권리를 가지며 하원 의원의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설치할 의무를 진다. 조사위원회는 공개하며 필요한 증거를 조사한다. 심리의 공개는 배제될 수 있다.

②증거조사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서신, 우편 및 전신의 비밀은 보장된다.

③법원과 행정관청은 법률상 및 직무상 공조를 행할 의무를 진다.

④조사위원회의 결정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단, 조사의 기초가 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평가 및 판단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第45條 폐지²⁾

第45a條(外務委員會, 國防委員會) ①연방하원에는 외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둔다.

②국방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권한도 가진다. 위원 4분의1 이상의

註 2) 상임위원회 규정으로 1976년 8월 23일 폐지.

요구가 있는 있으면 위원회는 요구받은 사항을 조사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44조 제1항의 규정은 국방의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第45b條(護權委員) 의회가 그 감독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기본권을 보호하고 연방의원의 보조기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연방하원에 호권위원(Wehrbeauftragter)을 둔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第45c條(請願委員會) ①연방하원은 제17조에 따라서 연방의회에 제출된 청원과 소원을 처리할 청원위원회를 둔다.

②소원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第46條(議員의 免責特權과 不逮捕特權) ①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연방하원이나 위원회에서 행한 표결 또는 발언으로 인해 재판상 또는 직무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연방하원 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본 규정은 비방적인 모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의원은 연방의회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만 범죄행위를 이유로 책임지거나 체포될 수 있다. 단, 현행범이거나 그 익일에 체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그밖에 의원의 개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경우와, 의원에 대하여 제18조에 의한 소송절차가 개시되기 위하여서는 연방하원의 동의를 요한다.

④의원에 대한 모든 형사소송절차와 제18조에 따른 모든 소송절차 및 구류와 의원의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기타의 제한은 연방하원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증지한다.

第47條(議員의 證言拒否權) 의원은 의원의 자격으로 개인으로부터 사실을 들었거나 개인에게 사실을 알려준 경우에는 개인 및 그 사실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이 증언거부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내에서는 서류의 압수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第48條(議員의 權利) ①연방의회의 의원에 입후보한 자는 그 선거준비에 필요한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의원의 직무를 인수하고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사유로 인한 사직이나 해직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의원은 그 독립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의원은 모든 국유교통수단을 무임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第49條 폐지.³⁾

第4章 聯邦上院

第50條(機能) 각주는 연방상원을 통하여 연방의 입법과 행정에 참여한다.

第51條(構成) ①연방상원은 각 주정부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주정부는 그들을 임명하고 소환한다. 그들은 그들의 주정부의 다른 구성원에

註 3) 파기와 회기사이의 규정으로 1976년 8월 23일 폐지.

의하여 대리될 수 있다.

②각 주는 적어도 3개의 투표권을 가지며, 인구가 2백만 이상인 주는 4개의 투표권을, 인구가 6백만 이상인 주는 5개의 투표권을, 인구가 7백만 이상인 주는 6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③각 주는 그의 투표권과 동수의 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각 주의 투표권은 통일적으로만 행사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한 의원이나 그들의 대리인에 의하여서만 행사될 수 있다.

第52條(議長, 議事規則) ①연방상원은 매년 의장을 선출한다.

②의장은 연방상원을 소집한다. 의장은 적어도 2개 주의 대표자 또는 연방정부의 요구가 있으면 연방상원을 소집하여야 한다.

③연방상원은 투표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연방상원은 의사규칙을 정하며 의사를 공개한다. 의사의 공개는 배제될 수 있다.

④주정부의 다른 구성원이나 수임자는 연방상원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第53條(聯邦政府의 出席) 연방정부의 구성원은 연방상원과 그 위원회에 출석할 권리를 가지며,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의 의무를 지며,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연방상원은 연방정부로부터 그 직무집행에 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한다.

第4a章 合同委員會

第53a條 ①합동위원회 전체인원의 3분의 2는 연방하원 의원으로, 3분의 1은 연방상원 의원으로 구성한다.

의원은 정당의 의석수에 비례하여 연방하원에서 선출된다. 그들은 연방정부에 소속되어서는 아니된다. 모든 주는 주가 임명한 연방상원의 의원으로 대표된다. 그 의원은 지시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합동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는 연방하원에 의하여 의결되고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의사규칙으로 정한다.

②연방정부는 합동위원회에 방어전쟁의 계획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제1항에 따른 연방하원과 그 위원회의 권한은 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第5章 聯邦大統領

第54條(聯邦會議에 依한 選舉) ①연방대통령은 토의없이 연방회의(Bundesversammlung)에서 선출된다. 피선거권자는 연방하원에 대한 선거권을 가지는 만 40세 이상의 모든 독일인이다.

②연방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연방회의는 연방하원의 의원과 비례대표의 원칙에 따라 각 주의 의회가 선출한 동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④연방회의는 늦어도 연방대통령의 임기만료전 30일전에 집회하며, 임기만료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그 퇴임후 30일내에 집회한다. 연방회의는 연방하원 의장이 소집한다.

⑤연방하원의 임기만료후에는 전항 전단의 기간은 연방하원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기산한다.

⑥연방회의 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가 연방대통령으로 선출된다. 2회의 투표에 의해서도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투표에서의 최다득표자가 연방대통령으로 선출된다.

⑦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第55條(兼職의 禁止) ①연방대통령은 연방 또는 주의 정부나 입법기관에 속할 수 없다.

②연방대통령은 어떠한 다른 유급직이나 영업 및 직업에도 종사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이어나 감사도 될 수 없다.

第56條(宣誓) 연방대통령은 취임하는 때에 연방하원과 연방상원 의원이 모인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나의 힘을 독일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바치고, 그 이익을 증진하며, 그 불이익을 방지하고, 연방의 기본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방위하며, 양심에 따라 나의 의무를 완수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정의를 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신이여 나를 도우소서」

선서는 종교적인 선서형식에 따르지 않고 행하여질 수 있다.

第57條(權限代行) 연방대통령이 유고 또는 결위된 경우에는 연방상원 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第58條(副署) 연방대통령의 명령과 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연방수상 또는 주무장관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단, 연방수상의 임

면, 제63조에 의한 연방하원의 해산 및 제69조 제3항에 의한 요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59條(國際法上の 代表權) ①연방대통령은 국제법상 연방을 대표한다. 그는 연방의 이름으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한다. 그는 외교사절을 신임하고 접수한다.

②연방의 정치적인 관계를 규제하거나 연방의 입법사항에 관계되는 조약은 연방법률에 의하여 그 때마다 연방입법에 대한 권한이 있는 기관의 동의나 협력을 요한다. 행정협정은 연방행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第59a條 폐지.⁴⁾

第60條(聯邦公務員의 任免과 赦免權) ①연방대통령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연방법관, 연방공무원, 장교 및 하사관을 임면한다.

②연방대통령은 특별한 경우에는 연방을 대표하여 사면권을 행사한다.

③연방대통령은 상기 권한을 다른 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④제4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연방대통령에 준용된다.

第61條(聯邦憲法裁判所에의 彈劾訴追) ①연방하원 또는 연방상원은 연방대통령이 기본법이나 다른 연방법률을 고의로 위반한 때에는 연방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연방하원 의원의 4분의

註 4) 국방위기사태에 관한 규정으로 1968년 6월 24일 폐지.

1 이상 또는 연방상원 의원의 투표의 4분의1 이상에 의하여 발의된다. 탄핵소추의 의결에는 연방하원 의원의 3분의2 이상 또는 연방상원의 투표의 3분의2 이상의 다수를 요한다. 탄핵소추는 소추기관의 수임자가 행한다.

②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대통령이 기본법이나 다른 연방법률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직의 상실을 선언할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가 제기된 후에 가처분으로 연방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第6章 聯邦政府

第62條(構成) 연방정부는 연방수상과 연방장관으로 구성한다.

第63條(聯邦首相의 選出과 任命) ①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제청에 의하여 토의없이 연방하원에서 선출된다.

②연방하원 의원 재적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당선자는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연방대통령이 제청한 자가 당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방하원은 그 투표후 14일내에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른 연방수상을 선출할 수 있다.

④전항의 기간내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투표가 행하여지며 이 투표에서의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그 당선자가 연방하원 의원의 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경우에는 연방대통령은 투표후 7일내에 반드시 그를 임명하여야 한다. 그 당선자가 이 과반수

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연방대통령은 7일내에 그를 임명하거나, 연방하원을 해산하여야 한다.

第64條(聯邦長官의 任免) ①연방장관은 연방수상의 제청으로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연방수상과 연방장관은 취임에 있어 연방하원에서 제56조에 규정된 선서를 행한다.

第65條(職務責任의 分担) 연방수상은 국정의 기본방침을 정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방침의 범위내에서 각 연방장관은 독립하여 그리고 자기의 책임하에서 소관사무를 처리한다. 연방장관간에 의견의 차이가 생긴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이를 결정한다. 연방수상은 연방정부가 의결하고 연방대통령이 승인한 직무규칙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第65a條(兵力에 對한 統帥權) 연방국방장관은 병력에 대한 명령권과 지휘권을 가진다.

第66條(兼職의 禁止) 연방수상과 연방장관은 다른 유급직이나 영업 및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이사나 연방하원의 동의없이 기업의 감사가 될 수 없다.

第67條(建設的 不信任決議) ①연방하원은 그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임자를 선출하고 연방대통령에게 연방수상의 해임을 요구하는 방법으로만 연방수상에 대한 불신임을 표명할 수 있다. 연방대통령은

1 이상 또는 연방상원 의원의 투표의 4분의1 이상에 의하여 발의된다. 탄핵소추의 의결에는 연방하원 의원의 3분의2 이상 또는 연방상원의 투표의 3분의2 이상의 다수를 요한다. 탄핵소추는 소추기관의 수임자가 행한다.

②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대통령이 기본법이나 다른 연방법률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직의 상실을 선언할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가 제기된 후에 가처분으로 연방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第6章 聯邦政府

第62條(構成) 연방정부는 연방수상과 연방장관으로 구성한다.

第63條(聯邦首相의 選出과 任命) ①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제청에 의하여 토의없이 연방하원에서 선출된다.

②연방하원 의원 재적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당선자는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연방대통령이 제청한 자가 당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방하원은 그 투표후 14일내에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른 연방수상을 선출할 수 있다.

④전항의 기간내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투표가 행하여지며 이 투표에서의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그 당선자가 연방하원 의원의 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경우에는 연방대통령은 투표후 7일내에 반드시 그를 임명하여야 한다. 그 당선자가 이 과반수

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연방대통령은 7일내에 그를 임명하거나, 연방하원을 해산하여야 한다.

第64條(聯邦長官의 任免) ①연방장관은 연방수상의 제청으로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연방수상과 연방장관은 취임에 있어 연방하원에서 제56조에 규정된 선서를 행한다.

第65條(職務責任의 分担) 연방수상은 국정의 기본방침을 정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방침의 범위내에서 각 연방장관은 독립하여 그리고 자기의 책임하에서 소관사무를 처리한다. 연방장관간에 의견의 차이가 생긴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이를 결정한다. 연방수상은 연방정부가 의결하고 연방대통령이 승인한 직무규칙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第65a條(兵力에 對한 統帥權) 연방국방장관은 병력에 대한 명령권과 지휘권을 가진다.

第66條(兼職의 禁止) 연방수상과 연방장관은 다른 유급직이나 영업 및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이사나 연방하원의 동의없이 기업의 감사가 될 수 없다.

第67條(建設的 不信任決議) ①연방하원은 그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임자를 선출하고 연방대통령에게 연방수상의 해임을 요구하는 방법으로만 연방수상에 대한 불신임을 표명할 수 있다. 연방대통령은

이 요구를 수락하여야 하며 선출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불신임의 발의와 후임자 선거와의 사이에는 48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第68條(信任問題와 聯邦下院의 解散) ①신임을 요구하는 연방수상의 발의가 연방하원 의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연방대통령은 연방수상의 건의에 따라 21일내에 연방하원을 해산할 수 있다. 이 연방하원 해산권은 연방하원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다른 연방수상을 선출하는 즉시 소멸한다.

②신임요구의 발의와 투표 사이에는 48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第69條(聯邦首相의 職務代理와 首相과 長官의 任期終了) ①연방수상은 1명의 연방장관을 그의 직무대리로 임명한다.

②연방수상이나 연방장관의 임기는 새로운 연방하원의 집회와 동시에 종료하며 연방장관의 임기는 연방수상의 임기가 모든 기타의 사유로 끝나게 된 때에 종료한다.

③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요구로, 연방장관은 연방대통령이나 수상의 요구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사무를 계속한다.

第7章 聯邦의 立法

第70條(聯邦 및 州의 立法) ①각 주는 기본법이 입법권을 연방에 부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입법권을 가진다.

②연방과 주간 관할권의 한계는 그 배타적인 입법과 경합적인 입법

에 관하여 규정한 본 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第71條(聯邦의 排他的 立法—概括規定) 연방의 배타적 입법사항에 대해서 연방법률에서 명문으로 위임된 경우에 한하여 각 주는 위임범위 내에서 입법권을 가진다.

第72條(聯邦의 競合的 立法—概括規定) ①경합적 입법사항에 대하여 연방이 입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각 주는 그 불행사의 범위 내에서 입법권을 가진다.

②경합적 입법영역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로 연방법률의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 연방이 입법권을 가진다.

1. 개개의 주입법으로는 유효하게 규제될 수 없을 때
2. 사항을 주법률로써 규제하는 것이 다른 주의 이익을 또는 전체 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법적·경제적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주의 경계를 초월하는 생활관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법이 필요할 때

第73條(聯邦의 排他的 立法事項) 연방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배타적 입법권을 가진다.

1. 외교사항 및 국방사항, 후자는 만 18세에 달한 남자에 대한 병역의무와 비전투원에 대한 보호를 포함한다.
2. 연방에서의 국적
3. 이전의 자유, 여권제도, 입국 및 출국 그리고 범죄인의 인도
4. 통화제도, 화폐제도 및 조폐제도, 도량형 또는 시간규정

5. 관세구역과 통상구역의 통일, 통상협정과 항해협정, 상품거래의 자유 및 관세와 국경의 보호를 포함한 외국과의 상품교역과 지급거래
6. 연방철도와 항공교통
7. 우편제도와 전신·전화제도
8. 연방과 연방직속기관에 근무하는 자의 법률관계
9. 산업상의 권리보호, 저작권 및 출판권
10. 연방사법경찰관서의 설치와 국제적 범죄진압과 다음 각호에 대한 연방과 주의 협력
 - a) 사법경찰
 - b)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 연방 또는 주의 존립과 안전보장(헌법보장)
 - c) 폭력의 사용이나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행위로서 연방의 국제적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연방내에서의 기도 방지
11. 연방통계

第74條(競合的 立法事項) 다음 각호의 사항은 경합적 입법사항이다.

1. 민법, 형법과 형의 집행, 법원의 구성, 재판의 절차, 변호사, 공증인 및 법률상담
2. 호적제도
3. 결사권과 집회권
4. 외국인의 체류권과 거주권
 - 4a. 무기 및 폭약에 대한 권리

5. 독일문화계의 국외반출에 대한 보호
6. 망명자와 피추방자에 관한 사항
7. 공공복지사업
8. 주에서의 국적
9. 전쟁재해와 복구
10. 전상자와 전몰자 유가족의 부양, 포로에 대한 부조
- 10a. 전몰자 묘지와 전쟁희생자 및 폭력에 의한 희생자 묘지
11. 경제(광업, 공업, 동력산업, 수공업, 영입, 상업, 은행제도, 주식제도, 사법상의 보험제도)에 관한 법
- 11a.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에너지의 생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핵에너지의 유통과 전리방사선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협의 방지, 방사능물질의 제거
12. 영업체제, 노동보호와 직업소개를 포함하는 노동법, 실업보험을 포함하는 사회보험
13. 직업훈련 자원규정과 학술적 연구의 촉진
14. 제73조와 제74조에 규정된 사항의 범위내에서 행하는 공용징수법
15. 토지, 천연자원, 생산수단의 공유재산 또는 다른 형태의 공동관리경제로의 전환
16. 경제적 권력의 남용방지
17. 농업과 임업상 생산의 촉진, 식량의 확보, 농업과 임업상 생산물의 수입과 수출, 원양어업과 연해어업 및 연안보호
18. 부동산거래, 토지권과 농지 임대차제도, 주택제도, 이민제도 및

가택제도

19. 사람과 가축에 공히 위험성이 있고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대한 조치, 의술 및 기타의 치료업과 의료품업에 대한 허가, 약품, 약재, 마취제 및 극약의 거래
- 19a. 병원의 경제적 보증과 병원관리규칙의 규제
20. 식료품, 기호품, 생활필수품, 사료, 농업상 및 임업상의 종자와 종자 거래의 보호 그리고 수목과 식물의 병해에 대한 보호
21. 원양과 연해항해, 항로표지, 내국항행, 기상업무, 해양항로와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국내수로
22. 도로교통, 자동차제도 및 원거리수송용 국도의 건설과 유지
23. 연방철도, 산악철도 이외의 철도

第74a條(公務員의 給與에 관한 競合立法權) ①제73조 제8호에 따라 연방이 배타적 입법권을 갖지 않는 한 경합적 입법은 공법상의 복무 및 충성관계에 있는 공무원의 급료와 부양에도 미친다.

②제1항에 의한 연방법률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한다.

③제73조 제8호에 의한 연방법률도 그것이 공무원의 평가를 포함하여 그 급료 및 부양의 구조 또는 사정에 관하여 제1항에 의한 연방법률과 다른 기준 또는 최소·최대액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은 주판사의 급료와 부양에 준용된다. 제3항은 제98조 제1항에 의한 법률에 준용된다.

第75條(聯邦의 概括規定 制定事項) 연방은 제72조의 요건이 구비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관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1. 제74a조가 다른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주·시·읍·면 및 그 밖의 공법인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의 법률관계
- 1a. 대학제도의 일반원칙
2. 신문과 영화의 일반적 법률관계
3. 수렵제도, 자연의 보호 및 풍경의 관리
4. 토지분배, 국토계획(Raumordnung) 및 물의 관리
5. 등록과 신분증명서제도

第76條(法律案 提出) ①법률안은 연방정부, 연방하원 의원 또는 연방상원에 의하여 연방하원에 제출된다.

②연방정부의 법률안은 먼저 연방상원에 제출된다. 연방상원은 3주내에 그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한을 갖는다. 연방정부가 연방상원에 제출할 때, 특별히 긴급을 요한다는 표시를 한 법률안은 연방상원의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3주내에 연방하원에 제출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의견제출이 있으면 지체없이 그것을 연방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방상원의 법률안은 3개월 이내에 연방정부에 의하여 연방하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연방정부는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第77條(法律制定 節次) ①연방법률은 연방하원에서 의결된다. 연방법률은 의결후 지체없이 연방하원 의장에 의하여 연방상원에 송부되어야 한다.

②연방상원은 송부된 법률안을 수리한 후 2주 내에 의안의 합동심

의를 위하여 연방양원 의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는 연방하원이 의결하고 연방상원이 동의하는 의사규칙으로 정한다. 이 위원회에 파견된 연방상원 의원은 지시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어떤 법률이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연방하원과 연방정부도 그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위원회가 의결된 법률의 변경을 요구하면 연방하원은 재의결하여야 한다.

③법률이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방상원은 전항의 절차가 종료되면 연방하원이 의결한 법률에 대하여 2주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 이의 제출기간은 전항 후단의 경우에는 연방하원의 재의결시부터 기산하여, 그밖의 경우에는 전항에서 규정된 위원회에서의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보고한 때부터 기산한다.

④그 이의가 연방상원의 투표의 과반수로서 의결된 경우에도 연방하원 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그 이의가 연방상원의 투표의 3분의2 이상의 다수로서 의결된 경우에는 연방하원이 이를 각하하기 위하여서는 3분의2 이상의 다수표를 요하며 이는 적어도 의원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제78條(聯邦法律의 成立要件) 연방하원이 의결한 법률은 연방상원이 동의하고 제77조 제2항에 의한 재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제77조 제3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이의를 철회하는 경우 또는 그 이의가 연방하원에 의하여 각하되는 경우에 성립한다.

第79條(基本法の 改正) ①기본법은 그의 원문을 명시적으로 변경 또는 보완하는 법률에 의하여서만 이를 개정할 수 있다. 평화규정, 평화규정의 준비 또는 점령에 관한 법률서의 폐지를 목적으로 하거나 연방공화국의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을 규정한 국제조약에 관하여 그 조약의 체결과 발효가 기본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해명하기 위하여는 그 해명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법의 원문의 보완으로서 충분하다.

②이러한 개정법률은 연방하원 의원의 3분의2 이상과 연방상원 투표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③연방이 주로 구성되었다는 것, 입법에 있어서의 주의 기본적인 참여 및 제1조와 제20조에 규정된 원칙에 저촉되는 기본법의 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第80條(法規命令의 制定) ①연방정부, 연방장관 또는 주정부는 법률에 의하여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임된 권한의 내용, 목적 및 범위는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 명령에는 법적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법률로써 위임된 권한이 재위임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 재위임에 대하여는 법규명령이 필요하다.

②연방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방철도, 우편·전신시설 이용에 관한 원칙과 요금 그리고 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관하여 연방정부나 연방장관이 법규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 또는 연방의 위임에 의하거나, 고유사무로서 주가 집행하는 연방법률에 의거하여 법

규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한다.

第80a條(法規命令의 適用) ①이 기본법 또는 민간인보호를 포함하는 국방에 관한 연방법들이 이 조의 기준에 의하여만 법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 때에는, 그 적용은 방어전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하원이 긴급사태의 발생을 확인한 경우 또는 그 적용에 특별히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긴급사태의 확인과 제12a조 제5항 제1단 및 제6항 제2단의 경우의 특별동의를 투표된 표의 3분의 2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법조항에 의거한 조치는 연방하원의 요구가 있으면 중지되어야 한다.

③국제기구가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은 연방조약에 따라 행한 의결을 근거로, 그 기준에 따르는 법조항의 적용은 제1항에 관계없이 허용된다. 이 항에 의한 조치는 연방하원이 그 의원의 다수결로 요구하는 때에는 중지되어야 한다.

第81條(立法的 非常事態) ①제68조의 경우에 있어서 연방하원이 해산되지 아니한 경우에, 연방정부가 어떠한 법률안을 긴급하다고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방하원이 이를 부결한 때에는 연방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요구에 따라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그 법률안에 관하여 입법적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연방수상이 제68조의 제의를 어떤 법률안과 결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안이 부결된 때에도 같다.

②입법적 비상사태가 선언된 후 연방하원이 그 법률안을 다시 부결

하거나 연방정부가 수락할 수 없는 안으로 통과시킨 경우에는 연방 상원이 동의하는 범위내에서 그 법률은 성립하였다고 본다. 그 법률안이 재의에 붙여진 후 4주내에 연방하원에 의하여 의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같다.

③연방수상의 임기중에 입법적 비상사태를 최초로 선언한 후 6개월의 기간내에는 연방하원에 의하여 부결된 그밖의 법률안도 전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결될 수 있다. 그 기간이 경과한 후 동일수상의 재임기간 중에는 다시 입법적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없다.

④제2항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에 의해서는 기본법이 개정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第82條(法律의 公布 및 效力發生) ①본 기본법 규정에 따라서 성립된 법률은 부서된 후 연방대통령이 작성하여 연방법률공보에 공포한다. 법규명령은 이를 발하는 관청이 작성하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연방법률공보에 공포한다.

②모든 법률과 법규명령은 시행일을 정하여야 한다. 그 시행일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방법률공보가 발행된 날로부터 14일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第 8 章 聯邦法律의 執行 및 聯邦行政

第83條(州에 依한 聯邦法律의 執行에 關한 原則) 주는 본 기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연방법률을 고유사무로서 집행한다.

第84條(州行政과 聯邦의 監督) ①각 주가 연방법률을 고유사무로서 집행하는 경우에는 연방법률이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주는 그의 관청조직 및 행정절차를 규정한다.

②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일반행정규칙을 발할 수 있다.

③연방정부는 각 주가 연방법률을 현행법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감독한다. 연방정부는 이 목적을 위하여 위원(Beauftragte)을 주의 최고관청에 파견할 수 있다. 또 최고관청의 동의를 얻어 그 하급관청에도 위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최고관청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파견할 수 있다.

④연방정부가 각 주에 있어서 연방법률의 집행에 관하여 연방정부가 확인한 흠결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연방상원은 연방정부 또는 주의 요구가 있으면 그 주가 법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연방상원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⑤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모든 연방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에 개별적인 지시를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 지시는 연방정부가 사정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외에는 주상급관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第85條(聯邦의 委任에 의한 州行政) ①각 주가 연방의 위임에 의하여 연방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연방법률이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관청의 조직은 주의 사무이다.

②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일반행정규칙을 발할 수 있

다. 연방정부는 정식공무원 및 고용원의 통일적인 훈련을 규정할 수 있다. 중급관청의 장은 연방정부와 협의하여 임명되어야 한다.

③주관청은 연방최고 관할관청의 지시에 복종한다. 그 지시는 연방정부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외에는 주최고관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그 지시의 집행은 주최고관청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④연방의 감독은 집행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에까지 미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보고와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모든 관청에 위원을 파견할 수 있다.

第86條(聯邦의 固有行政) 연방이 연방고유행정에 의하여 또는 연방직속기관 또는 영조물에 의하여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방정부가 일반행정규칙을 발한다. 연방정부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관청의 조직을 규제한다.

第87條(聯邦固有行政의 對象) ①외교사무, 연방재무행정, 연방철도, 연방우편,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연방수로와 해운의 행정은 연방고유행정으로 연방의 하부행정기구가 행한다. 연방국경수비관청, 경찰상의 정보 및 통신기기와 사법경찰에 대한 중앙관청, 헌법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폭력행사나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행위에 의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외교상의 권익을 위태롭게 하는 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관청은 연방법률에 의하여 설치될 수 있다.

②관할영역이 1개주 이상인 사회보험담당자는 연방직속기관으로 한다.

③그 밖에 연방이 입법권을 가지는 사항에 대하여 독립된 연방상급 관청과 새로운 연방직속기관 및 영조물을 연방법률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연방이 입법권을 가지는 영역에서 연방에 새로운 임무가 발생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방상원의 동의와 연방하원 의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연방고유의 중급 및 하급 관청을 설치할 수 있다.

제87a條(軍隊의 編成과 兵力) ①연방은 방어를 목적으로 군대를 편성한다. 군대의 병력수와 그 조직의 대강은 예산안에 따른다.

②방어의 목적 이외에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경우는 이 기본법에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군대는 방어전쟁 및 긴급사태의 경우에 그 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민간인과 민간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정리의 임무를 담당할 권한을 가진다. 그밖에 방어전쟁과 긴급사태의 경우에는 경찰상의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인과 민간재산의 보호가 군대에 이양될 수 있다. 이 경우 군대는 관할관청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연방과 주의 존립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제91조 제2항의 요건이 존재하고 경찰력과 연방국경수비대만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민간인과 민간재산을 보호하고 조직된 군사적 무장폭도들을 진압하는 경찰과 연방국경수비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군대의 동원은 연방하원이나 연방상원의 요구가 있으면 중지되어야 한다.

제87b條(聯邦 軍事行政) ①연방의 군사행정은 연방고유의 행정으로서 하급행정기관이 수행한다. 연방의 군사행정은 군대의 인사제도에 관한 임무와 필수물자를 직접조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부상자의 부조와 건축공사에 관한 임무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에 의하여서만 연방의 군사행정으로 위임될 수 있다. 법률이 연방군사행정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인사제도에 관한 법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경우 이외에 징병사무와 비전투원의 보호를 포함하는 방어에 관한 연방법률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전부 또는 일부가 연방고유 행정사항이나 연방의 하부행정기관이나 연방의 위임에 의해 각 주에 의하여 집행된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이 연방의 위임에 의하여 각 주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집행될 때에는 그 법률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정부와 연방최고관할 관청이 제85조에 의하여 갖는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방상급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관청이 제85조 제2항 제1단에 따라 일반행정규칙을 발함에 있어서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될 수 있다.

第87c條(核에너지 行政) 제74조 제11a호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법률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그 법률이 연방의 위임으로 주에 의하여 집행된다고 규정할 수 있다.

第87d條(航空輸送行政) ①항공수송행정은 연방고유행정으로 처리된다.

②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항공수송행정업무는 주에 위임될 수 있다.

第88條(聯邦銀行) 연방은 연방은행으로서 본위화폐 및 지폐발행은행을 설치한다.

第89條(聯邦의 水路) ①연방은 종래 제국수로의 소유자이다.

②연방은 자기의 관청을 통하여 연방의 수로를 관리한다. 연방은 한 주의 영역을 넘는 내국수운에 관한 국제적 업무와 법률에 의하여 연방에 위탁된 해운업무를 수행한다. 연방은 연방수로가 한 주의 영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주의 요구가 있으면 그 관리를 그 주에 위임할 수 있다. 어떠한 수로가 수개의 주의 영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연방은 관계되는 제 주가 추천하는 주에 그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③수로를 수리하고 신설하는 때에는 각주와 협의하여 그 토지경작자 및 수리상의 요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第90條(聯邦의 陸路) ①연방은 종래 제국고속도로 및 제국육로의 소유자이다.

②주 또는 주법에 의하여 권한을 가지는 자치단체는 연방자동차도로와 기타의 원거리수송용 연방육로를 연방의 위임에 의하여 관리한다.

③연방은 주의 요구가 있으면 연방자동차도로와 기타의 원거리수송용 육로를 해당주의 영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방고유행정으로 인

수할 수 있다.

第91條(州의 非常事態) ①연방이나 주의 존립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절박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는 다른 주들의 경찰력 및 다른 행정관청과 연방국경수비대의 병력과 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협에 직면하여 있는 주가 스스로 위협방지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연방정부는 그 주의 경찰과 다른 주의 경찰력을 스스로 지휘하고 연방국경수비대의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 그 명령은 위협이 제거된 후 연방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해제되어야 한다. 위협이 1개주 이상에 미치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진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방정부는 주정부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제1단과 제2단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第8a章 共同事務

第91a條(共同事務에 있어서 聯邦의 協力) ①연방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그 업무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연방의 협력이 생활관계의 개선에 필요한 경우에 주와 협력한다.

1.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학의 확장과 신축
2. 지역경제구조의 개선
3. 농업구조와 연안보호의 개선

②공동사무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법률로 상세히 규정된다. 그 법률은 공동사무 수행을 위한 일반원칙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동 법률은 일반적 총괄계획을 위한 절차와 조치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④연방은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 각 주의 비용의 반을 부담한다. 제1항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방은 최소한 그 비용의 반을 부담한다. 비용분배는 모든 주에 있어서 동일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그 자금의 조달은 연방과 주의 예산안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⑤연방정부와 연방상원은 공동사무의 집행에 관한 요구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한다.

第91b條(교육과 研究計劃에 있어서 聯邦과 州의 協力) 연방과 주는 협정에 의거하여 교육계획과 초지역적인 학문적 연구의 시설과 계획의 촉진에 협력할 수 있다. 비용부담은 협정으로 정한다.

第9章 司 法

第92條(法院組織) 사법권은 법관에게 부여된다. 사법권은 연방헌법재판소, 본 기본법에 규정된 연방재판소 및 각 주의 재판소에 의하여 행사된다.

第93條(聯邦憲法裁判所의 權限) ①연방헌법재판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재판한다.

1. 연방최고기관의 권리, 업무의 범위 또는 기본법이나 연방최고기관의 직무규칙에 의하여 고유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기타 관

제자의 권리·의무의 범위에 관한 소송에서의 기본법의 해석

2.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연방하원 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연방법이나 주법이 기본법에 형식적·실질적으로 합치하는가의 문제와 주법이 연방법에 합치하는가에 대한 의견의 상위 및 의문
 3. 특히 연방법이 주에 의해 집행되는 경우와 연방이 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연방과 주의 권리업무에 관하여 의견이 상치한 때.
 4. 연방과 주간, 주 상호간 또는 한 주 내부의 공법상 쟁송에 대한 다른 소송방법이 없을 때
 - 4a. 공권력에 의하여 그 기본권 또는 제20조 제4항, 제33조, 제38조, 제101조, 제103조 및 제104조에 규정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제기되는 헌법소원
 - 4b. 제28조의 자치행정권이 법률에 의하여 침해되었거나 주헌법재판소에 소원이 제기될 수 없는 경우로서 주법률에 의하여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지방자치제와 그 연합이 제기하는 헌법소원
 5. 기타 본 기본법에 규정된 때
- ②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법률이 규정하는 사항을 관할한다.

第94條(聯邦憲法裁判所의 構成) ①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법관 및 그밖의 구성원으로 구성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은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에 의하여 반수씩 선출된다. 그 구성원은 연방하원, 연방상원, 연방정부 및 그에 상응하는 주 기관에 소속될 수 없다.

②연방법률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절차를 규정하며 또한 그의 판결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경우를 규정한다. 연방법률은 헌법소원에 대하여 사전적 소송수단의 완료를 그 전제로 할 수 있고, 특별한 수리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第95條(聯邦最高裁判所) ①일반 민·형사, 행정, 재정, 노동 및 사회분야에 대한 최고재판소로서 연방최고재판소, 연방행정재판소, 연방재정재판소, 연방노동재판소 및 연방사회재판소를 설치한다.

②상기 재판소의 법관의 임명에 대하여는 각 해당분야를 관할하는 연방장관이 각 해당분야를 관할하는 주장관과 연방하원에 의하여 선출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법관선임위원회와 공동으로 결정한다.

③재판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열거된 재판소의 합동심의회가 설치된다.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第96條(聯邦裁判所) ①연방은 영업상의 권리보호사건을 위하여 연방재판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연방은 연방재판소로서 군인을 위한 군형사재판소를 설치할 수 있다. 군형사재판소는 방어전쟁의 경우와 외국에 파견되거나 군함에 승선한 군인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군형사재판소는 연방법무장관의 관할에 속한다. 군형사재판소의 전임판사는 판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열거된 재판소에 대한 최고재판소는 연방최고재판소이다.

④연방은 연방과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한 징계절차와 소청절차를 재판하기 위한 연방재판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⑤제26조 제1항과 국가안전보장의 형사절차에 대하여, 연방법률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주재판소가 연방의 재판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第97條(法官의 獨立) ①법관은 독립이며 법률에만 복종한다.

②전임으로 정식 임명된 법관은 판결이나 법률이 정하는 사유 및 형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임기 만료전에 해직되거나 영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정직되거나 타직으로 전임되거나 퇴임되지 아니한다. 종신직판사의 정년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재판소의 조직과 관할구역의 변경에 의하여 법관은 다른 재판소로 전보되거나 퇴직될 수 있다. 단, 봉급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第98條(法官의 法的 地位) ①연방법관의 법적 지위는 특별한 연방법률로 정한다.

②연방법관이 직무상 또는 직무외에서 기본법의 원칙이나 주의 헌법적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하원의 요구가 있으면 3분의2의 다수로써 그 법관의 전직이나 퇴임을 명할 수 있다.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파면을 명할 수 있다.

③주법관의 법적 지위는 특별한 주법률로 정한다. 연방은 제74조 제4항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에 관한 기관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④각 주는 주법관을 임용할 때에 연방법무부장관이 주법관선임위원회

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⑤각 주는 주법원에 대하여 제2항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현행의 주헌법에는 저촉될 수 없다. 법관탄핵에 관한 결정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권한에 속한다.

第99조(州의 法的 紛爭에 대한 聯邦憲法裁判所의 決定) 주법원에 의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할당될 수 있으며, 주법 적용이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한 최종판결은 제95조 제1항에 명시된 연방최고재판소에 이관될 수 있다.

第100條(具體的 規範統制) ①재판소가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적용할 법률이 위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의 절차는 중지되어야 한다. 이때에 주헌법의 침해가 문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헌법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주재판소의 결정이 있어야 하며, 기본법의 침해가 문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주법에 의한 기본법의 침해와 주법과 연방법과의 불일치의 경우에도 같다.

②어떠한 법적 분쟁에서, 국제법의 어떤 규정이 연방법의 일부를 이루는지의 여부와 그 규정이 개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권리의무를 발생하게 하는지(제25조)의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 해당재판소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여야 한다.

③주헌법재판소가 기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연방헌법재판소나 다른 주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 그 주헌법재판소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여야 한다.

第101條(特別裁判所の 禁止) ①특별재판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법률에 정하는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②특별사항에 관한 재판소는 법률에 의하여서만 설치될 수 있다.

第102條(死刑의 禁止) 사형은 금지된다.

第103條(刑法과 刑事訴訟에 있어서의 基本權) ①누구든지 법정에서 법률상의 방청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행위는 그 행위 이전에 법률상 가벌성이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처벌된다.

③누구든지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일반형법에 의거하여 거듭 처벌되지 아니한다.

第104條(自由剝奪의 경우 權利保障) ①인신의 자유는 법률에 의해서만 그리고 그 법률에 규정된 형식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구금된 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자유박탈의 허용과 계속은 법관만이 결정할 수 있다. 법관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 자유가 박탈된 모든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관의 결정을 구해야 한다. 경찰은 체포된 자를 익일의 자정이 넘도록 구류하여서는 아니된다.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③범죄행위의 혐의 때문에 일시적으로 체포된 자는 늦어도 체포된 익일중으로 법관에 인도되어야 하며 법관은 체포의 이유를 알리고 신문하며 또한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관은 지체없이

이유를 부기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④자유박탈의 명령 또는 계속에 관한 법관의 모든 결정은 지체없이 구류된 자의 가족이나 그 자의 의뢰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第10章 財 政

第104a條(支出負擔, 聯邦의 財政補助) ①연방과 주는 이 기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자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②주가 연방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연방이 부담한다.

③금전지출을 승인하고 주에 의하여 집행되는 연방법률은 금전지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방이 부담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법률이 그 지출금의 2분의1 이상을 연방이 부담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은 연방의 위임에 따라 집행된다. 법률이 그 지출금의 4분의1 이상을 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④연방은 전체의 경제적 균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연방 영역내에서 여러가지 경제력의 조정을 위하여 또는 경제발전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와 시·읍·면(시·읍·면연합)의 특별히 중요한 출자에 대하여 각 주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상세한 것, 특히 개발을 위한 출자의 방법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거나 연방예산법률에 의거한 행정협정으로 이루어진다.

⑤연방과 주는 자기의 관청에서 발생하는 행정지출을 부담하며, 합법적인 행정에 대하여는 상호간의 일정한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상세한 것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第105條(財政立法權) ①연방은 국세 및 제정전매에 관한 배타적 입법권을 갖는다.

②연방은 그밖의 조세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에 귀속하든가, 제72조 제2항의 존재가 전제되는 때에는 그 조세에 관하여 경합적 입법권을 갖는다.

②-a. 주는 지방소비세 및 물품세에 대하여 입법권을 갖는다. 단, 연방법률에 규정된 조세와 동종의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조세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 또는 시·읍·면(시·읍·면연합)에 귀속하는 조세에 관한 연방법률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한다.

第106條(租稅收益과 그 配分) ①제정전매의 수익과 다음 각호 조세의 수입은 연방에 귀속한다.

1. 관세
2. 소비세 단, 제2항에 의하여 각 주에, 제3항에 의하여 연방과 주에, 제6항에 의하여 시·읍·면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도로운송세
4. 재산거래세, 보험세 및 어음세
5. 1회에 한하여 부과되는 자본과세와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조정과세

6.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보완과세

7. 유럽공동체의 범위내에서 과세

②다음 각호의 조세의 수입은 주에 귀속한다.

1. 재산세

2. 상속세

3. 자동차세

4. 통행세 단, 제1항에 의하여 연방에, 제3항에 의하여 연방과 주에 귀속되지 않는 통행세

5. 맥주세

6. 도박장의 과세

③소득세, 법인세 및 매상세의 수입은, 제5항에 의하여 소득세의 수입이 지방자치단체에 배당되지 아니하는 때에 연방과 주에 공동으로 귀속된다(지방세). 소득세와 법인세의 수입은 연방과 주에 각각 반씩 배당된다. 매상세에 관한 연방과 주의 배분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그 경우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1. 연방과 주는 통상수입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공평한 청구권을 갖는다. 그 경우 지출의 범위는 연도별 재정계획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연방과 주의 충당청구는 공정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납세의무자의 초과부담이 회피되고, 연방지역에서의 생활상태의 균형이 보장되도록 순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④연방과 주에 대한 매상세의 분배는 연방과 주의 수입과 지출이 근본적으로 변경될 때에도 새로 정하여야 한다. 연방법률에 의하여

주가 추가지출을 부담하거나 수입이 삭감되는 경우에는, 주의 초과 부담이 단기간일 때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그 초과부담을 연방의 재정배당금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재정배당금의 산정을 위한 원칙과 그 주에 대한 분배의 원칙은 법률로 정한다.

⑤지방자치단체는 주로부터 주민의 소득세 납부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되어야 할 소득세의 수입에서 배당을 받는다. 상세한 것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동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분에 관한 징수율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⑥대물세와 지방소비세 및 물품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대물세의 징수율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 주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대물세, 지방소비세 및 물품세의 수입은 주에 귀속한다. 연방과 주는 배당액에 따라 영업세의 수입에 참여할 수 있다. 배당액에 대한 상세한 것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주입법의 기준에 따라 대물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세 수입지분이 배당액의 산정기준이 될 수 있다.

⑦지방세의 총수입에 대한 주의 배분액 중, 주입법으로 정하는 백분비 만큼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연합에 귀속한다. 그밖에 주입법은 주세의 수입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에의 귀속 여부와 정도를 정한다.

⑧연방이 개개의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에 직접적으로 초과지출 또는 수입부족(특별부담)의 원인이 되는 특별한 시설을

그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에 두게 할 때에는, 연방은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에 이 특별부담이 기대될 수 없는 경우와 기대될 수 없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정을 한다.

⑨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의 수입과 지출도 이 조에서의 주의 수입과 지출로 본다.

第107條(財政調整) ①주의 세수입과 소득세·법인세 수입에 대한 주의 배당액은, 그것이 그 지역의 재무관청에 의하여 징수되는 한도에서 각 주에 귀속한다(지역적 수입).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에 관한 지역적 수입의 한도와 종류 및 그 배분범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매상세의 세수입에 대한 주의 배당액은 그 주민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귀속한다. 주배당액의 일부, 최고 1,000분의 1까지를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주세, 소득세 및 법인세로부터의 그 주민당 조세수입이 다른 주의 평균수입 이하인 주에 대하여는 보충배당으로 정할 수 있다.

②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주의 상이한 재정력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의 재정력 및 재정수요가 고려되어야 한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주의 조정청구권의 요건, 보조업무가 있는 주의 조정업무에 대한 요건 및 조정급부액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이 법률에는 연방이 급부능력이 약한 주의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충

당하기 위하여 연방의 재원으로부터 교부금을 지급(보완배당)한다는 것도 규정할 수 있다.

第108條(財務管理) ①관세, 재정전매, 연방법률로 규정된 수입대상세를 포함하는 소비세 및 유럽공동체와 관련된 과세는 연방재무관청이 관리한다. 이 재무관청의 조직과 이 관청에 의하여 적용될 절차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중급관청의 장은 주정부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②그밖의 조세는 주재무관청이 관리한다. 그 관청의 조직 및 공무원의 통일적 양성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③주재무관청이 조세를 관리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연방의 수입이 되는 경우에는 주재무관청은 연방의 위임에 따라 행동한다. 제85조 제3항과 제4항은 연방재무관청이 연방정부를 대리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적용된다.

④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조세관리에 있어서 조세법의 집행이 현저히 개선되거나 용이해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연방재무관청과 주재무관청의 협력이 규정될 수 있고, 제1항에 해당하는 조세에 대하여는 주재무관청의 관리가, 그밖의 조세에 관하여는 연방재무관청의 관리가 규정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에만 귀속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주재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주에 의한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에 위임될 수 있다.

⑤연방재무관청에 의하여 적용되는 절차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주재무관청에 의하여, 제4항 제2단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연합)에 의하여 적용되는 절차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⑥재무재판권은 연방법률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⑦연방정부는 일반관리규칙을 규정할 수 있고, 조세관리가 주재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연합)를 구속하는 경우에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한다.

第109條(聯邦과 州의 豫算管理) ①연방과 주는 각자의 예산관리에 있어서 자주적이고 상호독립적이다.

②연방과 주는 각자의 예산관리에 있어서 전체경제적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연방과 주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재정법과 경기에 상응한 예산관리 및 수년에 걸친 재정계획에 관한 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

④전체경제적 균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1. 지역단체와 목적단체에 대한 여신의 최고액, 조건 및 기한
2. 독일연방은행에 의한 무이자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연방과 주의 업무 (경기조정준비금)

⑤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은 연방정부만이 가진다. 법규명령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 명령은 연방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폐지된다.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 第110條(聯邦의 豫算案) ①연방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안에 편성되어야 한다. 연방경영기업체와 특별재산의 경우에는 도입이나 교부만을 명시한다. 예산안은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②예산안은 그 연도에 따라 일회계년도 또는 다회계년도로 분리되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예산법으로 확정된다. 예산의 각 부분에 대하여 기간이 상이한 것은 회계연도마다 분리되어 적용된다.
- ③제2항 제1단에 의한 법률안과 예산법률 및 예산안의 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연방상원에 송부함과 동시에 연방하원에 제출된다. 연방상원은 6주 이내에, 개정법률안일 경우에는 3주 이내에 그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 ④예산법률에는 연방의 수입과 지출, 예산안에 의하여 의결된 기간에 관한 조항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예산법률은 그 규정이 다음 예산법률의 공포와 동시에 또는 제115조에 의한 수권의 경우에는 보다 늦게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第111條(豫算의 承認前의 支出) ①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익년도의 예산안이 법률로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률이 발효할 때까지 연방정부는 다음 각호에 필요한 모든 지출을 할 권한을 가진다.

- a) 법률로서 설치된 시설을 유지하고 법률로 정한 처분을 실행하기 위하여
- b) 법적 근거가 있는 연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c) 전년도의 예산에 의하여 이미 승인된 범위내에서 건축, 조달

및 기타의 납부를 단속하거나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보조
를 단속하기 위하여

②특별한 법률에 근거가 있는 조세, 공과금 및 기타의 원천에서
오는 수입이나 사업경영자금적립금(Betriebsmittelrücklag)이 전항에 의
거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방정부는 경영수행을 유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전년도예산의 최종총액의 4분의 1까지
신용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第112條(豫算超過) 예산초과와 예산외지출은 연방재무부장관의 동의를
요한다. 그 동의는 예견할 수 없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상세
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第113條(支出의 增加) ①연방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의 지출을 증액하거
나 새로운 지출을 포함하거나 또는 예비비를 설치하는 법률은 연방
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수입감소를 포함하거나 장치 수입감소
를 수반하는 법률에 대하여도 같다. 연방정부는 연방하원이 그와
같은 법률의 의결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연
방정부는 6주내에 연방하원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방정부는 연방하원이 법률을 의결한 후 4주 이내에 연방하원으
로 하여금 재의결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법률이 제78조에 따라 성립된 때에는 연방정부는 사전에 제1항
제3단과 제4단 또는 제2항에 의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한하여
6주 이내에 그 동의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의를 있는 것으로 본다.

第114條(決算의 提出) ①연방재무장관은 연방정부의 책임면제를 위하여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에 대하여 총수입과 총지출 및 차기회계년도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결산보고를 한다.

②그 구성원이 법관적 독립성을 갖는 연방회계검사원은 결산과 더불어 예산집행 및 관리의 경제성과 합법성을 심사한다. 연방회계검사원은 연방정부를 제외하고 직접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연방회계검사원의 그밖의 권한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第115條(信用調達) ①차기회계년도에 지출될 수 신용의 허가, 보증, 저당 또는 그밖의 담보제공은 연방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최고액의 수권을 필요로 한다. 신용의 수입은, 예산안 중에서 투자를 위하여 산정된 지출의 총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체 경제균형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만 예외가 허용된다. 그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②연방의 특별자금은 연방법률로 제1항에 대한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第 10a 章 防禦戰爭

第115a條(防禦戰爭의 確認) ①연방영역이 무력으로 침공되거나 그와 같은 침공의 직접적인 위협의 확인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하원이 결정한다. 그 확인은 연방정부의 제의로 행하여지며 3분의 2 이상 다수의 투표에 연방하원 의원의 과반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②사태가 즉각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방하원

의 적시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연방하원이 의결능력이 없는 경우에, 합동위원회는 3분의 2이상 투표에, 적어도 그 구성원의 과반수로써 확인을 결정한다.

③그 확인은 제82조에 따라 연방대통령에 의하여 연방법률공보에 공고된다. 이 공고가 적시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공고한다. 사정이 허락하면 즉시 연방법률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연방영역이 무력으로 침공되고, 권한있는 연방기관이 즉시 제1항 제1단에 의한 확인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결정된 것으로 보고, 침공이 개시된 시점에 공고된 것으로 본다. 연방대통령은 사정이 허락하는 한 즉시 그 시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방어전쟁의 확인이 공고되고, 연방영역이 무력으로 침공된 경우 연방대통령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방어전쟁의 존속에 관한 국제법상의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 제2항의 전제하에서는 합동위원회가 연방하원을 대신한다.

第115b條(防禦戰爭에 있어서 軍統帥權) 방어전쟁의 공고와 더불어 군사상의 명령권과 지휘권은 연방수상에게 위임된다.

第115c條(防禦戰爭에 있어서 聯邦立法權의 擴大) ①연방은 방어전쟁을 위하여 그것이 주의 입법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도 경합적 입법권을 가진다. 그 법률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한다.

②방어전쟁의 기간중 상황이 요구하면, 방어전쟁에 대하여 연방법률도,
1. 수용의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 제2단과는 달리 보상을 잠정적으로 규정하고

2. 자유박탈의 경우에 제104조 제2항 제3단 및 제3항 제1단과 다른 기한은 법관이 정상시에 적용되는 기한내에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 4회의 연장으로 확정될 수 있다.

③현재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침공을 저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방어전쟁을 위하여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법률에 의하여 제8장, 제8a장 및 제10장과는 달리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연합의 존속능력은 특히 재정적인 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 제1호에 의한 연방법률은 그 집행준비를 위하여 방어전쟁 개시 이전부터 적용될 수 있다.

第115d條(緊急法律案의 處理) ①방어전쟁의 경우에는 연방의 입법에 대하여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1항 제2단과 제2항 내지 제4항, 제78조와 제82조 제1항과는 달리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②긴급한 연방정부의 법률안은 연방상원에 제출과 동시에 연방하원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은 이 법률안을 즉시 공동으로 심의한다.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법률로 확정되기 위하여 연방상원 다수결의 동의를 요한다. 상세한 것은 연방하원이 의결하고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의사규칙으로 정한다.

③법률의 공포에는 제115a조 제3항 제2단이 준용된다.

第115e條(合同委員會의 地位) ①방어전쟁의 경우에 합동위원회가 3분의 2이상 다수 투표와 최소한 그 구성원의 과반수로, 연방하원이 적시

에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거나 연방하원이 의결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합동위원회는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의 지위를 가지며 그들의 권한을 통일적으로 행사한다.

②합동위원회가 제정한 법률로는 이 헌법을 개정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실효하게 하거나 무효하도록 할 수 없다. 합동위원회는 제24조 제1항과 제29조에 의하여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第115f條(聯邦政府의 特別權能) ①연방정부는 방어전쟁의 경우에 상황이 요구하면,

1. 연방전역의 연방국경수비대를 동원할 수 있고
2. 연방행정부 이외에 주정부에 대하여, 그리고 긴급하다고 확정된 때에는 주관청에 대하여도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그가 정하는 주정부의 구성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연방하원, 연방상원 및 합동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조치에 관하여 지체없이 보고를 받는다.

第115g條(防禦戰爭에있어서 聯邦憲法裁判所の 地位) 연방헌법재판소와 그 법관의 기본법상의 지위와 기본법상의 임무의 수행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연방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은 동 재판소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연방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합동위원회의 법률로서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는 연방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단과 제3단의 사항을 재석 법관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第115h條(防禦戰爭에있어서의 任期) ①방어전쟁의 기간중에 종료하는 연방의회 또는 주의회의 임기는 방어전쟁의 종결 후 6개월에 종료한다. 방어전쟁의 기간중에 종료한 연방대통령의 임기와 그 임기전 사임으로 연방상원 의장에 의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기는 방어전쟁 종결 후 9개월에 종료한다. 방어전쟁의 기간중에 종료한 연방헌법재판소 법관의 임기는 방어전쟁 종결 후 6개월에 종료한다.

②합동위원회에 의한 연방수상의 새로운 선출이 필요한 때에는, 동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로 새 연방수상을 선출한다. 연방대통령은 합동위원회에 추천을 한다. 합동위원회는 그 구성원 3분의 2의 다수로 후임자를 선출함으로써만 연방수상에 대하여 불신임을 표명할 수 있다.

③방어전쟁기간중의 해산은 금지된다.

第115i條(防禦戰爭에있어서 州政府의 非常權) ①해당 연방기관이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고, 사태가 연방의 각 영역에서 즉각적, 독자적인 행동을 불가피하게 요구할 때에는 주정부 또는 그에 의하여 지정된 관청이나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제 115f조 제1항에서 말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조치는 연방정부에 의하여, 그리고 주관청과 연방하급관청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수상에 의하여도 언제든지 중지될 수 있다.

第115k條(非常立法의 地位와 效力期間) ①제115c조, 제115e조 및 제 115g조에 관한 법률 및 이 법률에 의거하는 법규명령은 그 적용

기간 중 그와 대립되는 법을 실효케 한다. 제115c조, 제115e조 및 제115g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기존의 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합동위원회가 의결한 법률과 그러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규 명령은 늦어도 방어전쟁 종결 후 6개월내에 효력을 상실한다.

③제91a조, 제91b조, 제104a조 및 제107조와 상이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은 방어전쟁 후의 제2차 회계연도의 종료시까지만 적용된다. 동법률은 방어전쟁 종결 후 제8a장과 제10장에 의한 규정에 위임하기 위하여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법률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第115I條(合同委員會의 法律의 廢止) ①연방하원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합동위원회의 법률을 폐지할 수 있다. 연방상원은 연방하원이 이에 관한 의결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협방지를 위한 합동위원회 또는 연방정부의 그밖의 조치는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폐지되어야 한다.

②연방하원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연방대통령에 의하여 공고될 의결로써 방어전쟁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연방상원은 연방하원이 이에 관하여 결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방어전쟁은 이를 확정할 전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그 종결을 선언할 수 있다.

③강화조약체결은 연방법률로 결정한다.

第 11 章 經 過 規 定 및 終 結 規 定

第116條(獨逸人의 概念, 國籍回復) 본 기본법이 의미하는 독일인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독일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나 1937년 12월 31일 현재 독일민족에 속하였던 자로서 망명자나 추방된 자 또는 그의 배우자나 자손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②1933년 1월 30일과 1945년 5월 8일 사이에 정치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국적이 박탈된 구독일인과 그 자손은 청구에 의하여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러한 자로서 1945년 5월 8일 이후 독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적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본다.

第117條(第3條와 第11條에 對한 經 過 規 定) ①제3조 제2항에 저촉되는 법은 그것이 조정되어 기본법의 이 규정에 적합하게 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단, 1953년 3월 31일을 초과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현재의 주택난을 고려하여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연방법률에 의하여 폐지될 때까지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第118條 폐지

第119條(亡命者와 被追放者) 망명자와 피추방자에 관한 사무, 특히 각 주로 그들을 할당하는데 관하여 연방정부는 연방법률에 의한 규정이 있을 때까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때에 연방정부에는 특별한 경우에 개별적 지시를

발할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 이 지시는 절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최고관청에 대하여 발하여져야 한다.

第120條(占領費와 戰爭結果 負擔) ①연방은 점령비 및 연방법률의 상세한 규정에 따른 국내외에 있어서의 그밖의 전쟁결과 부채에 대한 지출을 부담한다. 다만 전쟁결과 부채는 연방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969년 10월 1일까지는 상기 연방법률의 배분액에 따라서 연방 및 주가 지출을 부담한다. 연방법률에 규정되지도 않았고 아직 규정되지도 아니 한 전쟁결과 부담에 대한 지출은 1965년 10월 1일까지는 그 업무가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할 경우, 주,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 또는 그 밖의 업무담당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연방은 이러한 종류의 지출의 청구에 대하여는 이 시기 이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연방은 실업보험과 실업자구제를 포함하는 사회보험의 부담에 대한 보조를 한다. 이 항에 의하여 규정된 연방 및 주에의 전쟁결과 부채의 할당은 전쟁결과와 보상금청구에 관한 법적규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수입은 연방이 지출을 인수함과 동시에 연방에 이전된다.

第120a條(負擔調整의 實行) ①부담조정^의 실행을 위한 법률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그 실행이 조정작용의 범위내에서, 일부는 연방에 의하여, 일부는 연방의 위임으로 주에 의하여 행하여진다고 규정할 수 있으며 또한 제85조에 의하여 그 범위내에서, 연방정부와 연방 최고관청에 귀속하는 권한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연방조정국

(Bundesausgleichsamt)에 위임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연방조정국은 그 위임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연방조정국의 지시는 긴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최고관청(주조정국)에 대하여 발하여져야 한다.

②제87조 제3항 제2단은 여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第121條(過半數의 概念) 본 기본법에서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의 의원의 과반수라 함은 법률상의 의원수의 과반수를 의미한다.

第122條(立法參與機關의 解散) ①연방하원이 집회된 후에는 법률은 오로지 본 기본법에서 인정된 입법권에 의해서만 의결된다.

②제1항에 따라 그들의 권한이 종료되는 입법기관 및 입법에 대하여 조언을 주고 협력하는 기관은 연방하원의 집회와 동시에 해산된다.

第123條(舊法과 舊條約의 效力持續) ①연방하원이 개회되기 이전의 법은 본 기본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효력이 있다.

②구독일제국이 체결한 조약으로서 본 기본법에 의하여 주입법권이 관할하게 되는 사항에 관계되는 조약은 당해조약이 일반적 원칙에 따라 유효하며 또한 계속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조약이 본 기본법에 의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체결될 때까지 또는 당해조약이 그 중의 규정에 의하여 달리 종료될 때까지는 관계자의 모든 권리와 이익을 유보하고 그 효력을 지속한다.

第124條(聯邦의 排他的 立法事項에 關한 舊法) 연방의 배타적인 입법

사항에 관계되는 구법은 그의 적용범위내에서 연방법이 된다.

第125條(聯邦의 競合的 立法事項에 關한 舊法) 연방의 경합적인 입법 사항에 관계되는 구법은 그의 적용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연방법이 된다.

1. 그 법이 1개 이상의 점령지역내에서 동일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2. 그 법이 1945년 5월 8일 이후에 구독일제국법을 개정한 법에 관계되는 경우

第126條(舊法の 效力에 關한 爭訟) 구법이 연방법으로서 계속적인 효력을 가지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대립되는 때에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를 결정한다.

第127條(統合經濟地域 管理法) 연방정부는 그 관리법이 기본법 제124조 또는 제125조에 따라 계속하여 연방법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한, 통합경제지역관리법(Recht der Verwaltung des Vereinigten Wirtschaftsgebiet)을 관련되는 주정부의 동의를 얻어 본 기본법의 공포후 1년 내에 「바덴」, 「서베를린」, 「라인란트-팔쯔」 및 「뷔르템베르크-호엔졸레른」의 제 주에서 시행할 수 있다.

第128條(指示權의 存續) 계속하여 유효한 구법이 제84조 제5항에서 의미하는 지시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권은 법률로 달리 규정될 때까지 그대로 존속한다.

第129條(授權의 效力持續) ①연방법으로서 효력이 지속되는 법률로서

법규명령이나 일반행정규칙을 발할 수 있는 수권 또는 행정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수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권은 급후 해당사항을 관할하는 관청으로 이전된다. 이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연방상원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그 결정은 공개되어야 한다.

②주법으로서 효력이 지속되는 법규내에 전항과 동일한 수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권은 주법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행사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말하는 법규가 법률에 같음하여 해당법규를 개정하거나 보완하거나 법규를 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권은 소멸된다.

④제1항 및 제2조의 규정은 법규가 이미 적용되지 아니하는 규정 또는 이미 존속하지 아니하는 제도에 대한 것인 경우에 준용된다.

第130條(行政機關의 管轄) ①주법이나 주간의 조약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행정기관, 공공행정이나 사법을 위한 기타의 제도, 서남독일철도의 합동경영기관(Betriebsvereinigung) 및 불란서점령지역에 대한 우편제도와 전신제도 관리기관은 연방정부에 속한다.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그것의 이관, 해산 또는 창산을 결정한다.

②전항의 행정 및 기관의 최고감독관청은 관할 연방장관이다.

③주의 관할이 아니고, 주간의 조약에 의거하지 아니한 공법상의 법인 및 영조물은 연방최고관할 관청의 감독을 받는다.

第131條(舊公職者의 法律關係) 망명자와 피추방자를 포함하여 1945년 5

월 8일에 공직에 있었으나 공무원법상 또는 임금법상의 사유와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면직되어 현재까지 채용되지 아니하였거나 종전의 지위에 상응하게 채용되지 아니한 자의 법률관계는 연방법률로서 규정되어야 한다. 망명자와 피추방자를 포함하여 1945년 5월 8일에 부양받을 권리를 가지고 공무원법상 또는 자금법상 이외의 이유로 현재 전혀 부양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 연방법률이 수행될 때까지는 주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률상의 청구권은 행사될 수 없다.

第132條(廢止)

第133條(統合經濟地域 管理의 權利承繼) 연방은 종합경제지역의 관리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第134條(舊獨逸帝國 財産의 權利承繼) ①구독일제국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연방의 재산이 된다.

②전항의 재산이 본래의 목적규정에 의하면 본 기본법하에서는 연방의 행정임무가 아닌 행정임무를 위하여 주로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은 무상으로 본 기본법 시행시부터 권한있는 임무담당자에게 이관되어야 하며 또한 그 재산이 본 기본법하에서 이제부터 각 주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할 행정임무에 관한 것이면 주에 이관된다. 연방은 기타의 재산도 각 주에 이관할 수 있다.

③각 주와 시·읍·면(시·읍·면연합)이 무상으로 구독일제국에 제공한 재산은 연방이 고유재산 행정임무를 위하여 필요로 하지 아니

하는 한 다시 각주와 시·읍·면(시·읍·면연합)의 재산으로 된다.

④상세한 것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第135條(地域變更으로 인한 財産歸屬) ①1945년 5월 8일후 본 기본법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에 어떤 지역의 주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지역내에 있는 전에 소속하였던 주의 재산은 현재 소속하고 있는 주에 귀속한다.

②현존하지 아니하는 주 및 그밖의 현존하지 아니하는 공법상의 법인 및 영조물의 재산은 그것이 본래의 목적규정에 의하여 주로 행정임무를 위하여 사용되도록 정하여져 있거나,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재 주로 행정임무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부터 그 임무를 수행할 주 또는 공법상 법인 및 영조물에 이관된다.

③현존하지 아니하는 주의 토지재산은 그것이 제1항에서 의미하는 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재산이 현존하는 지역의 주에 부속물과 함께 이관된다.

④연방의 중요한 이익이나 어떠한 지역의 특별한 이익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방법률로서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과는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

⑤기타의 권리승계와 청산에 대해서는 그것이 1952년 1월 1일까지 관계된 주 또는 공법상의 법인 및 영조물간의 협정에 의하여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규제된다.

⑥구「프로이센」주의 사법상의 기업에 대한 관계는 연방에 이관된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규정하되 예외규정을 들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떠한 주나 어떠한 공법상의 법인 또는 영조물에 귀속될 재산에 관하여 그것이 기본법의 효력이 발생한 때 이미 주법률로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그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하여 처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전은 그 처분 이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第135a條(舊獨逸帝國의 債務) ①제134조 제4항 및 제135조 제5항에서 유보되어 있는 연방입법으로서 다음 각호의 채무가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1. 구독일제국의 임무 또한 구「프로이센」주 및 현존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공법상의 법인과 영조물의 채무
2. 제89조, 제90조, 제134조 및 제135조에 의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데 관계되는 연방 또는 기타의 공법상의 법인과 영조물의 채무 및 본조 제1호에서 명시된 관계(Rechtstrager)의 조치에 기인하는 이들 기관의 채무
3. 제1호의 기관이 1945년 8월 1일전에 점령국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하여 또는 전쟁으로 인한 곤궁을 제거하기 위하여 구독일제국에 부과하는 행정임무 또는 구독일국으로부터 위탁된 행정임무의 범위내에서 행한 조치로 인하여 생기는 각 주와 시·읍·면(시·읍·면연합)의 채무

②제1항은 동독과 산하법인의, 그리고 서독과 산하단체 및 공법기관

의 체무에 적용되는데, 후자는 연방주들 그리고 시·군으로 양도되는 동독재산 가치와 관련된다. 제1항은 동독과 산하법인의 대책과 직결된 체무에도 적용된다.

第136條(聯邦上院의 最初의 集會) ①연방상원은 연방하원의 최초의 집회일에 처음으로 집회한다.

②최초의 연방대통령의 선출시까지 연방대통령의 권한은 연방상원의장에 의해 행사된다. 연방하원의 해산권은 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第137條(公務員의 被選舉權) ①공무원, 공직상의 사용인, 직업군인, 기한부의 지원병 및 연방법관의 피선거권은 각 주와 시·읍·면에서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②연방공화국의 최초의 연방하원 의원, 연방상원 의원 및 연방대통령의 선거에는 기본법 제정국민회의(Der Parlamentarische Rat)에 의하여 의결될 선거법이 적용된다.

③제41조 제2항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에 귀속되는 권한은 그가 설치될 때까지 자기의 절차규칙에 따라서 판정하는 통합경제지역에 대한 독일고등재판소가 이를 대행한다.

第138條(公證人) 「바덴」, 「바이에른」, 「뷔르템베르크-바덴」 및 「뷔르템베르크-호엔촐레른」 등의 각 주에서 현존하는 공증인 제도를 개정할 때에는 이들 각 주의 정부의 동의를 요한다.

第139條(解放法規) 독일민족을 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발한 법규는 본 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받지 아니한다.

第140條(「바이마르」憲法上 條文의 效力) 1919년 8월 11일의 독일헌법중의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및 제141조의 규정은 본 기본법의 구성부분이다.⁵⁾

第141條(「부레멘」約款) 제7조 제3항 제1단은 1949년 1월 1일 현재 이와 다른 주법률을 가지고 있는 주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헌법의 규정은 본 기본법의 제1조 내지 제18조와 일치하도록 기본법을 보장하고 있는 한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第142a條 폐지

第143條(基本法 適用制限) ①다른 조건으로 인하여 기본법질서의 완전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통합조약의 제3조에 열거한 지역의 법은 늦어도 1992년 12월 31일까지 이 기본법의 규정들과 차이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며 기본법 제179조 제3항에 명시된 기본원칙들과 합치되어야 한다.

②기본법 제2장, 제8장, 제8a장, 제9장, 제10장 및 제11장의 규정은

註 5) 바이마르헌법에 관한 조문은 서독기본법 말미에 첨부함.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상관없이 이 조약에 제41조와 그 실행규정들은 동 조약의 제3조에 열거한 지역에서 재산권 침해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의 불가능을 규정하는 한 유효하다.

第144條(基本法の 承認) ①본 기본법은 이를 적용하는 독일 각주의 3분의2 이상에서 국민대표기관(Volksvertretungen)에 의하여 승인됨을 요한다.

②본 기본법을 제23조 제1항에 게시된 각 주중의 한 주에 또는 그 각 주중의 한 주의 일부분에 적용함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주 또는 당해주의 일부분은 제38조에 따라 대표자를 연방하원에 파견할 권리를 가지며 제50조에 따라 대표자를 연방상원에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第145條(基本法の 公布) ①기본법 제정 국민회의는 공개회의에서 대배를린의 대의원의 참가를 얻어 본 기본법의 채택을 확정하며 이를 문서화하여 공포한다.

②본 기본법은 공포일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③본 기본법은 연방법률공보에 공시되어야 한다.

第146條(基本法の 效力喪失) 독일의 자유와 통합이 이루어진 후 전독일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이 기본법은, 독일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의결된 새 헌법이 효력을 발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라인 강변의 본, 1949년 5월 23일

기본법 제정국민회의 의장

아데나워(Adenauer) 박사

제1부의장 쉐펠더(Schonfelder)

제2부의장 셰퍼(Schafer) 박사

바이마르 헌법*

第136條(信仰의 自由) ①시민 및 공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신앙의 자유를 행사하므로 인하여 조건이 붙여지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②시민 및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고 또한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종교상의 신앙과 관계가 없다.

③누구든지 자기의 종교상의 신앙을 고백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특정의 종교단체에 소속함으로써 특별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경우 또는 법률로써 정한 통계상의 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청은 국민에게 종교단체에의 소속관계를 물을 수 있다.

④누구든지 교회의 예배나 의식 또는 종교상의 선서 방식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第137條(宗教團體) ①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②종교단체를 설립하는 자유는 보장된다. 국내에 있어서의 종교단체의 결성은 여하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 ③모든 종교단체는 일반에게 적용되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독자적으로 그의 사무를 규율하고 관리한다. 종교단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그 임원을 임명한다.
- ④종교단체는 민법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 ⑤종래 공법인이었던 종교단체는 그대로 공법상의 법인이다. 그밖의 종교단체는 그 조직 및 단체원의 수에 비추어 영속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그들의 신청으로 공법상의 단체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공법상의 종교단체가 연합체를 조직할 경우에는 그 연합체도 또한 공법상의 법인이 된다.
- ⑥공법상의 법인인 종교단체는 시민의 징세부에 의거하여 주법의 규정에 따라서 조세를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
- ⑦한 세계관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결사는 종교단체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 ⑧본 조의 규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밖의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 법률로 정한다.

第138條(宗教團體에 대한 納付) ①법률, 조약 또는 특별한 법률원인에 의거한 국가의 종교단체에 대한 급부의무는 주입법으로 해제된다. 이에 대한 원칙은 연방(Reich)이 확정한다.

②종교단체와 종교적 결사, 예배, 교육 및 자선사업을 할 목적에만 사용되는 시설, 재단 및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과 기타의 권리는 보장된다.

第139條(國定公休日) 일요일과 국경일은 휴식 및 정신향상의 날로서 법률상으로 보호된다.

第141條(公共機關內에서의 宗教行事) 군대, 병원, 교도소 또는 그밖의 공공시설 내에서 예배 및 정신수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종교단체는 종교적인 행사를 행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이 때에는 여하한 강제수단도 사용될 수 없다.

예멘 統一國家憲法 全文

합동헌법위원회는 본 초안을 기초, 승인하여 A.D. 1981년 12월 30일인 헤지라력 1402년 3월 4일(수요일)에 이에 서명했다.

제 1부 國家의 基調

제 1장 政治基調

제 1조 예멘공화국은 독립주권국이다. 예멘공화국은 분리될 수 없는 단일국가이며 국가 어느 일부의 타국에의 양여는 용인되지 않는다. 예멘국민은 아랍인 및 이슬람세계의 일부이다.

제 2조 이슬람이 국교(國教)이며 아랍어가 관용어(官用語)이다.

제 3조 이슬람 율법(샤리아)이 모든 입법의 주 근원이 된다.

제 4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은 국민투표와 총선을 통해 주권을 직접 행사한다. 국민은 또한 입법 행정 및 사법기관과 선거로 구성된 지방기관을 통해 주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한다.

제 5조 국가는 국제연합헌장, 국제인권선언, 아랍연맹헌장 및 일반 국제법에서 인정된 원칙들을 준수할 것을 선언한다.

제 2장 經濟基調

제 6조 국가경제는 아래의 원칙들에 따른다.

- (i) 사회 및 생산관계에 관한 이슬람 사회정의
- (ii) 기본생산시설을 소유할 수 있는 발전적인 공공부문의 설립
- (iii) 공공의 이익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제외하고는 침해받지 않는 사유권(私有權)의 보호
- (iv) 아랍 이슬람전통과 예멘사회의 환경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강력하고 자

립적인 국가경제의 건설 및 사회주의적인 관계의 설정을 보장하여 포괄적인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계와 잠재성의 지도

제 7조 지하 또는 지상, 영해, 대륙붕 혹은 전관경제지역의 모든 파생물을 포함하는 자연자원 및 동력자원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며 국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이들의 개발을 보장한다.

제 8조 국가의 경제정책은 공공의 이익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부개발계획의 테두리내에서 일반 이 자연자원의 개발과 투자 그리고 모든 경제 및 사회분야의 공공, 민간 및 혼합부문에서 능력과 기회의 확대와 개발에 임하는 일반법인의 설립을 장려하는 방향에서 과학적인 기획에 의거된다.

제 9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지도하며 대외무역의 효과성을 발전 증강시키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국가는 일반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생활필수품을 용이하게 취득가능토록 하기 위해 국내 상행위(商行爲)를 감독한다.

제10조 법으로 국가 공용화폐, 재정 및 금융체제를 조정하며 도량형을 정한다.

제11조 세금과 공공요금을 부과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과 사회정의가 고려된다.

제12조 세금의 부과, 조정 혹은 철폐는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어떠한 자도 법률에 명시됨이 없이 납세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없으며 또한 어떠한 자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타의 세금, 부과금 또는 공공요금을 납부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제13조 국가는 협동사업과 저축을 장려한다. 국가는 모든 종류의 협동조합의 결성과 협동활동을 보장, 보호 및 장려한다.

제14조 징세의 기본원칙과 세금의 사용절차는 법률로 명시된다.

제15조 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행정당국은 차관(借款)계약을 체결하거나 차관을 보증하거나 공공자금으로부터의 지불을 요하는 사업에 임할 수 없다.

제16조 국가가 지불할 수 있는 급료, 연금, 보상, 지원금 및 상여금 등의 액수는 법률로서 정한다.

제17조 자연자원 및 공공사업개발권의 부여는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국

가의 동산 및 부동산 처분방법 및 이의 처분에 관한 원칙과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지방단체에 개발권을 부여하고 국가소유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하는 방법도 또한 법률로 규정된다.

제 3장 社會 및 文化基調

제18조 국가는 헌법의 정신과 목적에 부합되는 과학연구, 문학, 예술 및 문화적인 제작의 자유를 보장한다. 국가는 또한 이러한 제작에 필요한 수단을 취득가능토록 한다.

국가는 과학과 예술의 발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제공하며 예술적 창의성과 더불어 과학적 및 예술적 발명을 장려하고 과학과 예술작품을 보호한다.

제19조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이의 실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제20조 공직은 공무원들에게 임무임과 동시에 명예이다.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공공의 이익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직의 조건과 공무원의 권리와 임무는 법률로 규정된다.

제21조 근로는 권리이자 명예이며 사회발전을 위한 필요물이다. 국민 각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종사할 권리는 갖는다. 국민은 누구나 법률에 의하거나 공무수행 또는 공정한 임금이 보장되는 이외에는 어떠한 노역에도 강제되지 않는다.

제 4장 國防基調

제22조 국가는 군대를 설치하는 기관이 된다. 군대는 전체민족에게 귀속되며 그의 임무는 공화국과 그의 영토 및 안전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데에 있다. 여타의 조직체나 단체는 군대나 준군사조직을 설치할 수 없다.

제23조 총동원은 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총동원은 의회의 승인이 있을 후 대통령평의회 의장에 의해 선포된다.

제24조 국방위원회를 설치하며 대통령평의회 의장이 이를 주재한다. 국방위원회는 공화국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管掌)하며 그 구성, 권한 및 기타기능은 법률로 정한다.

제25조 경찰은 공공에 봉사하는 관헌이다. 경찰은 국민의 안녕과 안전을 보장하며 법률, 명령, 일반 보안 및 미풍양속을 보호한다. 경찰은 사법당국의 산하에 있음을 법률로 규정하며 경찰은 사법당국의 명령을 공정하게 집행한다. 경찰은 또한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법규에 의해 부과된 임무를 수행한다.

제 2 부 國民의 基本權과 義務

제26조 국민은 누구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생활에 기여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사상과 언어, 기록 혹은 사진을 통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제27조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국민은 인종, 피부색, 출생지, 언어, 직업, 사회적 신분 혹은 종교적인 신앙등을 이유로 차별받음이 없이 권리와 공적인 의무에서 평등하다.

제28조 법률로 예멘국적을 규정하며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멘인 어느 누구의 국적을 부인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제29조 예멘인을 외국당국에 인도할 수 없다.

제30조 정치망명자의 인도는 금지된다.

제31조 형사적인 책임은 개인사항이다.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범죄나 처벌이 존재할 수 없다. 관계법의 공포이전에 있는 범죄는 처벌될 수 없으며 비행(非行)혐의로 고발된 자는 최종적인 사법언도에 의해 유죄로 확정될 시까지는 무죄이다.

제32조 (가)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며 그들의 위신과 안전을 보호한다. 관할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개인자유는 박탈은 법률로 정한다.

(나) 현행법이 아닌 한 또한 수사 혹은 공공안녕의 목적으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사나 검찰청이 발급한 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나 체포, 수색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또한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를 막론하고 감시 또는 조사할 수 없다. 자유가 제약된 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품위는 보호된다. 육체적 및 정신적인 고문은 금지된다. 수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할 수 없다. 자유가 제약된 자는 변호사의 면전이 아니고서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아도 될 권리를 갖는다. 형무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장소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투옥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비인간적인 육체적 처벌이나 체포나 구금 또는 투옥시의 비인간적인 처우는 금지된다.

(다) 범죄혐의로 잠정적으로 체포된 자는 피체(被逮)후 최장 24시간내에 법정에 제기되어야 한다. 담당판사는 피체인에게 체포이유를 통고하고 이를 심문하며 또한 그가 자신을 변호하거나 이의(異義)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하고 구금의 계속이나 석방을 위한 합당한 명령을 즉각 행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정명령 없이는 상기 시간을 초과해서 구금할 수 없다.

(라) 어떠한 이유로 체포할시 피체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즉각 체포사실을 통고하여야 하며 구금을 계속할 시도 또한 같다. 만약 피체인이 그러한 사람을 지정하지 못할 시는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나 그에게 관심있는 사람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마) 본 조항의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한 벌칙과 그러한 위반의 결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법으로 정한다.

제33조 처벌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난폭한 비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며 그러한 비인간적인 방법을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제34조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호소할 수 있으며 정부당국에 고충, 비난 및 건의를 직접 간접으로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제35조 가정과 예배장소 및 교육장은 신성하다.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감시 또는

수색되지 않는다.

제36조 우편, 전화 및 전신의 자유와 비밀이 보장된다. 법률이나 사법적인 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들을 감시 또는 수색할 수 없으며, 이들의 비밀을 노출시키거나 이들을 지연(遲延) 또는 압수할 수 없다.

제37조 교육은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각자의 권리이다. 국가는 여러 유형의 학교 및 문화교육기관을 육성한다. 국가는 젊은세대를 특별히 보호하여 이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들에게 종교적, 정신적 및 육체적인 교육수단을 제공하며 모든 분야에서 그들의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한다.

제38조 국민 누구나 예멘영토내의 1개 장소에서 타장소로 이주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 국민의 안녕에 관계되는 위급시에도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러한 자유는 제약되지 않는다. 공화국에의 출입국은 법에 의해 규제된다. 예멘국민은 누구나 예멘영토로부터 추방되거나 귀국이 금지되지 않는다.

제39조 본 헌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한 공화국의 모든 국민은 정치적으로, 직업적으로 또는 노동조합의 형태로 조직체를 결성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본 헌법의 목적을 증진하는 방향에서 과학, 문화 및 사회적인 결사 그리고 전국적인 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그러한 권리를 보장하며 국민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국가는 정치, 노동조합, 문화, 과학 및 사회적인 결사에 대한 전적인 자유를 보장한다.

제 3부 國家機關의 組織

제 1장 議 會

제40조 의회는 국가의 입법기관이다. 의회는 법률과 국가의 일반정책, 일반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일반예산 및 최종회계를 심의 결정한다. 의회는 또한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당국이 취한 조치를 지휘, 통제한다.

제41조 의회는 자유, 직접, 평등 및 비밀투표로 선출된 인원으로 구성된다. 공화국은 5퍼센트의 가감이 허용되는 같은 수의 인구를 갖는 선거구로 분할된다. 1개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이 선출된다.

제42조 국민누구에게나 투표권과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가) 선거인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i) 예멘국민이어야 한다.

(ii) 연령이 18세 이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의회선거 입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i) 예멘국민이어야 한다.

(ii) 연령이 25세 이하여서는 아니된다.

(iii) 학식이 있어야 한다.

(iv) 좋은 성품과 품행을 지녀야 한다.

제43조 의회의 임기는 첫회합의 일자로부터 4년이다. 의회의 의장은 현의회 임기만료 적어도 60일전에 새 의회를 선출하도록 선거민에게 요청한다. 만약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러한 선거가 불가능할시는 현존 의회가 그러한 사유가 제거되어 새로운 의회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유효하며 합헌적인 기능을 행사한다.

제44조 의회는 싸나에 위치한다. 의회의 국제규정으로 의회가 수도 이외에서 회동(會同)하는 경우를 명시한다.

제45조 의회는 그의 업무와 위원회의 절차 및 그의 합헌적인 권한의 수행에 관한 원칙을 명시하는 내부 규정을 제정한다. 이러한 규정에는 헌법의 규정과 그 수정 규정에 반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과 조정문안의 공시(公示)는 법에 의거된다.

제46조 의회만이 의원의 의원자격 정당성을 결정하는 기관이 되며 또한 의원자격 정당성에 대한 이의(異義)신청에 대한 절차, 조사절차 및 그러한 이의 신청이 의회에 제기된 60일 이내에 의회의원들에게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한다. 의회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자격은 상실되지

않는다.

제47조 의회만이 의회의 구역내에서 질서와 안전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의회의 의장이 그의 휘하에 경비원을 두으로써 이의 책임을 진다. 의장의 요청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여타 무장인원도 의회구역에 진입하거나 체류할 수 없다.

제48조 의회는 국제, 정치 및 경제조약과 모든 형태의 일반적인 협약 특히 국방, 동맹, 휴전, 평화, 국경선 등에 관한 협정 혹은 재정적인 부담을 수반하거나 이행에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협정등을 비준한다.

제49조 정부의 연간예산의 최종결산이 회계년도 종료후 9개월 이내에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표결은 항목별로 행하여지며 이의 승인은 법률에 따른다. 또한 결산을 감사한 관계기관의 연례보고서가 감사 논평과 더불어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의회는 동 관계기관이 여타 서류나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50조 회계연도개시 적어도 2개월전에 일반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예산안에 대한 표결은 항목별로 행하여지며 또한 법률의 형식으로 공포된다. 의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예산안을 조정할 수 없으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정한 지출을 위해 수입금을 책정할 수 없다. 만약 새로운 예산법이 회계년도 개시 이전에 공고되지 못할 시는 새 예산이 승인될 때까지 전년도의 예산이 적용된다. 예산제도, 항목의 명칭 및 회계연도는 법률로 정한다.

제51조 일반예산의 1개 항목에서 다른 항목으로의 전용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책정되지 않은 지출과 초과수입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 공공기관과 법인체의 예산, 이들의 회계 및 독립예산, 최종결산은 법으로 명시된다. 이들은 일반회계 및 최종결산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다.

제53조 의회는 대통령평의회 의장의 요청으로 선거결과가 공표된 2주일 이내에 첫 회의를 갖는다. 만약 그러한 요청이 없을 의회는 2주일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짜의 다음날 아침에 회동한다.

제54조 첫 회의에서 의회는 의원들 중에서 위원장과 3명의 위원을 선출하여 의장단

위원회를 구성한다. 의장단 위원회의 선출시 의회의 최고령 의원이 회의를 주재한다. 의장단 위원회의 선출절차와 동 위원회의 기능은 “인턴·스케줄”로 명시된다.

제55조 회의의 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석인 의석을 제외하고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표결은 헌법과 내부규정이 특별한 다수결을 규정하지 않는 한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찬표(贊票)로 정하여 진다. 만약 찬반 동수일 때에는 당해 안건은 동일회기에서는 부결(否決)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그러한 안건이 다음 회기에 제기될 시는 이는 우선적으로 상정(上程)된다.

제56조 의회의 회의는 공개된다. 그러나 의회 의장이나 대통령평의회 의장 또는 20명 이상의 의원의 요청이 있을 시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 이때 의회는 당해 안건의 토의가 공개리에 또는 비공개리에 진행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제57조 의회는 내부규정에 의거 개회토록 되어 있는 일자에 개회하며 회기는 일반 연간예산안이 승인되기에 앞서 종료될 수 없다.

제58조 의회의 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며 어떠한 계약이나 조건으로도 대표권은 제약될 수 없다.

제59조 의회의 의원은 의원직을 행사하기에 앞서 의회의 공개회의에서 선서를 행한다.

제60조 의장과 의회 의장단 위원회 위원은 법이 정하는 공정한 보상을 받는다. 국무총리와 부총리 그리고 장관들은 의회 의원직을 겸임할시 그러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제61조 만약 의회의 임기는 끝나기에 앞서 1년이상 의석의 공석이 발생할 시 의회가 그러한 공석을 확인하고 이를 발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가 선거민에 의해 선출된다. 후임자의 의원직은 의회의 여타 의원과 동일하다.

제62조 의회의 의원은 행정부나 사법부의 업무에 간섭할 수 없다.

제63조 의회의 의원은 의회 또는 의회 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사항 또는 공개 혹은 비공개 회의에서 행한 표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은

욕설과 모욕을 주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64조 현행법으로 체포되어 의회에 즉각 통고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승인이 없이 의회의원에 대한 수사, 조사, 체포, 투옥 혹은 처벌등의 절차가 행하여질 수 없다. 의회는 그러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한다. 의회가 회기중이 아닐 시는 대통령평의회로부터 그러한 승인을 득하며 의회는 그러한 절차가 취하여진후 첫 회의에서 그에 대해 통고 받는다.

제65조 의회 의원은 의원직 사직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의회는 이를 수리한다.

제66조 의회 의원의 의원직은 헌법이 규정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화되지 않는다.

제67조 의회 의원과 정부 그리고 노동조합과 공공기관은 그들의 의회에 진출한 대표자를 통해 법안 또는 개정안을 제의할 수 있다. 의원이 제의하는 모든 의안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회가 이를 심의하는 것의 적절성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적절하다고 사려되면 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정부가 아닌 의원이 제안했고 의회가 부결한 의안은 같은 회기내에 다시 제안될 수 없다.

제68조 의회는 공공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정부에 건의할 권리를 갖는다. 만약 정부가 그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시는 의회에 대해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제69조 의원 총수의 최소한 20퍼센트의 동의가 있게 되면 정부정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발의권(發議權)이 성립된다.

제70조 최소한 의원 10명의 서명이 있을시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또한 상임위원회의 하나로 하여금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정부부처, 기관, 일반 회사 또는 지방기관이 취한 조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행하기 위해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거를 수집하고 누구를 박문하고 증언을 요구한다. 모든 행정 및 특별당국은 위원회의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로 하는 문서와 진술서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 의회는 법에 의거 일반 경제 및 사회개발 계획을 승인하며 이러한 계획의 작성과 이의 의회에의 제출은 법으로 명시된다.

제72조 국무총리는 국무원이 개원된 일자로부터 25일 이내에 대다수 의원의 신임을 획득할 정부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의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면 임시회의로 개최한다. 의원이나 의회는 정부계획의 설명에 언급할 수 있다. 정부가 대다수 의원의 찬표를 득하지 못할 시는 신임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73조 국무원은 국무위원 개별적으로 또는 총체적으로 책임을 진다. 의회 의원은 누구나 국무총리 혹은 부총리에게 그들이 관심사에 대해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청을 받을 시는 답변을 해야 한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같은 회기내에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 없다.

제74조 의회는 정부에 대한 신임을 철회할 권리를 갖는다. 국무총리 또는 부총리에 대한 설명요구가 없이 신임을 철회할 수는 없다. 그러한 설명요구는 의원총수의 3분의 1의 서명으로 유효하며 의회는 그러한 요청이 제기된 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는 그러한 요청에 대한 결의를 발표할 수 없다. 정부에 대한 신임의 철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75조 의회 의원은 누구나 그들의 소관사항에 대해 국무총리나 부총리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회가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사항이나 정부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설명요청이 제기된 7일 이후에 설명이 행하여 진다.

제76조 국무총리나 부총리 또는 장관이나 차관이 요청할 시는 하시라도 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때 이들은 그들을 보좌하는 상급직원들을 대동(帶同)할 수 있다. 이러한 직원들은 의원직을 겸임하지 않는한 표결권을 갖지 않는다. 의회는 내각이나 장관이 의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는 장관은 참석하여야 한다.

제77조 의회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의 의원이 참석하였을 때에 한한다. 의회의 결의안은 헌법이 따로이 특정한 과반수의 표결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법률안에 대한 표결은 항목별로 행한다. 만약 찬반

투표수가 동수일 때에는 토의안건은 부결(否決)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78조 대통령평의회는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시 해산사유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는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의회 해산 결의에는 선거민에의 공고와 의회해산 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새 의회를 구성할 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만약 해산결의가 그러한 공고를 포함하지 않거나 선거가 실시되지 않으면 해산결의는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며 의회는 헌법의 권한으로 회동한다. 만약 선거가 실시되면 새 의회는 선거후 10일 이내에 개원하며 새 의회가 개원토록 공고되지 않으면 상기 10일의 기간이 끝나는 일자에 개원한다. 선거를 실시하기에 앞서 내각은 사퇴하며 새 의회가 개원할 때까지 임시정부가 구성된다. 만약 의회가 해산되면 같은 이유로 새로 구성된 의회를 다시 해산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새 의회를 그 첫 회기중에 해산할 수 없다.

제79조 대통령평의회는 의회가 통과한 법안을 재심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법안은 대통령평의회에 제출된 30일 이내에 의회에 회송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평의회가 규정된 기간내에 법안을 회송하지 않거나 대다수 찬성으로 재차 통과될 시는 그러한 법안은 입법화된 것으로 간주하며 또한 공포된다.

제80조 법률은 공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되며 게재된 날로부터 30일 되는 일자에 발효된다. 이 기간은 특별부칙으로 연장될 수 있다.

제81조 법률은 상기 해당일에 발효되며 소급발효는 있을 수 없다. 단 세금과 형벌 이외의 사항에 있어서는 법은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별도의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제 2 장 大統領評議會

제82조 에멘공화국의 대통령권한은 의회가 선출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통령평의회에 의해 행사된다.

제83조 대통령평의회 위원후보의 지명은 의회 의원 4분의 1의 추천으로 된다. 후보는 첫 표결에서 의원 3분의 2의 찬표를 얻을시 위원이 된다. 만약 3분의 2의 찬

표를 득하지 못할 시는 의원과반수의 찬표로 당선된다. 표결은 비밀투표이어야 한다. 선출과 후보지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회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제84조 선출된 후 대통령평의회는 위원중에서 평의회 의장을 선출한다.

제85조 대통령평의회 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가) 연령이 35세 이하여서는 아니되며
- (나) 예멘인의 부모를 갖는 자이어야 하며
- (다) 정치 및 시민권을 보유해야 하며
- (라) 예멘인이 아닌 부인과 결혼해서는 아니 된다.

제86조 대통령평의회의 의장과 위원은 취임에 앞서 선서를 행한다.

제87조 대통령평의회의 임기는 선서를 행한 일자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88조 만약 의회의 임기가 대통령평의회의 임기와 같은 날에 만료될 시는 새 의회가 선출되고 새 의회가 개원한 날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평의회가 선출되어 첫 모임을 가질 때까지는 대통령평의회는 계속 존속된다.

제89조 새 대통령평의회의 선출을 위한 절차는 대통령평의회 임기만료 90일전부터 개시된다. 새평의회의 선출은 적어도 만료일 일주일전에 종결되어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 해서 새 평의회가 선출되기 이전에 임기가 종료될 시는 평의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계속 존속된다. 이러한 연장기간은 전시(戰時), 천재지변 또는 선출을 불가능하게 하는 여타 상황을 제외하고 다시 연장되지 않는다.

제90조 대통령평의회의 의장과 위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시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상기 사직서를 수리하는 의회의 의결은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만약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시는 대통령평의회는 3개월 이내에 수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의회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1조 만약 대통령평의회의 의장과 위원들이 공석이 될 시는 의원의 의장단 위원회가 잠정적으로 대통령평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만약 의회가 해산되었으면 정부가 의장단 위원회를 대신해서 잠정적으로 대통령평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대

통령평의회의 선출은 새 의회가 첫 회의를 갖는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92조 대통령평의회 위원들의 봉급은 법으로 정하며 평의회 위원은 봉급이외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제93조 대통령평의회의 의장과 위원은 간접적으로라도 자유직업 또는 상업, 금융, 제조업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경매를 통해 국가의 재산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없고 자신의 재산을 국가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도 없으며 국가와 물물교환을 행할 수 없다.

제94조 대통령평의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국가 내외에서의 공화국의 대표
2. 특정시기에 의회 의원 선거를 선거민에 요청
3. 국민투표의 요청
4. 조각(組閣)을 위해 특정인사를 지명하고 각료 명단을 포함하는 공화국 의결사항을 발표
5. 정부와 협조하여 국가의 일반정책을 수립하고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수행을 감독
6. 필요할 시 국무원과 대통령평의회의 합동회의 요청
7.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위원회 위원을 지명
8. 의회와 대통령평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공포간행하고 이에 따른 시행령을 공포
9.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관리와 준장교의 임명 또는 해임
10.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준계급을 설정
11. 법이 규정한 상훈을 수여하고 외국으로부터 그러한 상훈과 여타 명예의 수취(受取)를 승인
12. 의회가 승인한 결의문과 합의문의 공포
13. 국무원이 승인한 후 의회의 별도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협정의 비준

14. 법에 따라 외교사절단의 구성 및 대사의 임명 또는 소환
15. 외국사절과 외국기관 대표들의 인준
16. 정치적 망명권의 부여
17. 법에 의거 비상사태와 총동원령의 선포
18. 헌법과 법이 규정한 기타 기능의 수행

제95조 의회의 휴회중이나 해산중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할 시 대통령평의회가 대응결정을 내리며 이러한 결정은 헌법이나 일반예산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률의 효력을 지닌다. 그러한 결정은 그후에 열리는 첫 의회 회의에 상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의회는 이를 토의하여 적절한 결의를 행한다. 이를 부결할 시 그러한 결정은 부결된 일자 또는 이로 하여금 발생하는 결과의 해결을 위해 지정한 일자부로 법률의 효력을 상실한다.

제96조 대통령평의회는 관계장관의 제의와 국무원의 승인으로 법률의 시행과 정부부처의 조직에 필요한 의결사항 및 계획을 법이 여타기관에 의한 이의 발표를 규정하지 않을 시 이를 발표한다. 법률로 이의 시행에 필요한 계획과 결의사항을 발표할 기관이 지정될 수 있다.

제97조 대통령평의회는 법이 규정하는 형식으로된 공화국 결의문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비상사태 선포 7일 이내에 의회가 소집되어 동 결의문을 상정한다. 만약 의회가 해산되었을 시는 구 의회가 헌법의 규정에 의거 소집된다. 의회가 소집되지 않고 비상사태선포가 상정되지 못할 시는 비상사태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비상사태는 전쟁의 발발이나 내란 또는 천재지변의 발생 이외에는 선포될 수 없다. 비상사태는 제한된 기간동안에만 선포되며 의회의 승인이 없이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없다.

제98조 대통령평의회 의장은 평의회업무의 행정을 책임지며 의결사항에 서명한다.

제99조 대통령평의회 의장은 대외 관계에서 공화국을 대표한다.

제100조 대통령평의회 의장은 국무원이 수행토록 되어 있는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국무총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1조 반역, 헌법의 위반 또는 국가의 독립과 주권에 관계되는 사항을 사유로 한 대통령평의회 의장과 위원에 대한 탄핵은 의원 3분의 2의 고발로 이루어진다. 탄핵재판의 절차는 법으로 정한다. 만약 고발이 대통령평의회 위원 진원에 대한 것 일 시는 의회의 의장단위원회가 법원의 판결이 있을 시까지 잠정적으로 대통령평 의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탄핵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은 합헌적인 방향에서 차기 의회의 첫 정기회의에서 발표된다. 만약 평의회 위원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여타 의 벌칙에 영향을 끼침이 없이 평의회에서 해임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상기 범죄 는 시간의 경과로 제한되지 않는다.

제 3 장 國 務 院

제102조 국무원은 에벤공화국의 정부이다. 국무원은 국가의 최고 집행 및 행정기관 이며 국가에 소속하는 모든 부서, 기관 및 행정기관을 예외없이 관할한다.

제103조 정부는 국무총리와 부총리 및 장관들을 포함한다. 이들은 모두 국무원을 구성한다. 국무원이 임무와 조직 그리고 국무총리와 부총리 및 장관의 임무 그리 고 정부 부서의 임무와 조직은 법으로 정한다.

제104조 국무총리는 대통령평의회와의 협의하에 선출된다. 국무총리는 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신임투표를 요청하며 이러한 요청은 의회에 제출된다.

제105조 국무총리와 여타 장관들은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해 공동으로 대통령평 의회와 의회에 책임을 진다.

제106조 국무총리와 내각의 국무위원은 그들의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대통령평 의 회 의장의 면전에서 선서를 행하여야 한다.

제107조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 및 차관의 보수는 법으로 정한다.

제108조 국무총리나 장관들은 그들의 임기중에 다른 직장을 갖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자유직업 또는 상업, 금융 혹은 기업활동에 임할 수 없다. 이들은 또한 정부나 기 타 공공기관에 의한 사업계약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장관직과 회사의 중역직을 동시에 지닐 수 없다. 그들의 임기중에는 또한 공매를 통한 것이라도 국가재산을

구입하거나 임대 또는 물물교환할 수 없으며 그들 자신의 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하거나 물물교환할 수 없다.

제109조 국무원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국방분야에서 국가의 일반정책과 의결사항을 수행하며 특히 아래의 사항을 행사한다.

- (가) 국내외정책의 지침 설정과 관련한 대통령평의회와 협조
- (나) 국가경제정책과 연간예산의 초안작성, 이의 시행을 위한 계획 및 최종 정부 회계서의 작성
- (다) 임무의 소관에 따라 의회나 대통령평의회에 조약인 협정을 제출하기에 앞서 이의 승인
- (라) 국가의 내외안보를 보장할 조치를 취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
- (마) 법에 의거 정부 부서, 행정기관, 공사 및 공공기관의 활동의 지도·조정 및 통제
- (바) 법에 의거 상급직원의 임명 및 해임, 정부기관의 기술간부를 배양할 정책의 시행 및 경제계획의 범위내에서 국가의 수요에 필요한 인력의 훈련
- (사) 법률시행의 후속조치 및 공공기금의 보호
- (아) 금융체제, 신용시설 및 보험제도의 조직과 행정의 감독
- (자) 국가의 일반시책과 헌법규정의 범위내에서의 차관계약의 체결 및 공여

제110조 국무총리는 국무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국무총리는 국가의 일반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국무원을 대표한다. 국무총리는 내각의 의결사항과 국가의 일반정책을 감독하고 통일되고 협조적인 방법으로 이를 시행토록 노력한다. 국무총리는 장관들이 자기 소관부처에 관계되는 사항, 그들이 수행하는 임무 및 수행토록 요청된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장관들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1조 대통령평의회는 임기중 혹은 관직을 이용하여 범할지도 모를 범죄로 해서 국무총리, 부총리 및 장관들을 정직(停職)케하고 수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의회는 임기중 혹은 관직을 이용하여 범할지도 모를 범죄로해서 국무총리, 부총리 및 장관들을 정직케 하고 수사하도록 대통령평의회에 건의할 수 있다 의회는 의원 3

분의 2의 찬성으로 그러한 건의를 할 수 있다. 수사중 고발 등의 조치없이 이들을 해임할 수 없다. 재판과 재판절차, 보장사항 및 처벌은 법이 정하는 바에 다르다. 이것은 차관들에게도 적용된다.

제112조 내각의 사퇴나 해임 그리고 내각의 신임이 철회되었을시 내각은 새 내각이 성립될 때까지는 직원이 임명 및 해임을 제외한 일상적인 정부 업무를 계속하도록 요청된다.

제113조 국무총리는 특정 장관과의 협조가 어렵게 되었다고 판단할시 이 사실을 내각에 제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114조 만약 국무총리가 책임을 질 수 없게 되었거나 의회가 정부에 대한 신임을 철회할시 그는 대통령평의회 의장에게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5조 만약 국무원 위원의 대다수가 사표를 제출할 시 국무총리는 정부의 사퇴서를 제출한다.

제116조 각 장관은 그의 부처를 책임지며, 부처의 운영과 공화국 전 지역에 있는 지부(支部)를 지도하고 그의 부처에서 정부의 일반정책을 시행한다. 장관이 법의 시행령을 발표하는 경우는 법으로 규정된다.

제 4 장 地方機關

제117조 예멘공화국의 영토는 행정단위로 세분되며 행정단위는 법률적인 특성을 지닌다. 행정단위의 수와 구획 및 경계선은 법으로 규정된다. 행정단위의 장(長) 및 행정단위내의 부서의 장(長)의 권한과 임무도 법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행정단위와 지방기관은 국가의 부분이 된다.

지방장관은 국무원에 대해 책임진다. 국무원의 결의는 지방장관에게 구속력을 지니며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제118조 행정단위는 지방의회를 선출한다. 지방의회의 임무, 권한, 권리 및 기능과 선출방법, 그리고 개발계획의 작성과 시행에 있어서의 지방의회의 기능, 재정 및 역할은 법으로 정한다.

제119조 지방기관과 의회의 통제는 법으로 정한다.

제 4 부 司法部 및 檢察

제 1 장 司法部

제120조 사법부는 독립기관이다. 판사는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법률 이외에는 어떠한 기관의 예하에도 있지 않는다. 어떠한 기관도 고소사건이나 사법에 관한 어떠한 것에도 간섭할 수 없다. 그러한 간섭은 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로 취급되며 그러한 죄는 시한에 의해 면소(免訴)되지 않는다.

제121조 판사들은 하나의 통합된 단위가 된다. 사법기관과 그의 지위는 법으로 정한다. 사법기관의 관할권, 판사가 수행해야 할 조건, 판사의 임명조건 및 절차, 판사의 전근 및 승진 그리고 판사에 관한 기타 특별한 보장등은 법으로 정한다. 특별법정의 설치는 엄격히 금지된다.

제 2 장 檢 察

제122조 판사와 검찰은 법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파면되지 않는다. 징계조치의 일환이 아닌 판사나 검사는 본인이 승락하고 관계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직에서 비사법직으로 진출될 수 없다. 판검사의 징계재판과 변호사 업무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한다.

제123조 사법부에는 법이 정하는 최고위원회를 둔다. 이의 권한은 법으로 정하며 최고위원회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사의 임명, 승진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24조 공화국에는 대법원을 둔다. 대법원의 설치, 권한 및 업무절차는 법으로 정한다. 대법원은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사한다.

- (i) 법률, 계획, 규정 및 의결사항등의 합헌성여부에 대한 통제
- (ii) 사법기관과의 관할권에 대한 분쟁의 조정

(iii) 선거소송의 판결

(iv) 민사·형사 및 대인(對人)소송의 최종 판결의 불복에 대한 판정

(v) 행정 및 징계소송의 최종판결의 불복에 대한 판정

제125조 일반질서와 도덕·윤리를 비공개리에 증언을 청취할 것을 결정하지 않는 한 법정공판은 공개리에 행하여져야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도는 공개공판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제 5 부 共和國 國章, 國旗 및 國歌

제126조 공화국 국장, 훈장 및 국가는 법으로 정한다.

제127조 국기는 위로부터 적색, 백색, 흑색으로 한다.

제128조 싸나가 에멘공화국의 수도가 된다.

제 6 부 憲法의 效力, 改憲의 原則과 一般 및 經過措置

제129조 본 헌법은 국민투표를 통해 에멘의 2개지역의 국민들이 이를 승인했음을 발표한 즉시 발효된다.

제130조 대통령평의회와 의회는 공히 헌법조항의 개정을 발의(發議)할 권리를 갖는다. 개헌발의에는 개정조항과 개정이유를 명기한다. 만약 개헌발의가 의회에서 제기될 시 그러한 발의는 의회 의원 적어도 3분의 1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의회는 개헌원칙을 토의하여 대다수의 찬성으로 이에 대한 의결을 발표한다. 만약 개헌원칙이 거부될시 부결된 일자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같은 조항의 개정원칙을 심의할 수 없다. 만약 의회가 개헌원칙을 승인하면 그러한 승인이 있는 2개월후에 이를 심의한다. 의원 4분의 3이 개정을 찬성할 시 그러한 찬성을 발표했을 때부터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1조 본 헌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를 유효일로하여 임시평의회를 구성하며

이 평의회는 예멘이 2개지역에 존재하는 자문위원회의 의장과 위원 및 최고인민회의 의장단위원회의 의장과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평의회는 구성일로부터 본 헌법에 따른 대통령평의회를 의회가 선출할 시까지 본 헌법이 규정하는 대통령평의회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제132조 본 헌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에 예멘의 2개지역에 있는 현존 정부는 사퇴한 것으로 간주되며 2개지역의 현존 입법의회도 같은 날짜에 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본 헌법에 따라 대통령평의회가 선출될 시까지 임시 대통령평의회 정부를 구성하며 이 정부는 본 헌법이 정부에 부여하는 권한을 지닌다.

제133조 임시대통령평의회는 임시정부가 본 헌법의 유효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의회선거를 실시토록 준비케 한다.

제134조 예멘의 2개 지역에서 유효중인 모든 법률과 의결사항은 본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와 권리에 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헌법이 규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정될 때까지 이들이 유효했던 예멘의 지역에서 계속 유효하다. 이러한 법규는 변천기간중 대통령평의회 의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35조 대통령평의회 의장 및 위원, 의회 의원, 국무총리 및 정부 장관들이 행할 취임선서는 다음과 같다.

“본인은 성실하게 체제를 보호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민의 이익과 자유를 전적으로 보호하고 국가의 단결, 독립 및 영토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전지전능한 신앞에 서약한다.”

제136조 임시대통령평의회는 선거법을 공포한다. 이 법은 선거구의 수와 선거구의 인구를 명시하고 각 선거구의 경계선을 책정한다. 이 법은 또한 의회가 첫 회의에서 헌법에 의거 선거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법을 심의하는 것을 전제로 최고선거위원회와 지부위원회가 개정할 절차를 기술한다.

예멘공화국의 통일국가 헌법초안의 작성이 A.D. 1981년 12월 30일에 해당하는 헤지라력 1402년 3월 4일(수요일) 오전에 통일 예멘공화국 수도 사나에 위치하는

판결사부실에서 있는 합동헌법위원회의 최종 13차 회의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완성되고 승인된다.

간 사

우말 · 압둘라 · 알-자위 및 무하마드 · 압둘라 · 알-푸사일

의 장

압둘라 · 아마드 · 가넵 및 후세인 · 알리 · 알 후바이시

분단국가 통일헌법 자료집

印 刷：1995. 12. 10

發 行：1995. 12. 20

發行處：統一院統一政策室

第2政 策 官 室

Tel：720-2148

725-0762

통정 95-12-81

〈비매품〉